

제21대 대선
벤처정책 제안서

세상을 바꾸는 힘, 벤처·스타트업

*이제 벤처는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아젠다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본 보고서는 혁신벤처·스타트업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의 인식하에 대한민국 혁신생태계 완성을 위해 현장 정책수요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혁신생태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목표의 수립과 범정부적 로드맵의 도출, 그리고 과감하고 신속한 혁신정책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제시하는 본 보고서가, 대한민국 혁신생태계의 역동성 회복과 혁신국가 조성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SOPT(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혁신 벤처·스타트업 정책 목표 및 비전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청년과 미래를 위해,
벤처정책은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아젠다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기반
강화

혁신금융
확대

우수인재확보
근로제도선진화

혁신저해
규제혁파

핵심과제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시행 및 규제권한 지방 이양

혁신 벤처생태계 3大 중점 과제

1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는 35억달러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자금확보가 필요
* 미국 3300억\$, 중국 2000억\$, 유럽연합 1200억\$, 일본 90억\$, 싱가포르 50억\$

■ 건의사항

- 모든 산업과 업종에 형성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에 68개 법정기금의 5% 투자*를 의무화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여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
* '24년도 기준 법정기금 운용규모 1,023조원의 5% → 51조

2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 현황 및 필요성

-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로인 '주52시간제도'의 도입으로 벤처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어 핵심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자율적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

■ 건의사항

- ①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②벤처기업 핵심 인력 대상 근로시간 예외 등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

3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및 산업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 현황 및 필요성

-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한 사업 위축, 투자 축소 및 신기술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들을 글로벌 규제 선진국 수준으로의 완화가 필요

■ 건의사항

- 규제 선진국에는 없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 위해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 설정,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지방 주도로 신산업의 도전과 혁신을 이끌고 산업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목차 Contents

I. 벤처생태계 현안과 정책지원 방향	1
1. 그간의 벤처생태계 환경과 정책의 변화	2
2.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벤처기업	4
3. 한계에 봉착한 현재의 벤처생태계	6
4. 파괴적 혁신을 통한 정책적 지향점	10
II. 정책 제안 요약	12
III.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4대 분야 추진 과제	27
1. 벤처기업 성장기반 강화	
1-1. 창업기반 강화	
① 벤처기업 주간 및 명예의 전당 신설	30
② 창업 지원정책의 거버넌스 개편	32
③ 지역특화형 벤처캠퍼스타운 조성	33
④ 스타트업 5대 혁신도시 조성	35
⑤ 인바운드 스타트업 육성	36
⑥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38
⑦ 엑셀러레이터 투자 다양성 촉진	45
⑧ 지역 투자자 육성을 위한 엔젤투자 사관학교 신설	47

1-2. 혁신 성장기반 강화

09 벤처기업 범위 확대	49
10 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50
11 고성장 벤처기업 특화 지원	51
12 AI기술 도입·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 지원	52
13 AI 시대 선도를 위한 벤처·스타트업 AX 혁신	54
14 R&D 패러다임 변환	55
15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57
16 민간중심 정책혁신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설치	59
17 임대주택 매입 방식을 통한 AI인프라 투자	61
18 연구개발용역 선정 시 공정경쟁을 위한 혁신연구 제도개선	64
19 민간중심 벤처·스타트업 혁신타운 공급	67
20 벤처기업 간 개방형 혁신과제 발굴 지원	69
21 공공 혁신조달시장 확대 및 진출 활성화	71
22 한국형 협력생태계, Team Korea 구축	73
23 완결형 전주기 오픈이노베이션 확산	74
24 국내 가상자산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75
25 핀테크산업의 인공지능 기반 혁신 활성화	77
26 마이페이먼트(지급결제지시업) 스몰라이선스 허용	79
27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81
28 금융상품 비교·추천 활성화	82
29 신분증 진위확인망 핀테크 이용으로 민생금융범죄 차단	84
30 글로벌 성공 여성벤처기업 롤모델 육성	86

1-3. 지속가능 성장기반 강화

31 중소·벤처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88
32 특허침해소송 시 기업의 소송대리인 선택권 확대	89
33 벤처·스타트업 리스크 완화를 위한 상사전문법원 도입	91
34 환경분야 신기술 개발 및 혁신생태계 구축	92
35 여성기업인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 개선	94

2. 혁신 금융 확대

2-1. 벤처투자 패러다임 전환

36	국내법인 및 금융기관 벤처투자 시 세제지원 확대	97
37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99
38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100
39	혁신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	101
40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율 확대	104
41	금융기관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	105
42	모태펀드 신규출자 예산 확대	106
43	모태펀드 액셀러레이터(AC) 투자부문 확대	107
44	모태펀드 자펀드에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도입	109
45	민간 벤처투자 환경조성	110
46	전문개인투자자 제도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112
47	여성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113
48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일원화	115
49	벤처투자회사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116
50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확대(개인투자자)	117

2-2. 공적 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51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119
52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120
53	연기금 공제의 벤처펀드 출자 활성화	122

2-3.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54	코스닥 시장 제도 개선 및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	125
55	세컨더리펀드 확대	127
56	벤처기업 M&A 활성화 지원	129
57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132
58	민간 주도 개방형 혁신거래소 설립	133
59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 요건 완화	135

2-4.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벤처금융 강화

60 정책금융의 벤처 전용 보증/융자 신설 및 확대	137
61 벤처기업 재창업을 위한 특화 공제제도 도입	138
62 정책금융 기업평가 방식 개선	140

3. 우수 인재확보 및 근로제도 선진화

63 주 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143
64 해외 SW 전문인력 확대	144
65 해외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 창업생태계 글로벌화	146
66 수도권 대학의 학과 정원 규제 개선	147
67 벤처기업가정신 문화 교육	148
68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 개선	150
69 성공벤처인 등 우수인력의 VC 생태계 유입 인센티브 마련	152

4.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70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시행	155
71 전문직역 이기주의 혁파	156
72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저해요인 제거	157
73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	158
74 플랫폼산업 미래 진흥전략 추진	160
75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 정책 추진	162
76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 규제혁신	163
77 규제영향평가 확대 및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166
78 규제 샌드박스 정비	168
79 대표이사 배임 적용 원칙 개선	170
80 전자금융거래사고배상공제조합 근거 법률 추진	171
81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173
82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개선	176

세상을 바꾸는 힘, 벤처·스타트업

I

벤처생태계 현안과 정책지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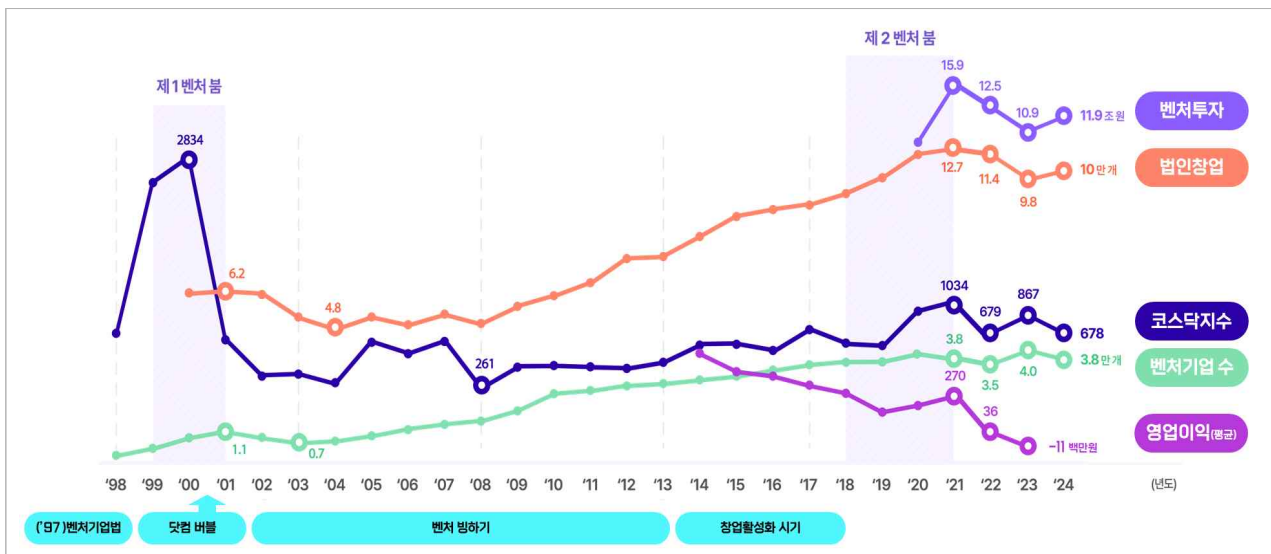
1. 그간의 벤처생태계 환경과 정책의 변화

■ '97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지난 28년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 이를 통해 한국의 벤처생태계 기반이 조성* 되었고, 벤처생태계도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

* ('96) 코스닥, ('97) 벤처기업법, ('05)모태펀드, ('23) 복수의결권, ('24) 벤처기업법 상시화

〈 벤처생태계의 변화 〉



〈 벤처생태계의 양적 규모 확대 〉

구분	1998년	2023년
벤처기업 수	2,042개	40,081개 (20배▲)
투자조합 수	12개	859개 (72배▲)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펀드 신규결성액	825억원	12조 7,627억원 (155배▲)
모태펀드 규모	(2005) 1,701억원	9,805억원 (6배▲)
벤처기업 총매출	20.4조원	242조원 (12배▲)
벤처기업 총고용	151,903명	934,708명 (6배▲)

* '98년 총매출과 총고용은 '99.8월 말 기준 벤처기업 4,008개사의 추정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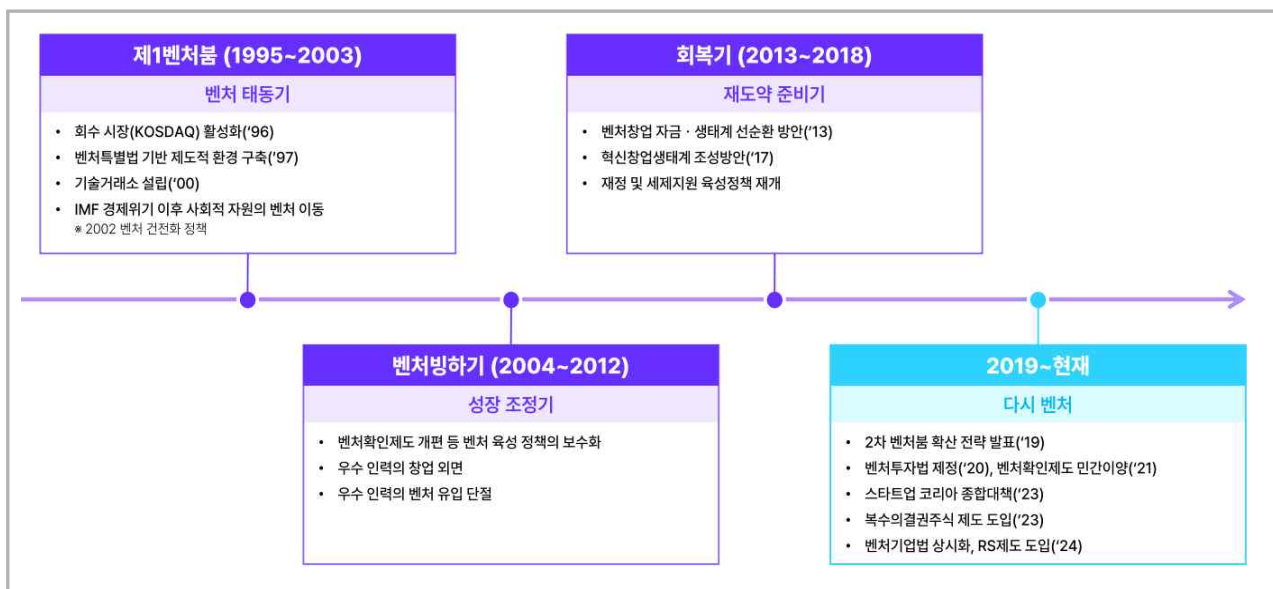
■ 기술기반 창업과 모험자본의 증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벤처 생태계는 지속해서 성장

- ‘제1벤처붐’ 이후, 닷컴버블 붕괴로 인한 조정기를 거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벤처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

* (‘02) 벤처 건전화 방안, (‘05) 벤처 활성화 보완 대책, (‘08)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18) 연대보증 전면 폐지, (‘19) 제2벤처붐 확산 전략, (‘20) 벤처투자법 제정

- ’20년 초 모험자본의 유입이 확대되며 ‘제2벤처붐’이 도래했으나, ‘22년 이후 3高(물가, 금리, 환율),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벤처생태계 조정기 진입

〈 벤처생태계의 태동과 현재 〉



-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지난 시기*마다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로 활약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

* (‘97) IMF 외환위기, (‘08) 금융위기, (‘19) 코로나 팬데믹

- 따라서,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해법은 벤처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
- 이제는 파격적인 혁신에 기반한 벤처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벤처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중요한 시점

2.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벤처기업

벤처기업

※ 2024년 말 기준



38,216 개사

벤처기업 R&D 투자비율

※ 법인 기준



4.6 % > 대기업 **1.8 %**

벤처기업 총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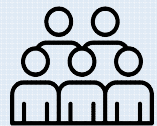
※ 법인 기준



3위 **242** 조원 >
SK **201** 조원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

※ 법인 기준



93.5 만명 >
4대그룹 고용 **74.6** 만명

벤처천억기업



908 개사

벤처매출1조원기업



25 개사

벤처천억기업

법인세 총 납부액



4.2 조원

벤처천억기업

총 매출액



235 조원

- '24년말 기준 벤처기업 수는 총 38,216개사로, '98년 벤처기업법이 제정 되었을 당시 2,042개사에서 크게 증가

* 벤처기업 수(천개사) : ('98) 2 → ('05) 10 → ('10) 25 → ('15) 31 → ('20) 39 → ('23) 40 → ('24) 38

-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총 242조원으로 재계 3위* 수준이며, 총고용 규모는 약 93.5만명으로, 국내 4대 대기업그룹**을 능가 ('23)

* 재계 매출 : ①삼성 295조원, ②현대차 275조원, ③SK 201조원, ④LG 135조원

** 재계 고용 : ①삼성 27.8만명, ②현대차 19.8명, ③LG 15.5만명, ④SK 11.5만명

- 특히, 벤처기업 고용의 51.3%는 30대 이하 청년 고용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벤처는 큰 기여
- 벤처기업의 '23년말 기준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4.6%로, 중소기업(0.8%), 중견기업(1.1%), 대기업(1.8%) 보다 높은 수준
- 벤처기업의 94.3%가 연구조직이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총 432,986건의 지식재산권(국내외 포함)을 보유
- 또한, 첨단업종(첨단제조 24.5%, 첨단서비스 25.2%)이 49.7%를 차지하고 있고, AI, IoT, 빅데이터, 신에너지, 클라우드, 핀테크, 신소재 등 4차 산업 관련 주력 기술과 첨단산업 중심의 다양한 업종 분포

- 벤처기업확인 이력기업 중 매출 천억원 이상을 기록한 벤처천억기업 수는 908개사이며, 매출 1조원 이상은 25개사 ('23)

* 벤처천억기업 수(개사) : ('19) 617 → ('20) 633 → ('21) 739 → ('22) 869 → ('23) 908

- 벤처천억기업의 총 매출은 235조원으로 재계 3위 수준이며, 총 고용은 약 33만명으로 재계 1위 수준
- 또한, 경영활동에 의한 '23년도 법인세 납부액은 총 4조 2천억원을 초과하여 국가 재정에도 크게 기여
- 벤처천억기업 중 77.4%가 수출기업이며, 총 수출금액은 47.8조원으로 국내 총 수출규모의 5.8%를 차지
- 벤처천억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2.8%이며,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는 97,534건으로 국내 산업재산권의 27.1%의 비중을 차지

3. 한계에 봉착한 현재의 벤처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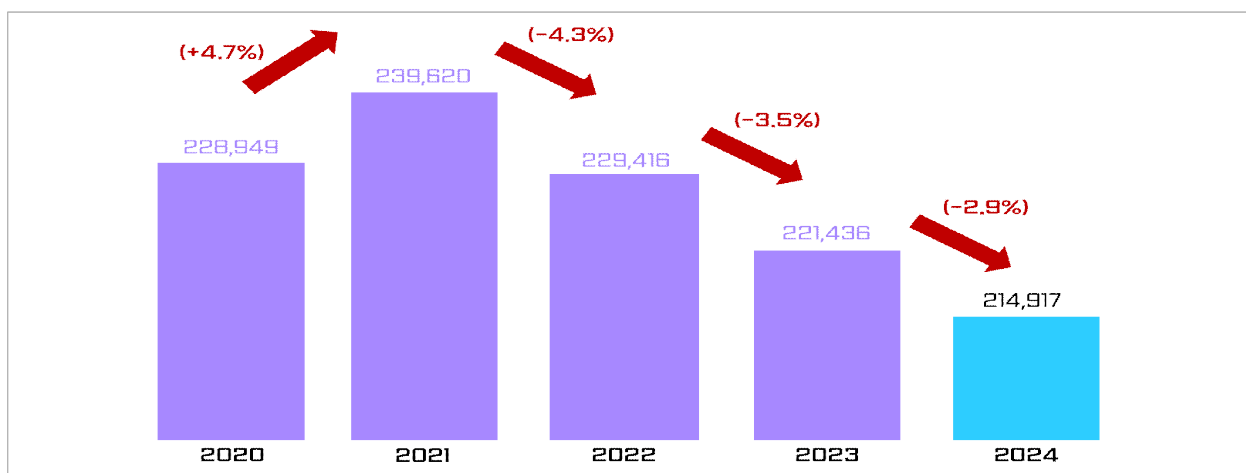
〈 현재의 벤처생태계 악순환 〉



■ **(기술창업 감소)** '24년 기술 기반 창업기업 수는 3년 연속 감소하며 창업 생태계 약화

- 특히, 글로벌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인한 투자감소, 연구개발(R&D) 비용 증가 등이 벤처기업이 집중되는 기술기반 창업에 부정적 영향

〈 기술 기반 창업기업 수 (개사) 〉



* 출처: 창업기업동향(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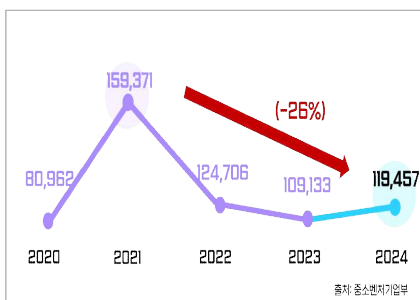
- 또한, AI,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며, 관련 창업정책도 아쉬운 수준

- 그 결과, 지난해 신규 유니콘 기업은 2개(리벨리온, 에이블리)에 불과하고, 국내 유니콘 기업 중 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벌이는 '딥테크 유니콘'은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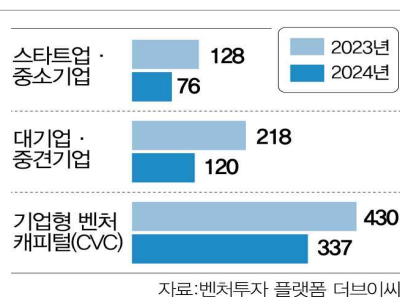
■ **(벤처투자 위축)** 벤처투자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며, GDP 대비 투자 규모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 '24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11.9조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지만, 업력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17%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
 - 펀드 출자자 구성은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이 23.0%로 전년 대비 11.3%p 증가하고, 민간출자자 비중이 줄어 공적 자금 의존도 증가
- 또한, 지난해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는 고금리, 고환율 등 대외리스크 증가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도 '23년 1조 1,676억 원에서 '24년 9,996억 원으로 감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 비율은 0.26%로 이스라엘(1.72%), 미국(1.09%) 등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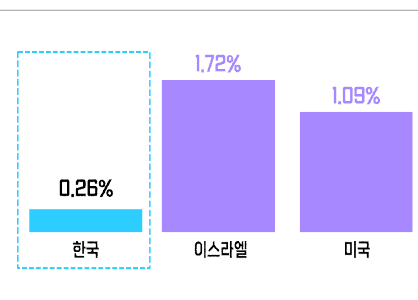
〈 연도별 벤처투자 규모 (억원) 〉



〈 일반기업의 벤처투자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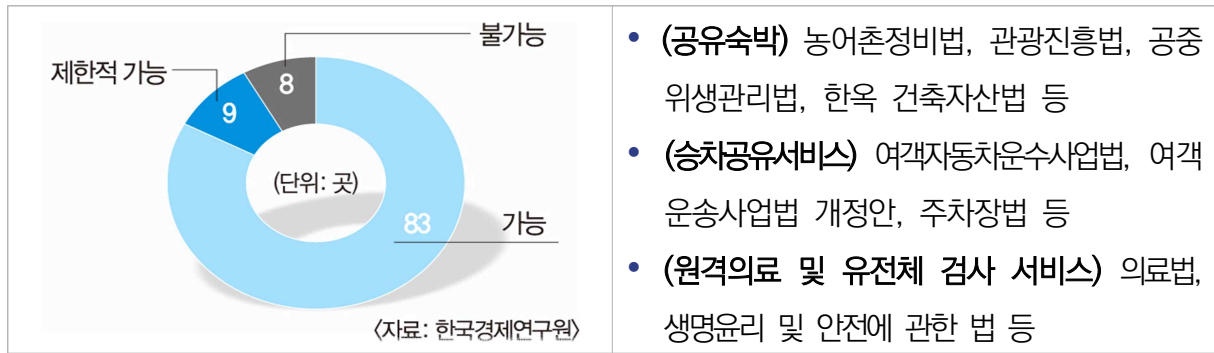
〈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 〉



■ **(전방위적인 규제 심화)** AI, 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입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플랫폼과 전문직역과의 갈등도 심화

-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는 국내 법규제로 사업이 불가할 정도로 신산업에 대한 규제 과도

〈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한국 사업 가능성 및 관련 규제 법률 〉



- 기존의 재앙적 규제체계, 신산업 진입규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규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 **(회수시장 침체)**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M&A) 규모는 '22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보수적인 심사 등으로 IPO 기회도 축소

* ('22년) 81건, 2조 2894억원 → ('23년) 39건, 4501억원 → ('24년) 32건, 2231억원

- 지난해 코스닥 수익률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글로벌 최하위 수준이고, 특례상장은 '파두' 사태로 인한 보수적인 심사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M&A 회수시장의 특성을 보이며, EXIT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율 저조

* 2023년 기준, 미국은 VC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95%(695건)가 M&A를 통해 Exit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스타트업 Exit 가운데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58%(86건)에 불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3)

- 또한,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도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최종 지분투자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갈수록 감소

■ **(노동 경직성 악화)**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며,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근로환경 및 보상체계 미흡

- 학령인구 감소, 이공계 기피, 수도권 학과 정원규제 등으로 AI·빅데이터·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 부족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

* AI·빅데이터·클라우드·나노 분야 6만명(~'27년), 반도체 분야 5.4만명(~'31) 부족(고용노동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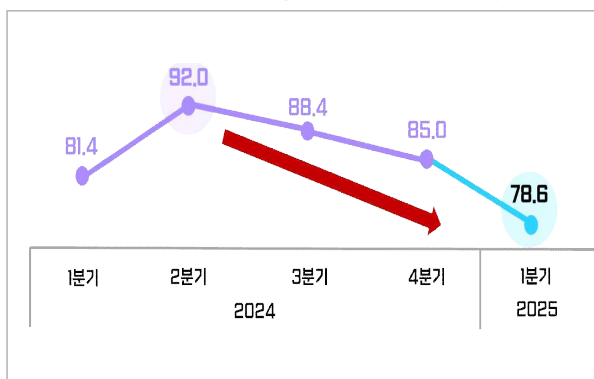
- 벤처기업은 평균 2.3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53.4%는 벤처기업의 인식, 제한적 보상체계 등으로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4)
- 또한,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등 경직된 근로제도는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 저하와 함께 자율적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

■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현재 우리경제는 금리, 물가, 환율 상승 등 복합 위기의 지속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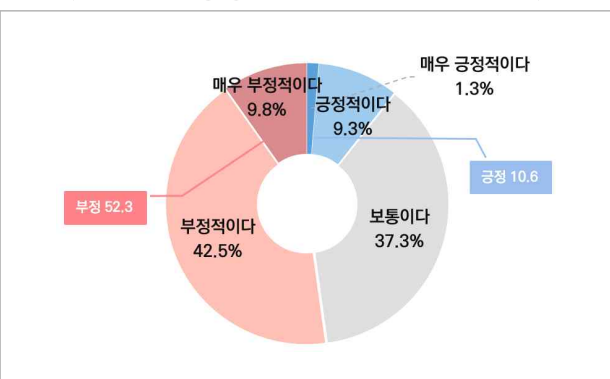
- '25년 1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BSI)는 78.6p로 지난해 최대(92.0) 대비 13.4p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
- 또한, 벤처기업의 52.3%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보호무역주의 강화,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미중 디커플링, 환율 리스크 등

〈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 (P) 〉



〈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인식 〉



* 출처: 벤처기업협회

4. 파괴적 혁신을 통한 정책적 지향점

- **(벤처기업 성장기반 강화)**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용 및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수준(現 10% 미만)으로 높일 필요
 - 고도로 발전된 미국 경제가 여전히 2~3% 대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리콘밸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생태계 때문
 - 그러나, 현재 벤처기업의 대상을 '중소기업'이라는 규모로 한정*하는 등, 스케일업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은 부족한 상황
 - * (「벤처기업법」 제2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면서,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
 - 또한, AI·빅데이터·클라우드·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
 -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❶ 벤처기업의 요건 개선, ❷고성장 벤처기업 특화지원, ❸첨단 업종 벤처육성을 위한 입법·R&D 지원강화, ❹벤처기업 인식제고 등이 필요
- **(혁신금융 확대 및 제도화)** 벤처생태계의 선순환과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모험자본시장의 확대 및 제도화가 필수
 - 현재 연간 10조 원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선진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율을 감안하여 연간 50조 원의 벤처투자 시장 규모로 확대 필요
 - 벤처투자는 약 2.6배*의 거시경제적 승수 효과(乘數效果, fiscal multiplier) 발생 (국회미래연구원, 2021)
 - * 1조 원의 벤처투자는 약 2.6조 원의 우리나라 GDP 증가 효과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같은 혁신금융제도 도입하고, 기업형벤처캐피탈 (CVC) 규제완화와 다양한 세제 혜택 등 투자활성화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및 공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비율을 확대하는 등 공적연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 필요
- 아울러,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시장을 개선하고, M&A 활성화, 세컨더리펀드 확대 등이 필요
- **(우수 인재 확보 및 근로제도 선진화)** 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확보 및 유지 지원, 근로제도를 선진화 등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수도권 대학 학과 정원 규제를 완화하여 인재의 공급을 확대
 - 우수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해 선도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학력 및 경력을 요구하는 외국인 국내 취업 비자(E-7-S)의 취득 및 갱신 기준을 완화하고 추천권을 다변화
- 보상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의 장기 재직 유도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성장 촉진 지원
-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사전 허용 원칙’을 채택
-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 우선지원, 기존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 사업모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
- 선진국에는 없거나 과도한 규제 철폐를 위해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규제 혁파

세상을 바꾸는 힘, 벤처·스타트업

II

정책 제안 요약

정책 제안 요약

Summary

1

벤처기업 성장기반 강화

1-1. 창업기반 강화

▣ 벤처기업 주간 및 명예의 전당 신설

-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법정화하고, 한국형 CES 개최, 글로벌 투자자 초청 IR 행사, 명예의 전당 구축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진출 촉진 기반 마련 필요

▣ 창업 지원정책의 거버넌스 개편

- 국가혁신위원회 신설 및 전담부처 역할 강화를 통해 통합된 창업정책 추진 필요

▣ 지역특화형 벤처캠퍼스타운 조성

- 지방정부·대학·민간 간 연계를 통해 지역 창업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벤처기업 대상 투자 플랫폼과 지역펀드 조성, IR 멘토링 등 투자유치 역량 강화, 기술축제 개최 등 지역의 투자생태계 활성화

㉔ 스타트업 5대 혁신도시 조성

- 전국 10개 창업도시를 지정해 정부의 재정·세제·공간 지원을 집중하고,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특화창업 프로그램 운영, 창업 허브공간 확대 및 지역 초기투자 활성화

㉕ 인바운드 스타트업 육성

- 외국인 창업자 유치를 위해 AC 중심의 비자 추천제 도입, 지역별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설립, 유학생의 창업전환 경로 구축 등 외국인 대상 창업부터 정착,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 마련 필요

㉖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 교수 및 연구원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원)생 창업을 지원하며, 기업 내 혁신역량을 활용한 사내벤처 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기술창업 시스템 전반을 개선

㉗ 액셀러레이터 투자 다양성 촉진

- 벤처투자촉진법상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40% 이상 투자 의무를 5년 미만 기업으로 완화하고, 매출·기업가치 등 다양한 기준 허용. AC의 공동창업 경영지배 허용, 개인투자조합의 법인참여 비율 확대 등 추진

㉘ 지역 투자자 육성을 위한 엔젤투자 사관학교 신설

- 지역 전문직·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엔젤투자 사관학교를 신설하여 기초교육과 실전투자 훈련을 제공하고, 지역 스타트업과의 연계를 지원해 비수도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유도

1-2. 혁신 성장기반 강화

㉙ 벤처기업 범위 확대

- 벤처기업 요건에서 기업 규모 기준을 삭제해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기반한 성장사다리를 마련

▣ 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 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은 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고용증가율에 비례한 감면 적용 등으로 세제감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감면 재원을 신사업 및 R&D 등에 재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고성장 벤처기업' 특화 지원

- 고성장 벤처기업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정책 우선대상으로 지정하여 세제, R&D, 금융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스케일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성과 확대

▣ AI기술 도입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 지원

- AI를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고, 산업별 AI 입법 확대, 특구 및 규제 샌드박스 보완, 범정부 AI확산 의사결정기구 설치, 사전 허용·사후 규제 도입, 공정경쟁 보장, 예산·금융지원 확대 등 전방위 AI 생태계 기반 조성

▣ AI 시대 선도를 위한 벤처스타트업 AX 혁신

- 제조·바이오·금융 등 도메인별 AX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AI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컨소시엄 협업사업 지원, 지역 공공기관 연계 확산, 국내 LLM 활용한 B2B 기술 챌린지 개최 등을 통해 산업 연계 강화

▣ R&D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환

- 벤처기업법에 기술혁신 촉진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R&D 예산 내 중소·벤처기업 비중 확대, R&BD 연계 방식 확대, 성공기술 상용화 연계 투자 지원 및 신산업 R&D 집중 투자로 벤처 기술개발 효과 제고 필요

▣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 플립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이연 도입 등 세제 부담 완화, 해외 혁신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내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벤처기업 수출팩토링 도입

㉔ **민간중심 정책혁신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설치**

- 디지털전환 등 혁신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혁신심의회 설치, 신산업 예산심의 권한 부여, 민간주도 법·제도 발의 병행, 행정부처 위원회 통합관리 등 정책거버넌스 정비

㉕ **임대주택 매입 방식을 통한 AI인프라 투자**

- B100 GPU를 전략자원으로 지정 및 국내 부품 생태계와 연계, 민간 중심의 주문형 데이터센터 조달·운영체계 구축으로 AI산업 경쟁력 강화

㉖ **연구개발용역 선정 시 공정경쟁을 위한 혁신연구 제도 개선**

- 연구비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꼬리표 예산' 도입, 성과 중심 차등 지급제 및 창의적 확장연구 허용을 통해 R&D 운용 혁신

㉗ **민간 중심 벤처스타트업 혁신타운 공급**

- 매출 1,000억 원 이상 선도벤처기업이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 복합타운 조성 및 공간 내 창업지원·기술거래·산학협력 기능 통합, 정주환경 개선과 창업지원주택 마련 등 민간주도 스타트업 육성

㉘ **벤처기업 간 개방형 혁신과제 발굴 지원**

- 천억 벤처기업과 초기창업기업 간 기술개발 및 공동사업 매칭 지원을 위한 협업 툴 도입, 해결과제 기반 과제비 지원 등을 통해 중견벤처·초기기업 간 상생 협업 및 개방형 혁신 강화

㉙ **공공 혁신조달시장 확대 및 진출 활성화**

- 벤처·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인증기준 개선, 기술혁신 평가방식·지표 개선, 벤처나라 구매비율 확대, R&D 결과물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조달시장과 혁신기업 간 연결 강화

㉚ **한국형 협력생태계, Team Korea 구축**

- 신사업 규제개선 상설협의체 운영, 대·중소기업 간 공동 해외진출 협업모델 구축, 대기업 보유 특허 개방, 중소기업 상생 파트너 발굴체계 마련 등 공동혁신·글로벌 진출을 위한 구조적 협력체계 구축

㉔ **완결형 전주기 오픈이노베이션 확산**

- 대기업 중심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확산하고, 협업 플랫폼 구축, 기술보호·분쟁 중재 메커니즘 마련 등 지속가능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정비

㉕ **국내 가상자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내 산업 진흥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해 비거주 외국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파생상품 도입 등을 통해 수수료 수익 확대 및 외화 유입 기반 마련 등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도모

㉖ **핀테크산업의 인공지능 기반 혁신 활성화**

- AI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특화 예산·R&D·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AI 테스트베드 및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공공 금융데이터 개방과 신뢰성 검증체계 마련 등 금융 AI 생태계 기반 조성

㉗ **마이페이먼트(지급결제지시업) 스몰라이선스 허용**

- 지급지시전달업 등 신설 핀테크 업종에 대한 스몰라이선스 도입으로 자본금·등록 요건을 영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영업 확장 시 자본금 상향 적용하는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의 차등 규제체계 도입

㉘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책자금 대상자 정보 연계 및 신청가능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㉙ **금융상품 비교·추천 활성화**

- 금융상품 비교·추천을 위한 종합중개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금융서비스중개업 법제화 및 보장성 상품의 정보 인프라 이용 규율 마련으로 금융 소비자 선택권 확대

㉚ **신분증 진위확인망 핀테크 이용으로 민생금융범죄 차단**

- 신분증 진위확인망 이용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으로 변경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접근을 허용하고, 생체정보 기반 보안 강화 등 핀테크 보안체계 개선을 통해 민생금융범죄 차단

80 글로벌 성공 여성벤처기업 롤모델 육성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여성벤처기업을 선도모델로 집중 육성하는 ‘글로벌 선도 여성벤처 100’ 등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벤처 혁신 성장기반 마련

1-3. 지속가능 성장기반 강화

81 중소·벤처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 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 활성화와 실질적 처벌 강화, 디스커버리 제도 등 자료제출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보호 수단 강화

82 특허침해소송 시 기업의 소송대리인 선택권 확대

- 특허침해소송 시 기업이 변리사를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업의 권리보호 선택권 보장

83 벤처·스타트업 리스크 완화를 위한 상사전문법원 도입

- 회사소송에 특화된 상사전문법원 또는 주요법원 내 전문재판부 설치를 검토하여 기업분쟁의 신속·전문적 해결체계 마련

84 환경 분야 신기술 개발 및 혁신생태계 구축

- 탄소중립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민간 중심 혁신 생태계 구축,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 맞춤형 평가체계 마련, 세제·인력지원 등 저탄소 산업 기반 강화

85 여성기업인의 육아 출산 지원 사각지대 개선

- 2인 이상 사업체 여성대표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에 포함하여 출산·육아와 경영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여성 창업·벤처인의 복지지원 확대

2-1. 벤처투자 패러다임 전환

㉠ 국내법인 및 금융기관의 벤처투자 시 세제지원 확대

- 벤처펀드 및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5%), 업력 기준 폐지, 후속투자에도 공제 적용 등 민간 벤처자금 유입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세제지원 확대 필요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 CVC의 외부자금 출자비율 확대(40%→60%), 해외기업 투자 제한 자율화, 부채비율 상향(200%→500%) 등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 BDC의 제도화 및 민간 벤처모펀드 유입을 통해 비상장 투자시장 내 안정성·수익성의 균형 있는 확보 가능

㉣ 혁신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

- 민간 자금의 스타트업 초기투자 유도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 공제권 이전 허용, 비상장주식 블록체인 기반 거래,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 글로벌 VC 연계 등 다각적 제도 개선 필요

㉤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율 확대

-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비율을 차등적으로 확대하고, 창업 3년 이하 기업 투자 시 최대 100% 공제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

- 금융기관의 BIS·RBC·NCR 산출 시 벤처펀드 출자를 위험자산에서 제외하여 민간 출자 확대 유도 및 정책자금 의존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 확대

- 모태펀드 존속기간(30년) 삭제 및 연도별 신규 예산 확대를 통해 위축된 민간투자 심리 회복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 강화

■ 모태펀드의 액셀러레이터(AC) 투자부문 확대

- AC 전용 초기 창업펀드 5천억 규모 조성, 50억 이내 소형펀드 중심으로 100여 개 AC 참여 유도, 연간 1천 개 이상 혁신기업 투자 가능하도록 액셀러레이터 생태계 자금공급 기반 마련

■ 모태펀드 자펀드에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도입

- 모태펀드 자펀드에 성장금융의 정책형 뉴딜펀드의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수준을 적용하여 민간자금 유입 지원

■ 민간 벤처투자 환경 조성

- 메가펀드 조성, 글로벌 VC 공동투자 확대, 해외 펀드 세제정비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위한 대규모 자금 플랫폼 구축

■ 전문개인투자자 제도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 전문개인투자자의 비수도권 스타트업 전용 프로젝트펀드 조성 시 정부가 1:1 매칭 출자하고, 등록요건 완화·혜택 확대를 통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 육성

■ 여성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개선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 연장과 금액 상향을 통해 민간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여성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출자 우대조항 신설로 국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유도

㉔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일원화**

- 손실위험이 큰 창업자·벤처기업에 개인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일원화

㉕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엔젤지분 양도 시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선순환 투자구조 유도 및 초기투자자 지분 회수·재투자 활성화

㉖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확대**

-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고위험을 감수하는 엔젤투자자도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 시장 활성화

2-2. **공적 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㉗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공공의 자본공급 활성화를 위해 68개 법정기금의 5%를 의무적으로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투자 의무화 법제 도입

㉘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벤처투자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장기 투자자본 기반 마련 필요

㉙ **연기금 공제의 벤처펀드 출자 활성화**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공제회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및 비출자 기관 참여 유도, 출자 시 세액공제·양도차익 비과세 적용을 통해 안정적 자금 유입 기반 구축

2-3.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㉔ 코스닥 시장 제도 개선 및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

-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 및 회계기준을 산업별로 개선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전용 거래소 설립,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회수시장 활성화

㉕ 세컨더리펀드 활성화

- 세컨더리펀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확대, 투자자 간 신뢰체계 개선, 신주투자 연계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장기 유동성 지원과 투자시장 다변화 필요

㉖ 벤처기업 M&A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10%로 환원, 매수기업 법인세 공제율 확대, M&A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글로벌 M&A 플랫폼 구축으로 M&A 시장 활성화

㉗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 우량기업의 코스닥 이탈 방지와 성장형 벤처기업의 코스닥 유인을 위해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하여 코스닥시장 활성화

㉘ 민간 주도 개방형 혁신거래소 설립

-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중개하는 ‘혁신거래소’ 설립을 통해 신기술 수혈과 시장 확보가 가능한 중간회수 플랫폼 구축 및 상생협력 기반 마련

㉙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 요건 완화

- 혁신벤처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투자수익을 다시 벤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민간 자본의 선순환 구조 마련

2-4.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벤처금융 강화

㉠ 정책 금융의 벤처전용 보증/융자 신설 및 확대

- 기술 기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연계 보증을 확대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체계 강화, 민간 금융의 융자 규모 확대 등 벤처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

㉡ 벤처기업 재창업을 위한 특화 공제제도 도입

- 창업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공제를 신설하고, 민간 상호부조방식 자본 조달 허용 등 민간의 주도성·자율성이 보장된 공제제도 도입

㉢ 정책금융 기업평가 방식 개선

- RCPS(상환전환우선주)의 회계상 자본 인정 추진,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부합하는 정부지원 요건 개선 등 투자유치 현실을 반영한 회계기준 정비

■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 현행 ‘주’ 단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고, R&D 인력 등 벤처기업의 핵심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해 주52시간 제 적용예외를 인정하여 벤처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 해외 SW 전문인력 확대

- 개도국 SW 인재의 비자 정원을 확대하고, 비자 추천권 주체를 다양화하며, 외국인 유학생 창업지원 등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우대지원 제도 추진

■ 해외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 창업생태계 글로벌화

- 비수도권 지역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신설 및 국내 주요 도시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해외 인재 유입 촉진

■ 수도권 대학의 학과 정원 규제 개선

- AI·반도체·SW·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학과에 대해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규제의 예외를 명문화하여 첨단학과 신설·증원 허용

■ 벤처기업가정신 문화 교육

- 벤처기업가정신 실천선언, 온라인 실천기록 공유, 창업 리더십 스토리 확산, 초등과정 포함 기업가정신 교육 의무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체계 도입을 통한 창의·도전 문화 확산

■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 개선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사회 결의 허용, 행사이익에 대한 준조세 및 과세 특례 적용, 행사 제한기간 단축, 시가 미만 부여한도 확대 등 성과보상 체계 정비 및 성과조건부 주식 과세특례 부여

■ 성공벤처인 등 우수인력의 VC 생태계 유입 인센티브 마련

-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유한책임형 VC 포함, VC와 펀드 연결 위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 도입, VC의 성과보수에 대한 저율 과세 등을 통해 성공벤처인 등 VC 생태계 유입 촉진

4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시행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 설정, 대통령직속 규제 혁신기구 설치 및 산업규제의 지자체 이양을 통해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 및 지역 주도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전문직역 이기주의 혁파

-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을 위해 '사전 허용·사후 규제' 원칙 도입, 시장 진출 확대형 신산업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직역 단체의 독점행위 제재 및 공정위의 시장경쟁 보장 기능 강화

▣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저해요인 제거

- 변호사 광고금지 규정 권한을 대한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제 권한 남용 방지 및 리걸테크 산업 육성, 청년 변호사 영업자율 보장, 법률정보 접근성 제고 기반 마련 필요

▣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

- 플랫폼·이커머스 규제 도입 시 자율규제 중심의 신중한 접근 필요하며,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예치 의무화 등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자금경색과 생태계 위축 초래 가능성 고려한 재검토 필요

▣ 플랫폼 미래 진흥 전략 추진

-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플랫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경제 주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 미래 진흥 전략' 수립 및 단계적 추진 필요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AI) 정책 추진

- 문화 창작물, 심의·등급분류 완료 콘텐츠, 보조적 활용 콘텐츠 등 조작 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및 표시 의무를 면제

㉔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 규제혁신

-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 허용 범위 확대, 과학적 시범사업 평가 기반 법제화 추진, 직역단체와 플랫폼 간 갈등조정 및 협력 유도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화

㉕ 규제영향평가 확대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 의원입법에 대해 정부입법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중요 규제 신설 시 상응 규제 정비를 요구하는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를 통해 입법단계 규제개혁 실효성 확보 필요

㉖ 규제 샌드박스 정비

- 규제접수 창구 일원화 및 규제혁신 부처 신설, 3개 제도 연동 및 실증특례 기간 단축, 규제정보 접근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 규제 발굴, AI 기술을 활용한 관계법령 서칭, 네거티브형 벤처기업 샌드박스 등 도입

㉗ 대표이사 배임 적용 원칙 개선

-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경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임 책임을 면제하고, 횡령 수준이 아닌 이상 배임죄 적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성요건 명확화

㉘ 전자금융거래사고배상공제조합 근거 법률 추진

- 전자금융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대응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상 통합 공제 설립 근거 마련

㉙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 토큰증권 등 신종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 명확화, 투자한도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설정, 개인청약 한도 완화, 혁신금융 특례지정 및 배타적 운영권 유예를 통한 시장 활성화

㉚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개선

- 법인·기관투자자 가상자산시장 참여 활성화, 가상자산사업 불확실성 개선, 국내 가상자산기업의 해외진출, 가상자산사업자 및 금융업체 협력 확대, 가상자산의 과세기준 마련 및 거래소 운영 관련 수수료 계정 등 허용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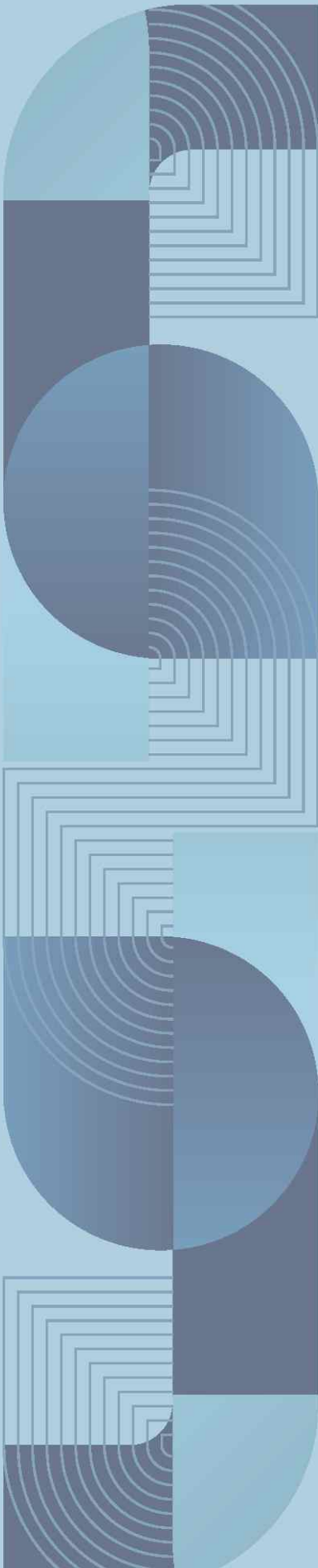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4大 분야 추진 과제

1

벤처기업 성장기반 강화

1-1

창업기반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중소기업기본법」제26조는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중 1주일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설정
 - 「여성기업법」과 「중견기업법」 역시 1년 중 1주일을 여성기업과 중견기업 주간으로 규정하여 운영 중
- 그러나 현행 「벤처기업법」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자 벤처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이와 같은 제도적 불비는 「벤처기업법」이 ‘한시법’이었을 때의 유물로서, 동법이 ‘상시법’으로 개정된 현 상황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벤처기업 주간(週間)을 도입 필요

■ 건의사항

- **(벤처기업 주간 신설)** 벤처기업 주간의 ‘제도화’를 통해 벤처기업을 적극 홍보하고 인식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
 - 1년 중 1주일을 ‘벤처기업 주간(週間)’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포상, 정책발표, 벤처기업의 위상 홍보 등의 행사 개최
 - 특히, 벤처기업 주간(週間)에는 ‘한국형 CES’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의 기술을 전시하고 전세계 바이어를 초대 및 연결하여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또한, 전세계 벤처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한국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IR 및 투자유치 박람회 등을 대대적으로 준비하여 벤처기업과 글로벌 VC 간 연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도 자극

- **(명예의 전당 신설)** ‘고성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명예의 전당을 제도화하고 온라인 명예의 전당으로 발전시켜, 국내 ‘고성과 벤처기업’을 홍보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해외 M&A 및 IPO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
- **(지원기관 지정)** ‘벤처기업 주간(週間)’관련 기념, 포상, 홍보, 전시·박람회, 투자유치 행사 등을 개최 및 운영기관으로 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를 지원 기관으로 지정

■ 현황 및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예산이 유입되어 창업 생태계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202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 제기되어 반전의 계기 마련 필요
 - * 벤처투자 위축 ... 스타트업 ‘버티는 힘’ 갖춰야(머니투데이 '25.4.14)
 - * 스타트업 투자 위축 ... 창업자 48% '투자유치 어려움 겪고 있어'(KBS '24.11.214)
- 다수의 부처가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기술별로 추진되고 있어 통합된 창업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음

■ 건의사항

- **(거버넌스 개편)** 창업과 국가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혁신위원회를 신설하여 거시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조정·수립하여 추진
 - 혁신 스타트업 성장단계(예비창업→창업→Death Valley→성장)별 역할 분담 및 연계 지원(업종별 창업 : 각 부처, 성장 : 중기부)
- **(전담부처 강화)** 특정 업종 등에 기반한 분절적 창업지원을 넘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처(중기부)의 역할 강화 필요

■ 현황 및 필요성

-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대학이 지역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산학협력 등이 미진
- 또한, 일자리 지원정책의 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지역의 고유 노동 생태계 요소가 반영된 지역 자율적 운영이 아닌, ‘중앙 주도-지역보완’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형태로 운영
 - * 대부분 중앙부처의 고용보험 사업으로 운영(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고용부 노동 정책 수립 + 특별행정기관(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집행 → 중앙 자원 조달(고용보험이 주 자원)
- 벤처투자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기반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자체의 투자생태계 조성 시급

■ 건의사항

- **(중앙 및 지방 등 연계 추진)** 중앙 및 지방 정부, 지역 대학, 민간 부문 간의 트라이앵글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
- **(지역 벤처기업 투자펀드 확대 방안 마련)** 지방 벤처창업자와 수도권 투자자간 투자 매칭 시스템 제공을 통한 지역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 고용·창업 인프라 구축)** 지방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창업 인프라의 지방 이전 및 확충 필요
- **(지역 펀드 조성)** 지역 혁신기업을 위한 공공 및 민간펀드 조성 및 운영
- **(투자유치 역량강화)**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투자유치 인식제고를 위한 지역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투자전문가 멘토링 지원(투자유치 가능 기업 발굴·육성)
 - * 지역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및 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온오프 연계 활용)**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투자활성화
 - * 지역기업-투자자 중계, IR 지원 및 AI를 활용한 온라인 지역투자 플랫폼 ‘로컬 벤처투자 빌리지’ 구축
- **(기술축제 활용)** 각 지역별 주력 및 특화산업 활성화와 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지역 순회로 혁신축제(예선)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 상위 입상기업을 대상으로 본선대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기술력 보유기업에 포상

4

스타트업 5대 혁신도시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한국의 창업생태계 수준은 매우 높으나,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는 더 확대되면서 “창업생태계 양극화” 심화

* 기술기반업종 비중(창업기업 동향, '16→'23) : 수도권 2.4%p ↑ > 비수도권 1.1%p ↑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국가별 현황(2024 Startup Blink)〉

구분							
		대한민국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국가 순위		20	1	2	7	13	21
도시	100위권	1	35	4	3	7	1
	101~500위권	3	109	29	22	19	4

* 대한민국 도시 순위 : 서울(21위), 부산(366위), 대전(429위), 인천(458위)

- 특히 지역 창업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창업 지원기관(창경센터, BI 등), 투자기관(AC, VC 등)이 부족하거나 역량미흡 ⇒ 시너지 ↓



■ 건의사항

- **(창업도시 지정)** 국가대표 창업도시 10곳(광역 3곳, 비광역 7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정부 예산, 공간, 세제 혜택 등 집중 지원·육성
 - 정부는 규제 완화, 건립비 지원, 정책 연계 등 제도·정책 지원을, 지자체는 부자건물 제공, 주거 등 정주여건 확보*, 인재 유치 등 추진
- *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건물 활용
- **(특화창업)** 지역별 강점이 있는 전략 新산업 분야에서 기술창업이 일어나도록 대기업·대학·연구소 협업 특화창업 프로그램 운영
- **(창업공간)** 이공계 종사자 등 기초창업 역량이 풍부하나 물리적 창업 인프라가 없는 곳에 허브공간 추가조성(ex. 스타트업 파크)
- **(지역 투자 활성화)** 지역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재 VC·AC 전용 펀드 등 조성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의 유치와 정착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등장
- 대한민국은 기술력과 인프라 측면에서 매력적이나, 제도적 장벽과 정착지원 미비로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진입 및 유지 어려운 실정
 - * 저조한 외국인 창업자: 2023년 기준, 기술창업비자(D-8-4) 및 스타트업특별비자(D-8-4S)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창업자는 174명으로, 전체 스타트업의 0.7%에 불과
 - * 수도권 집중: 외국인 창업자의 87.3%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활성화는 미흡
 - * 정부 지원 프로그램 한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KSGC)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프로그램 종료 후 한국을 떠나고 있음
 - * 비자 제도 복잡성과 불안정성: 기술창업비자(D-8-4)는 학력, 지식재산권 등 정량적 요건이 까다롭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등 안정적인 체류가 어려움
 - * 금융 및 행정 시스템 장벽: 외국인 창업자는 법인 설립, 외환 신고, 은행 계좌 개설 등에서 복잡한 절차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창업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과 투자 연계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인구활력과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

■ 건의사항 ‘글로벌 창업가 스타트업 도전 및 스케일업의 플랫폼 국가, 대한민국’

- 액셀러레이터 중심 창업 유치·육성 체계 구축
 - 외국인 창업 유치·보육·투자 전담 액셀러레이터 지정 (Global AC Studio 운영)
 -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법인 설립, 비자 발급, 초기 정착 전 과정 AC가 패키지로 관리
 -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추천하는 비자 연계 평가 제도 도입 (AC 추천이 사업성 기준 일부 대체)

- 인바운드 창업 전용 투자 지원 확대
 - 모태펀드 외국인 창업 전용 계정 신설: AC 운용사로 하는 Global Inbound 전용 펀드
 - 연간 300억 원 규모 글로벌 창업 특화 계정(AC 매칭형) 조성
 - TIPS & LIPS 의 외국인 창업 트랙 신설
 - 외국인 창업자 추천 전담 AC 등록제 도입
 - 지역 기반 글로벌 창업 정착 생태계 조성
 - 지역별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설치 확대 : 통·번역, 네트워킹, 공간, 투자상담 통합 제공
 - 지역대학, 지자체, 로컬 AC와의 연계로 ‘창업+정착+투자’ 원스톱 지원 및 지역 전략산업 연계한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 * (예시) 전북(그린바이오), 대구(의료기기), 부산(해양모빌리티) 중심의 창업 유치 집중
- 인재 기반 확대: 외국인 유학생 창업 전환 프로그램
 - 기술기반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K-Start Internship → 창업비자 전환’ 체계 구축
 - 국내 AC와 연계된 창업 실습, 시드 펀딩 지원으로 실전 창업 유도하고,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분야 전공 유학생 집중 유치

■ 기대효과

- 유망 외국인 창업자 유입과 스타트업 정착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력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성숙한 환경 조성
-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정착은 해외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고 해외 투자 자본의 국내 유입과 금융선진화를 촉진
-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감소, 지역소멸 극복 위한 중장기적 생태계 조성

① 중간 지원조직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벤처창업은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2021년 이후 3년 연속 기술창업 감소

* 연간 기술창업 수(개): ('21) 239,620 → ('22) 229,416 → ('23) 221,436 → ('24) 214,917

- 열정이나 아이디어 사업화를 동기로 한 창업비율은 취업문제 해결이나 생계형 창업 등 경제적 목적의 창업비율보다 현저히 낮아 기회형 창업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

* 국내 기업의 창업동기로는 '더 큰 경제적 수입'이 65.0%로 가장 높은 반면, '아이디어 사업화'(5.9%)나 '경제·사회 발전'(6.2%) 등의 기회형 창업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22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 '23/24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에서도 한국의 기회형 창업비율('세상의 변화')은 전세계 46개 창업국가 중 45위를 기록

■ 건의사항

- **(중간 성장사다리 활성화)** 미국과 같이 액셀러레이터나 전문 VC 등 투자·보육 등 전략적 지원을 하는 중간조직 역할 활성화
- **(VC주도모델 정착을 위한 기반마련)** 현재의 교원창업 지원정책은 '교수=창업자=CEO'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 반면 미국의 경우 교원은 창업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이후 기업경영은 전문 CEO나 VC가 주도
 -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경험이 부족한 교원CEO의 단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외부 투자를 통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마련 가능
 - 벤처자본이 교원창업기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VC나 전문경영인이 교원창업 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② 교수 창업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기관 창업활성화 및 지식기술 기반 창업 장려를 위해 교수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실제 고급 연구인력의 창업 성공률이 일반 창업기업보다 우수
- 그러나, 창업 후 3~10년 사이가 기업 생명주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법상 교육공무원은 창업 시 휴직기간이 최대 7년으로 되어 있어 창업 참여에 한계 노출
- 고급 기술지식을 보유한 교수 창업을 확대하여 기술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증여하는 주식의 세금부담 완화, IP 소유 주체 결정권, 조인트 벤처 활성화 등 다양하고 파격적인 지원 및 제도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 **(논문·연구중심 체계 개편)** 교수의 창업실적(제자 창업 포함)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실적과 동등한 점수로 평가*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력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교수창업 실적이 교수 재임용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시행령 등에 구체적 반영 방법 적시 및 창업실적(제자 창업 포함)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실적과 동등한 점수로 평가 필요

- **(대학-기업간 IP 매칭시스템 구축)** 교수가 가진 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기술가치를 출자하는 형태(Joint Venture)는 다른 창업 방식에 비해 안정적이며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기술이전 수입료,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신생기업 설립 등)를 창출
 - 따라서 학교별 보유한 IP를 기업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대학-기업간 매칭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제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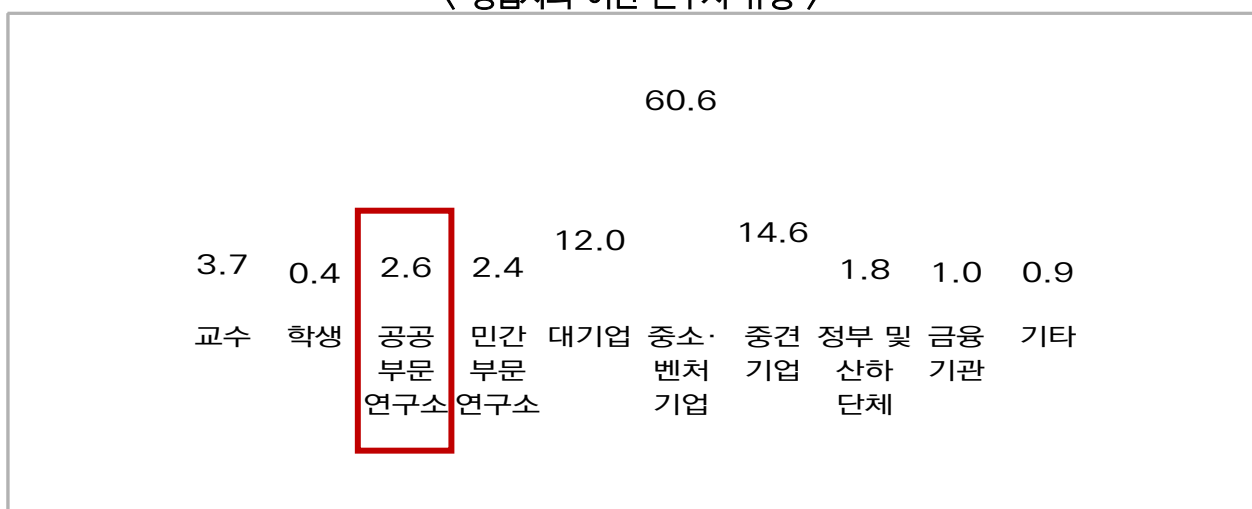
- **(교수-학교간 권리관계 개편)**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교수 창업시 의무적인 주식 및 기술이전료 납부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술이전료 부담을 완화 하는 방안이 필요
 - 또한 IP 소유주체 역시 학교마다 차이(학교소유 또는 공동소유)가 있으나, 교수가 창업시 개발한 IP의 소유주체는 교수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 'J' 국립대 경우 지식재산권을 창업교원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 등으로 출원 및 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산학협력단으로 권리를 승계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창업기업에서 전액 부담
 - ** 캐나다의 경우, 교수 창업시 IP 소유주체를 교수가 결정(원천 기술 또는 즉시 상용화 하는 기술에 따라)

③ 출연(연) 연구원 창업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 출신 연구원의 기술창업 지원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창업에 도전하는 연구자가 소수에 불과
 - 특히, 벤처기업 창업자의 직전 근무지 중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부문 연구소는 2.6%에 불과('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창업자의 이전 근무지 유형 〉



* 출처 :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5개 소관 국가 출연연구원 가운데 연구원의 창업휴직은 3~7년으로 휴직 허용기간이 제각각이고, 창업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도 있는 등 연구원 창업의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한 상태
- 연구기관 내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창업지원 제도(교육, 시설, 조직 구조) 미흡, 단기적인 휴직기간 등 저해 요인을 개선하여 혁신적인 고급 기술을 체화하고 있는 연구원의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독일의 'it's OWL' 프로젝트) 산학연의 긴밀한 연결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 성공 사례

** (미국의 'I-Corps') 과학 기업가(Science Entrepreneur)들이 연구실을 벗어나 산업 현장에 깊숙이 진입해 성공한 사례

■ 건의사항

- **(창업 교육 이수 의무화)** 기술 기반 창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창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따라서 출연(연) 연구원에 대하여 창업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창업 확산 및 마인드 개선 필요
- **(연구원 휴·겸직제도 개편)** 창업을 위한 휴·겸직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여 연구원 창업 지원제도를 실효성 확보
- **(창업 후 발명한 지식재산권 직무발명 예외 인정)** 현재창업자가 창업 후 발명한 지식재산권은 소속기관과 연구원의 상호 협의를 거쳐 연구원이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벤처기업법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에 근거)
 - 직무발명의 예외를 인정하여 발명자 또는 창업기업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④ 대학(원)생 창업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고용여건은 여전히 쉽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 '22년 하반기 및 '23년에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이 34.0%였으며, 평균 5.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조사
- * 출처 : 202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25년 3월 한국의 일반 실업률은 3.1%인데 반해 청년의 실업률은 7.5%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4.5%('25년 3월)임.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취업률은 OECD 소속 37개국 가운데 31위 수준
- * 출처 : 통계청 (청년 15~29세 기준)
- 청년 창업은 국가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핵심요인이자, 고용 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므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

■ 건의사항

- **(산·학 협력을 통한 실질적 창업지원)** 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교수를 비롯한 대학(원)생이 해결하고 고도의 기술을 개발 할 경우, 학교에서는 조기 졸업 또는 학위를 수여, 관련 회사에서는 이 인재들을 채용하여 사내벤처로 육성
- **(학위논문 대체 '창업트랙' 신설 및 활성화)** 유연한 학위논문제도를 도입하여 실용연구를 통해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대신 '창업활동'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창업 트랙을 신설
- * 국내 최초 인하대학교에서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가 교내 창업교과 학점 이수 및 창업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창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제도 도입('23년 1월)

⑤ 사내 벤처제도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사내벤처 제도는 모기업의 지속적인 혁신(Innovation)과 다양한 사업 기회 포착을 유도하고, 질 높은 창업기업의 생성을 유인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
 - * (사내벤처 도입 효과) 다각화 → 신기술 개발 결과의 활용 →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우수인력의 유출방지 → 유효 인력의 활용 (출처: Vesper& Holmdahl)
- 사내벤처는 본질적으로 기존 모기업의 기술 또는 시장의 시너지를 활용하여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하며, 모기업의 경영혁신에도 지대한 공헌
 - * (기업의 사내벤처 도입) 삼성전자 'C-Lab', 네이버 'Cell', 구글 'Area 120', 애플 '해적단', GE 'FastWorks', 시스코 'ETG', 소니 'First Flight' 등
- 창업 통계에 의하면, 창업주의 이전 근무지 유형으로서 대기업 등 기업체 출신일 때 비기업체와의 성과 비교에서도 우위를 보임
 - * (성공 사례)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 C-Lab 출신 롤루랩, 인터파크의 지마켓, 현대자동차의 아이탑스오토모티브, LG CNS서 분사한 단비 등

〈 사내벤처 저해 요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벤처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 부족• 전문경영인의 잦은 방침 변경• 실패가 용인되기 어려운 조직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성과 자율성의 부족• 자원부서의 인력지원 및 전문성의 부족 등 |
|---|---|

■ 건의사항

- **(사내벤처 전담조직 설치 지원)**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서도 사내창업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하여 정부차원의 교육 및 멘토링, R&D 예산 등 지원 필요 (사내벤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신설)
 - * 3M은 벤처사업부(New venture division), IBM은 EBO(Emerging Business Opportunities) 등 조직구축을 통해 관리

-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분사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재합병시, 기술가치 금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 범위 확대(10% → 50%)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12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현황 및 문제점

- 벤처투자촉진법 상 ‘3년 미만 기업 40% 이상 투자’ 조건으로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적극적 투자와 기 투자기업의 지속성장 위한 후속투자 제약 존재
- 엑셀러레이터는 극초기 창업 육성에 적합한 모델이나, ‘경영지배형 투자 금지’ 등의 법적 행위제한 조건 등으로 직접 창업기획하고 추진하는 컴퍼니 빌딩 불가
- 엑셀러레이터는 주로 개인투자조합 결성하여 투자하나, 법인 출자가 30% 이내로 제한적이어서 개인 출자자 위주로 결성. 이로 인해, 조합 결성 규모가 작고 이에 따른 조합별 투자 건수도 소수로 투자펀드 관리 위험성 부담

■ 건의사항

- **(투자의무비율 완화)** 벤처투자촉진법 상 ‘3년 미만 기업 40% 이상 투자’를 법인 설립 5년 미만으로 확대, 또는 기간 외 매출규모, 기업가치, 첫 투자 유치 여부 등 다각적 조건 허용
- **(경영지배목적 투자 허용)** 엑셀러레이터로 공동 창업(자본금 투자)의 경우 경영지배(대주주 지분 취득, 자회사 설립) 가능토록 관련 행위제한 조건 및 대주주 제약 조건 등의 삭제
- **(개인투자조합 법인참여 비율 확대)**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법인 출자 비율 상향(49% 이내), 또는 조합 규약으로 조합원 동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창업 시작이 더딘 R&D 중심 테크-스타트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보육 가능

- 시드투자 이후 자금소진된 투자기업의 적극적 후속투자 통해 생존 가능성 높이고, 투자 이어달리기가 가능한 환경 조성
- 조합 내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하여 투자 리스크 낮추고 출자자 피해 최소화 기대
-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참여 확대로 규모 있는 조합 결성 및 효율적 출자자 관리/지원 가능하며 조합원 규약에 따라 결정하고 운영되도록 하여, 조합원 책임 운영 강화와 자율관리 향상을 기대
- 이에 따른 다양한 산업, 지역, 유형에서의 더 많은 창업가 발굴 및 투자와, 지속 생존 가능한 투자모델 조성 가능하여 창업생태계를 풍성하게 함

구분	현황	개선 건의
투자의무비율	창업 초기(3년 미만)기업 40% 이상 투자	창업초기(3년 미만) → 창업 5년 미만 기업
컴퍼니빌딩	경영지배형 투자 불가 (50% 이상 지분취득 불가)	경영지배목적 투자 불가 조항 삭제
투자조합 출자자 참여	개인투자조합 법인출자자 참여 (30% 미만)	법인 출자자 참여비율 확대(30% → 49%)또는, 개인투자조합 운영규정에 따라 자유 설정

■ 현황 및 문제점

- 미국의 엔젤투자자 수는 약 42만 명*인데 비해 국내 엔젤투자자 수는 1.2만 명('24 기준) 수준에 불과

* 출처: THE ANGEL MARKET IN 2023, CVR(Center for Venture Research)

- 엔젤투자는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자금, 네트워킹,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성장시키는 창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

* '21년 엔젤투자 규모와 정부 창업지원 예산은 각각 1.5조 원으로 비슷했으나, '24년 엔젤투자는 1.2조 원으로 감소한 반면, 창업지원 예산은 약 3.7조 원으로 증가

- 국내 엔젤투자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스타트업들은 초기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국내 엔젤투자 현황('24 기준)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투자자 수	76%(9,172명)	24%(2,916명)
투자유치 기업 수	73%(1,949개)	27%(732개)
투자 규모	70%(7,613억 원)	30%(3,335억 원)

* 엔젤투자 소득공제 실적 기준

■ 건의사항

- 비수도권 지역의 잠재적 투자자를 발굴 및 훈련시키는 '엔젤투자 사관학교'를 신설하여 지역 생태계를 이끌 엔젤투자 리더 양성

- 투자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엔젤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이론부터 실전 투자까지 체계적인 훈련과정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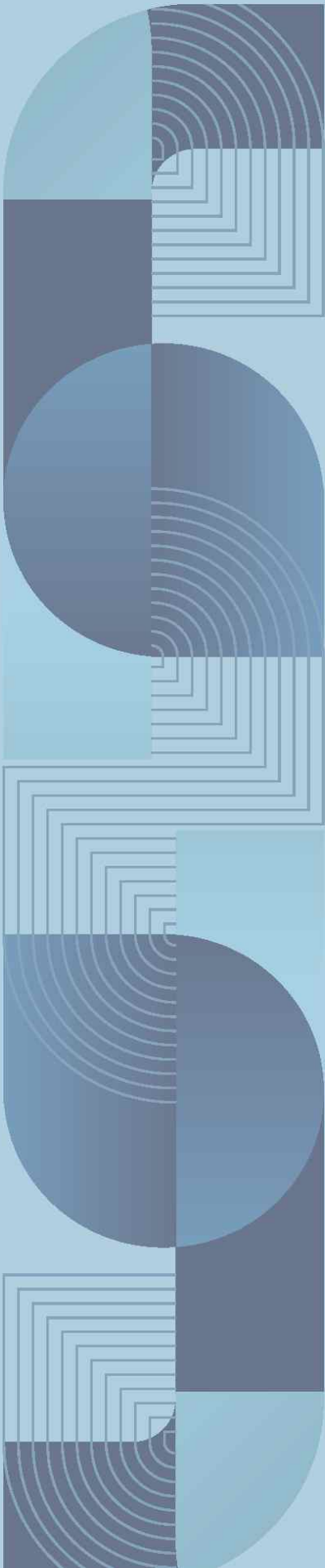
* 참여대상: 지역 내 전문직, 고경력 퇴직자, 기업인, 창업 지원기관 담당자 등

- 훈련이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초기 스타트업과의 IR, 개인투자조합 결성 컨설팅, 네트워킹 등 연계 지원

- 지역의 투자자를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비수도권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1-2

혁신 성장기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창업,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현행법은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
- 벤처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기업의 업력·규모 보다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벤처확인 범위에 포함할 필요
-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기반한 성장사다리를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등 국가경제 기여

■ 건의사항

-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규모로 구분하는 벤처기업 대상기업 요건 삭제
- 세제특례와 금융 우대 등 금전적 혜택은 개별 법령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미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규모의 벤처기업의 혜택을 침해하지 않고 있으며,
 -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완화 등 비금전적 혜택은 필요시 개별 법령에서 지원 대상을 차등화 적용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벤처기업법상 창업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을 시행 중이나, 벤처업계에서는 본 혜택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 중
- 전체 벤처기업 중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전체의 11.5% 미만이며, 더구나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상 순이익을 기록하는 기업은 극소수여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 중
-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정책은 벤처기업의 성장 특성(창업 → 죽음의 계곡 → 다윈의 바다 → J-커브 성장)을 반영한 것으로, 시장경쟁의 단계까지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목적성에 부합

■ 건의사항

-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현실화하고 벤처기업 세제감면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창업 7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 창업 7년 이후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

* (예시)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20% → 법인세 20% 감면(최대한도 50%)

- 벤처기업들은 감면을 받은 세액만큼 신사업 발굴, R&D 등에 재투자하여 추가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 고리 구축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고성장 벤처기업'은 주요 국가·기관에서 사용되는 정책대상인 '고성장기업' 개념·취지와 유사하게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탁월한 벤처기업으로 정의
 - OECD·EU, 통계청은 고용인원 10명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또는 고용이 20%(or 10%) 이상 성장한 기업으로 정의

구 분	내 용
OECD·EU	▪ 종업원이 10명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이 20% 이상 성장하거나 연평균 고용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정의할 것을 권고 - 단, OECD.Stat, Eurostat은 10% 기준을 별도 통계로 공표
통계청(한국)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or 10%) 이상 증가한 기업

* 자료: EC(2007), Eurostat-OECD Manual on Business Demography, 통계청(2020), 기업생멸행정통계

- 고속 성장기 벤처기업의 선별 및 집중지원을 통해 고성장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 성과를 확대

■ 건의사항

- **(법적근거 신설)** 성장이 유망한 '고성장 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

* 「고성장 벤처기업」은 ①「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②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면서 ③최근 3년간 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 가능

- **(지원제도 마련)** '고성장 벤처기업'은 일반 벤처기업에 우선하는 정책 대상임에 따라, 스케일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 마련

*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확대하고, '고성과 벤처기업'을 위한 특화 R&D 지원으로 혁신기술 개발 활성화 기대

**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으로는 '세제 지원'(96.8%), '금융 지원'(91.6%)에 이어 'R&D 지원'(88.9%)으로 조사되어, 조세 및 금융, R&D 지원 등에 대한 벤처기업의 정책수요가 높음 <벤처기업 1,000개사 설문, '24년 하반기>

■ 현황 및 문제점

- ‘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AI 기술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환경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순위(35위)를 기록해 AI분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
- 특히, 법률, 의료 등 각 산업분야의 글로벌 AI시장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도적인 기반이 미흡
 - * ‘법률 AI’ 산업(~2027년, 356억 달러), ‘의료 AI’ 산업(~2030년, 1,817억 달러)
 -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해 ‘법률 AI’ 활성화 기반 조성이 지연
 - ‘의료 AI’ 관련해서는 법률안 발의조차 없어 ‘의료 AI’ 산업의 제도적 기반조성이 요원한 상황
- 또한, AI 등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이 태동해도 관련 분야의 전문직역의 전방위적 견제로 인해 초기 벤처·스타트업들의 사업영위가 위협받고 헌법상 기업의 자유가 침해

■ 건의사항

- AI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 AI 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는 입법을 강화해 제도적 기반조성 필요
 - 각 산업 분야에 도입되는 글로벌 AI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관련 입법활동을 강화해 각 산업분야별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기반조성이 필요
 - 특히, AI 관련 입법 분야를 현행 기본법에서 법률 및 의료, 교육, 문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AI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특구 조례, 규제 샌드박스 보완 등 다방면의 입법 조치 필요
- 대통령 직속 ‘법정부 AI확산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여 각 산업분야에서 AI 기술 도입 시 발생하는 규제와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 역할 수행

- 신산업분야 AI 도입 확산을 위해 「사전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전문직역 단체의 시장 독점 및 불공정 행위 등을 제재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 강화
- AI 관련 정부 예산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여, AI 기술 상용화 지원, 지역 AI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금융 한시적 확대, 제조업 AI 도입 지원 등 AI 기술개발 촉진 및 수요 확산을 병행하여 진행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AI는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혁신 기술로 자리 잡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급성장으로 각 국은 AI 패권 경쟁 중

* 글로벌 시장 규모(가트너) : ('24) 2,334억 → ('32) 1조 7,716억 달러(연평균 29.2% 성장)

- 특히, 제조 등 산업 및 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AI 스타트업이 핵심 역할 수행

* 예) 제조 : 다임리서치(주) → AI와 디지털트윈 기반 자율제조 물류시스템 설계·공급

■ 건의사항

- **(도메인 AX 스타트업)** 경제·사회적으로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도메인(제조, 바이오, 콘텐츠 등) AX 스타트업 특화 지원
 - 도메인 특성에 맞는 특화 지원 전략을 발굴하여, 판로 등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술사업화 지원

〈 분야별 지원 예시 〉

도메인	특화 지원 내용
제조	제조 AI 센터를 통해 제조기업에 AI 공정 솔루션 등 보급
바이오	AI 활용 신약 개발 및 병원 보유 임상 데이터 활용 지원
콘텐츠	대중견기업 데이터 수집·가공 및 콘텐츠 장비 등 지원
금융	국내 금융사와 협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용평가 모형 개발 지원
스마트 농업	작물 생산·관리에 필요한 카메라 센싱 및 비전 기술 등 지원

- **(AX 컨소시엄)** AX 스타트업과 다양한 도메인 기업 간 체결한 범용 활용성이 높은 AX 컨소시엄 과제 선별, 협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역 AX 확산)** 지역 소재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 지역 디지털 촉진이 가능한 과제를 사전에 공모(RFP), AX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 **(국내 LLM 활용)** 국내 LLM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메인 기업을 대상으로 'B2B AX 기술 사업화 챌린지'를 통해 사업화 및 판로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23년 총 R&D 투자액은 119조원(정부+민간), 그 중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비는 약 20조원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4.96%로 세계 2위를 유지('23년 연구개발활동조사)
 - 특히, 정부 R&D 과제의 성공률은 최소 95%에서 최대 99%에 달하며, 중소기업 R&D 성공률은 2014년 이후 평균 92.7% 수준
- 그러나 높은 R&D 투자 비중 및 과제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기술이전과 같은 R&D 성과의 활용은 저조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2년~'21년까지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은 50.6%에 그침
 - *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이유로는 기업의 사업전략 변화, 시장환경 변화, 연구인력 부족 등이 언급
- 정부 예산을 투입해 산출된 R&D 성과가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R&D 패러다임을 탈피해 R&D 지원 방식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

■ 건의사항

- **(기술혁신 지원의 통합)** R&D 지원 관련 제도 및 사업은 다양한 법령 및 부처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나, 국내 여타 기업군 대비 R&D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에 R&D 지원 규정을 직접 포함시켜 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전략적으로 도모하고 정책추진의 효율 및 성과를 극대화
 - * 현행 「벤처기업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부분에 '제5절 기술혁신의 촉진'을 삽입하고 세부조항 마련

- **(정부 R&D 예산의 중소·벤처기업 비중 확대)** 정부 R&D 예산의 중소·벤처기업 비중을 매년 상향 조정해, 기업 및 시장 수요에 적합한 기술 개발에 정부 예산이 집중되도록 지원
 - * '22년 연구수행 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6.9조원(24.3%), 중소·중견기업 7.3조원(25.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9조원(17.1%), 부처 직할 출연연 4.8조원(16.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0.6조원(2.2%), 대기업 0.58조원(2.1%), 기타 2조원(7.0%) 순
- **(상용화 성과 확대)** 기술사업화 연계형 R&BD 방식의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상용화율을 높이고 부수적으로 연구직 일자리 창출 확대
 - * 일정 조건 하에 R&D 과제 선정권을 벤처기업에 허용해, R&D 과제와 기업의 사업분야 간 호환도를 최대로 높여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기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고려
- **(투자 및 금융 연계)** R&D 과제 성공 후 벤처투자 및 정책자금 연계 지원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을 공급
- **(신산업 분야 R&D 지원 확대)** 신산업 분야는 '고성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의 개발부담도 크므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예산을 대폭 늘려 신산업 분야 R&D를 전략적으로 지원
 - * 다만, 전략기술분야 외 R&D 예산도 꾸준히 배정 및 지원을 보장하여, 기업의 다양한 R&D 기반을 정책적으로 조성해, R&D가 특정분야에만 쏠리거나 획일화되어 연구개발 생태계가 왜곡되는 것은 최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벤처기업의 26.1%가 해외 수출(직·간접 수출)을 하고 있고, 그 중 해외에 지사나 지점 등을 설치한 기업은 21.1%에 불과하여 벤처기업의 약 74%는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또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어려움에 직면
- 디지털 전환으로 급속한 산업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벤처기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건의사항

- **(플립(Flip)* 활성화)** 20~25% 수준의 양도 소득세에 대한 부담과, 투자자들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벤처기업들은 플립을 통한 해외시장에 진출에 애로

* 플립이란, 국내에서 사업하던 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고 기존 국내 법인은 지사로 전환하는 경영 방식

- 따라서, 플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정된 특례를 창업가로 확대하고 과세 이연 제도 도입하는 등 양도 소득세 부담의 완화 필요

- **(민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지원)** 해외 혁신단체 및 지원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국내 혁신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 지원 프로그램 추진

* (미주) 82Startup, XSamsung, 미주한인상공회의소, (독일) German Entrepreneurs, (일본) 신경제연맹, (싱가폴) Enterprise Singapore, (UAE) 아부다비 투자청 등

- 특히, 북미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인 벤처협단체를 활용해 내수 중심 벤처기업의 북미 진출 지원

* 딥테크 및 전략 유망신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및 멘토링 제공, 현지 법인설립 및 사무소 개소 지원,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 주선 및 수출지원 행사 등

- **(벤처기업 수출팩토링 도입)** 수출 팩토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수출 팩토링 시장은 사실상 부재*

* 수출입은행은 대기업 및 우량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 중이며, 신·기보·중진공은 국내 매출채권을 지원하여 수출중소 수출 팩토링 기능은 사실상 부재

- 국내금융기관 대비 무역보험공사의 강점을 활용한 수출 팩토링 업무 법제화를 통해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시장 창출
- 외상수출채권에 대해 비소구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신규 자금시장을 무보가 창출하고 국내 금융기관으로 확산하여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시장 창출

■ 현황 및 문제점

-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산업간 융·복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혁신생태계의 속성상, 정부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따라서, 정부는 생태계의 막힌 곳을 뚫고 정책목표 설정에 따른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여야 하며, 민간의 정책니즈를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정책혁신의 도모가 필요
 - 미국의 '창업기업지원법'인 '잡스법'은 스티브 케이스 AOL 창업자 등 25명의 기업인, 학자 등 민간인들로 구성된 '혁신과 기업 국가자문 위원회(NACIE)'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정부 수용
- 2024년 기준으로 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는 571개가 운영('21년에는 역대 최대인 622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수의 민간위원을 정책 연구에 참여시켰으나, 각종 위원회는 통과의례 정도로 인식되어 민간 중심의 산업 정책 혁신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
 - 〈타다〉, 〈원격의료〉 이슈에서 보듯, 전통산업과 혁신산업간의 충돌의 경우 행정부는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거나, 입법부로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혁신동력의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수립에도 실패하고 있는 상황
 - * ('21.6 기준, 출처: 한국경제) 정부산하 행정기관 위원회 622개 중 1년간 회의 미개최 71개, 온라인 회의만 개최 221개로 통상적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이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혁신심의회〉를 설치 및 정책평가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요청

■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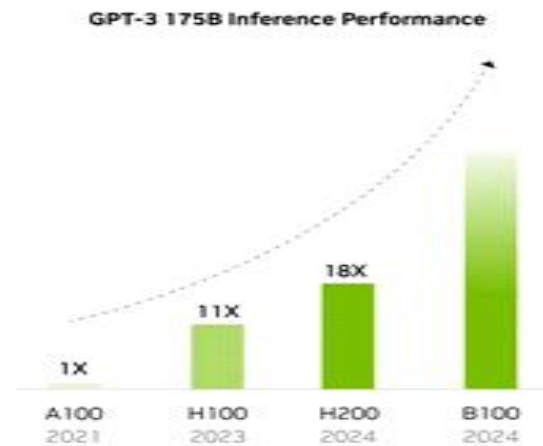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대통령 직속기구로 디지털전환 등 정부의 혁신정책을 검토, 심의하는 공식 직제로 민간중심의 혁신산업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역할 수행

- **(국민혁신심의회 구조)** 산업계, 과학계, 학계 등 20여명의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하부 조직으로 각 세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기구를 설치하여, 관련 산업정책 심의시에 이를 유기적으로 활용
- ‘국민혁신심의회’의 주요 역할(기능)
- **(정책수립 체계 확립)** 시장상황의 진단 및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민혁신 심의회’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기반의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 체계 확립
- **(新산업 관련 신규 예산사업 심의 기능)** 민간 중심의 산업정책 혁신 효과 창출을위해 ‘(가칭) 국민혁신심의회’에서 新산업 관련 신규 예산사업의 심의 기능 부여
- **(제도정비)** R&D, 수출 등 산업지원정책의 기획 및 결과평가 시 민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국가자원의 투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제도정비
- **(혁신 산업분야 법·제도 마련)** 민간이 발의하고 정부가 제도화 하는 기능을 병행 하고, 특히 벤처 등 혁신산업 분야의 신규 정책 수립 및 법제도 마련
-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사회적 갈등 조정을 위한 심의회 내 상설 협의 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특정 이해관계자로 인한 정책 개혁저항 방지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행기관의 소극적 대처를 최소화
- **(정부산하 행정기관 위원회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정부 주도의 국정 과제 및 규제 확대에 의한 위원회 신설을 최소화 하고, 각 위원회의 중요 정책 사항은 빠르게 추진 되도록 지원
- **(정책평가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부처별 사업 성과 평가시, 평가위원의 잦은 변경을 지양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 부처 정책추진시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에 대한 평가배점을 확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정책성과가 사업성과로 연계되도록 관리
 - 참여비율에 대한 평가배점 확대 등 세부 실행계획 필요하며 특정부처의 사안이 아니므로, 국조실에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포함한 정책평가의 시장 중심적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국가 AI 컴퓨팅 예산 증가와 GPU 성능 향상과 조속한 조달계획 필요

- '25년 1월 22일,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SPC 설립 실행계획 발표내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H100 GPU 1만 여장분의 AI 컴퓨팅 파워를 2027년까지 1단계 확충 발표
- 공공과 국내외 기업 컨소시엄(대표법인은 기업 신용등급 A 이상)이 최대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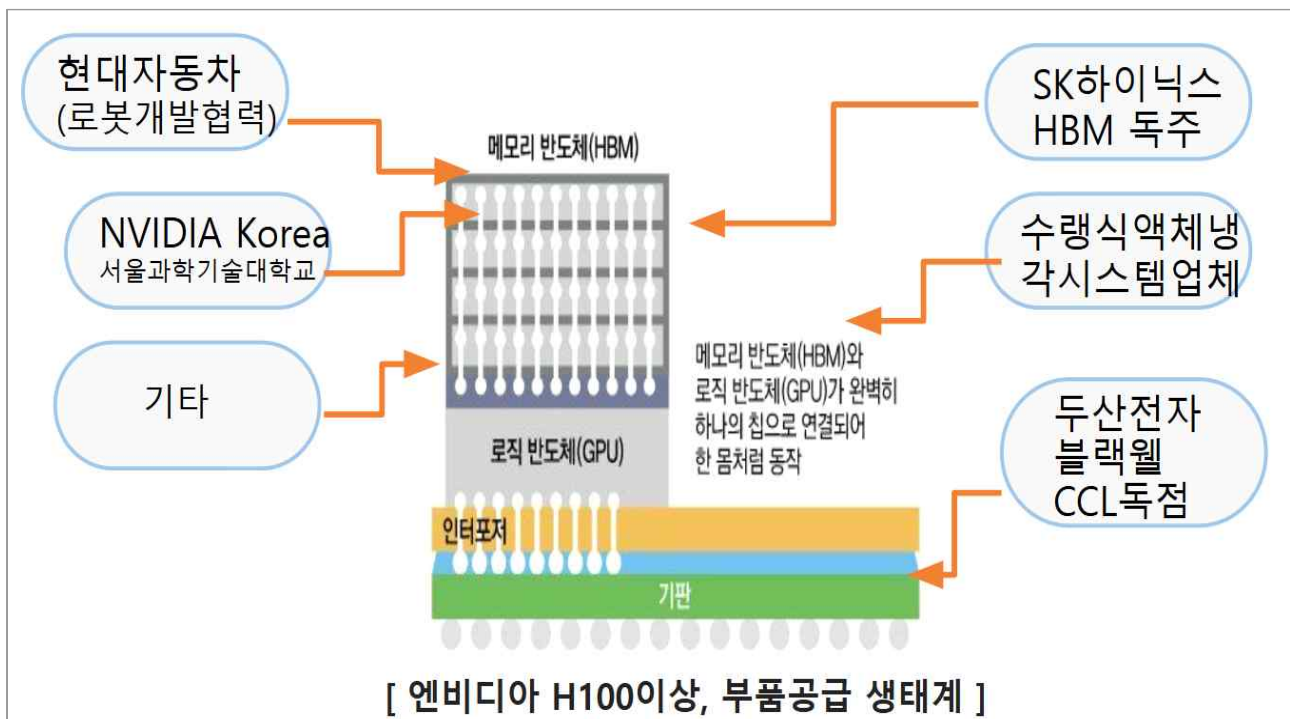


■ 건의사항

- **(AI인프라 투자에 범 정부 사업비 통합 모델 제안)** 정부 특화형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비와 AI컴퓨팅 예산, 로봇예산 등을 통합하여 AI데이터 팩토리 등 인프라 투자 사업 통합 추진



- **(B100 GPU 도입 필요)** 2025년에 B100 GPU 2,000개를 도입하면(약 4MW전력 소비) GPT-4.5급 최상위 모델의 훈련이 가능
 - * 동일한 모델 훈련 시, H100 GPU는 1만 장과 약 15MW의 전력이 소요되어 B100 GPU 도입이 전력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
- **(국가 전략자원 지정 및 부품 생태계 연계)** 국가가 엔비디아 B100 GPU를 전략자원으로 지정하고, 국내 엔비디아 부품 생태계와 연계하여 조달, 이를 통해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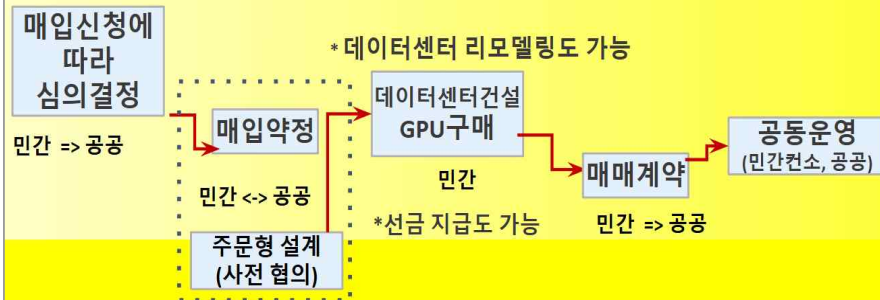


- **(AI인프라는 민간 주도의 조달 및 운영)** B100 조달에 정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기 보다는,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부품 공급 생태계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 2024년에 미국 기업들에 B100블랙웰 360만장예약판매 (젠슨황,3월)
- **(민간에 주문형 GPU센터 의뢰하고 매입 후 운영도 민간에 위탁)** "GPU 조달과 데이터센터 건설·운영"을 민간에 주문형으로 의뢰하고, 공공은 해당 GPU를 탑재한 데이터센터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

☑ 공공이 데이터센터 건설 발주하고 운영할 경우 : 데이터센터 **건설·시설관리사업** (건설사업비, 시설관리예산) **3 년**



☑ 민간이 GPU구매·건설후 공공이 건물통째로 매입하고 공동운영 : 데이터센터 **자산취득업무**(매입자산예산) **6 개월**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과거 R&D 투자 세계 2위 수준이었으나, 최근 예산 급감으로 인해 R&D 기반 경쟁력이 약화

한국 2022년 GDP 대비 세계 2위 수준의 R&D 투자, 연간 총 R&D 투자액 약 112.6조 원(약 846억 달러), 국내총생산(GDP)의 5.21%를 차지, 연구 유형별 비중, 기초 연구 15%, 응용 연구 19.9%, 개발 연구 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 R&D는 감시가 아닌 경쟁의 장이며,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게임과 같음. 혁신 성과 창출 여부가 성공·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선발 여부가 성패를 결정
- 현행 국가 연구개발용역은 ① 사전 설정된 기준, ② 제한된 참여 자격, ③ 과도한 감시 및 보고 의무, 과중한 행정절차 등에 의해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



-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원칙 하에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하여 혁신연구 개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용역업체(연구자) 선정 및 연구 개발 운용의 제도 개선이 시급

■ 건의사항

- 연구개발비 운용의 자율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
 - 연구개발비 일괄 지급 원칙 완화, 성과 달성 시 일정 범위 내 연구비 전용 허용, 다만, 연구비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예산 사용 내역의 투명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꼬리표를 붙여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 확보
 - 꼬리표 예산(Tagging Budget) 시스템 도입하여 예산 사용 시 항목별 출처 명기 의무화 및 재량권 부여와 동시에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꼬리표 예산(Tagging Budget) 시스템은, “예산의 사용 목적과 출처를 ‘꼬리표(Tag)’로 명시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 예산의 항목별 원천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정보화하고, 사용 시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제도

- 성과 연동형 차등 지급제 도입
 - 연구 성과 수준에 따라 후속 예산의 규모 및 지급 여부 결정
 -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유도 구조 마련
- 연구 범위 및 행정 규제의 유연화
 - 과도한 감시 및 보고 의무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연구개발 중 창업 허용 등 규제 개선하여 연구 성과의 시장 진출과 기술 사업화 활성화 유도
 - 범위 내 창의적 확장 연구 허용하여 계획 대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후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
- 연구개발 업체(연구자)선정시 진입장벽 완화 및 제안 다양성 확대
 - 자격기관 중심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비자격 기관, 스타트업, 일반 연구자 등도 참여 가능한 Open Call 방식 도입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 연구자 당사자도 참여

Open Call은 R&D 사업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 참여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개인 연구자도 참여시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

- 선제적 아이디어 제안 허용
 - 정부 지정 주제 외에도 민간 주도 제안 가능하고, 민간과 공공 협력 연구개발 추진 등 다양한 혁신적 연구의 발굴 및 유입 구조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 조성의 한계)** 산업단지는 '60년대 자립경제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시작된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 지정 산업단지들은 차별화 부족, 기존 산업단지와 중복 지정 문제 발생 등 기업들의 입지 선택의 혼선 초래
- **(기업 간의 연계성 결여)** 산업집적 단지 내 기업 간 소통 및 교류결여로 4차산업혁명에 주요 근간인 창업생태계 구축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
- **(자생적 협업시스템 부재)** 기업들이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상호간의 협업 구조가 아닌 독자 운영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 필요

■ 건의사항

- **(민간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타운 공급)** 선도 벤처기업(매출천억이상 중견벤처 등, '23년 기준 908개사)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접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협업 가능한 복합 비즈니스 공간 조성
 - **(공간 구성)** 개별 건물의 65%는 선도 벤처기업의 고유 공간(신사업부, 기술 연구소 등)으로, 30%(의무비율)는 스타트업 입주공간으로, 5%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시설*로 구성

* 지원 시설 : 창업지원, 산학연 연구소, 펀딩, 글로벌 지원, 기업가정신 교육, 기술거래 지원 등의 시설유치 및 조성

〈 유사 사례 〉

- **(제2 판교 테크노밸리내 벤처캠퍼스)** 부지 5만㎡, 연면적 70%는 선도벤처기업의 업무 공간으로 30%는 스타트업 육성 공간으로 운영
 - 3개 획지 선정('18. 5. 5) : 모트렉스 컨소시엄, 우아한형제들 컨소시엄, 인터파크 컨소시엄
- **(anssen's Lab(샌디에고, 미국))** Janssen 그룹의 기술 Pipe-Line과 관련한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향후 전략적 투자 및 M&A 대상기업으로 육성

- 아울러, 입주기업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사업 몰입도 향상을 위해 창업지원 주택 및 복합문화시설, 우수인재 공급을 위한 대학(원) 공동 캠퍼스 설치 등 교육+문화+서비스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 기대효과

- 10개 내외의 선도 벤처기업이 약 2,500개의 스타트업을 직접 육성하여 'Open Innovation' 실현 (신규 일자리창출, 약 1만개)
- **(글로벌 파트너스 센터 조성)** 유망 벤처,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이 가능한 공간 조성
 - 해외 거주 한인 벤처 네트워크* 및 해외 바이어·투자자 등이 사용할 공유 오피스 개념의 복합 비즈니스 센터구축 통해 수출, 투자유치, 현지화 지원 등을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서 역할 수행

*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49개국 83개지부, 회원수 약 1,500명)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 벤처기업 등은 주로 대학 등과 R&D 영역에서 협업해왔으나, 급변하는 시장대응을 위해 창업기업과 사업영역에서의 개방적 혁신 필요
 - * 벤처기업의 협력 현황은 1순위 중소벤처기업, 2순위 대학(산학협력), 3순위 연구기관 순(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4)
- 창업초기기업도 시중의 다양한 혁신상품 속에서 자사 신기술·신사업 모델의 초기판로와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타 기업과 협업을 통한 기술 융·복합이 중요

■ 건의사항

- 천억 벤처 및 매출 500억 이상 중견벤처와 창업초기기업 간 필요기술 개발 및 사업협력 매칭을 통해 개방적 협업 톨 마련
- 천억 벤처기업 중심 협업과제 및 해결과제를 발굴·접수하며, 협력에 대한 제안 내용 검토하고, 상호간 협력 가능 내용의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상호 간 매칭을 진행
- 협업과제 발굴에 대한 과제비 지원 : 10개 과제(과제당 최대 8천만원 이내)

■ 기대효과

- 선배기업(중견벤처 등)과 창업초기 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Connect and Development)
-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 기업 간 활발한 교류(기술, 인력, 인프라 등) 및 투자 활성화 기대
- 대기업이 아닌 벤처천억기업과 창업초기기업의 협업지원을 함으로써,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벤처천억기업의 연구비* 부담 감소

* 연구개발비 비중(2023년 기준) : 벤처천억기업 2.8%, 대기업 1.8%, 중견기업(1.1%), 중소기업 0.8%(2023 벤처천억기업조사)

- 또한 벤처천억기업은 2023년 기준, 총 종사자수 재계 1위(33만 4천여명), 총 매출액(235조원) 재계 3위로 경제 중심축이고,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도 대기업보다 우수함

* 평균 매출증가율 : 벤처천억기업 3.7%, 대기업 △4.3% / 매출액순이익률 : 벤처천억기업 5.3%, 대기업 4.1%

- **(지원유형의 다각화 및 복합적 지원)** 수요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수요-공급)기업간 1:1 매칭뿐만 아니라, 1:N(공급기업) 매칭, 공동문제 인지를 통한 기술 개발(R&D)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공동(협업) 개발 등
- **(네트워킹)** 개방형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여 기술교류 및 우수과제 발굴

■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조달청이 혁신조달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비중 면에서는 미미한 수준
 - '23년 기준 공공조달 규모는 208.6조원까지 성장한 반면, 중앙 및 지방 정부나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규모는 8,157억원에 불과해 시장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조달청)

- (혁신조달) 시장에 없던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해외 주요국(EU, 영국, 캐나다)에서도 추진 중

- 창업·벤처기업 온라인 전용몰인 벤처나라('16년 10월 오픈)의 판매액이 '23년 기준 1,431억원으로 성장했으나 전체 공공조달 시장 규모에 비하면 너무 작은 규모
- 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 본격적인 양산과 시장경쟁에 진입할 때 공공조달 시장은 이들 창업기업이 레퍼런스를 쌓고 성장의 발판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 담당
- R&D 결과와 조달시장 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R&D 과제 결과물이 판로와 연결되지 않아 기업경영상의 위기에 직면
-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지정 제도 중 '유형1'(구 패스트트랙 I, III)의 혁신성 인정 제품 지정 방법중 NEP·NET 등의 인증이 장벽으로 존재하며 중소기업이 출시한 최초제품이 인증을 획득하기에는 기간, 비용, 시장검증 미비 등의 어려움이 여전히 상존

* 중소기업의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5월)

- 인증 중심의 평가로 인한 참여기업의 'Lock-in현상*' 발생

* 공공구매시장의 진입 전까지 연구개발비 투자를 강화하다가 진입 후 연구개발비를 줄이고 이윤극대화 차원의 경영행태를 보이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

- 우리나라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대부분이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에 기반하여 기술 혁신성을 평가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기술혁신성 평가 방식과 지표 개선 필요
 - 인증이 가지는 연구개발의 지속성 저해, 제품별 인증의 지속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비효율, 공공구매시장별 요구인증의 체계화 미흡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요구
 - 공공구매시장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공시장에서 졸업한 후 민간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폐해를 발생시킬 우려

■ 건의사항

- **(인증제도 완화)** 공공조달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하여 창업초기 기업과 같이 도전적인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장벽을 고려한 인증 기준을 완화하거나 인증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혁신성 평가방식 및 지표의 개선 필요
- **(벤처나라를 통한 구매비중 확대)** 전체 공공조달시장 내 중소기업 기술 제품 구매액의 5%를 벤처나라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비율제도를 신설하고,
 - 벤처나라 등록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현행) 2천만원 → (개선) 5천만원으로 확대
- **(R&D 결과물과 조달시장 간의 연결 강화)** 기술혁신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정부 및 민간의 R&D 결과물에 대해 조달시장에 우선 진입할 수 있는 자격(가점, 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협력생태계 조성 역사 및 환경의 차이로 인해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한 자연스러운 시장 형성이 요원한 상황
- 이에, 벤처기업의 혁신역량과 대기업의 시장 창출역량이 결합되어 상호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신산업의 규제개선 및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제안

■ 건의사항

- **(신사업 규제개선을 위한 상설협의체 운영)** 핵심 소재부품의 R&D 방안, 판로 확보 등 전 방위적인 대책을 논의(최적화된 협업모델 구축)
- **(공동해외 진출)** 대기업의 시장 역량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결합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해외 진출 네트워크 구축(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대등한 파트너로써 공동 해외 진출을 모색)
- **(특허개방을 통한 사업화 추진)** 대기업이 보유한 양질의 未실현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에게 개방하여 신규제품 개발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부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및 수익 창출 도모
- **(개방혁신 기반 경쟁력 있는 파트너 발굴)** 대기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 기업을 상생 파트너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항시적으로 가동

* 부실 협력사는 퇴출하고, 우수기술 보유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과감한 영입전략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내부 연구개발만으로 급변하는 시장·기술 환경에 대응 어려움 → 폐쇄형 혁신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 전략 패러다임 전환

* 기업이 외부 자원·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전략

** 오픈이노베이션 도입기업은 미도입기업比 연평균 매출 성장률 59% 높음 (IBM, '22)

- 포춘 글로벌 500개사 중 약 80.2%가 기술 검증 (PoC), 전략적 투자 등 스타트업과 다양한 형태 O/I 활동 진행 중

* (사례)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은 자체 O/I 공모 활동, CVC 등을 통해 스타트업과 협업 및 전략적 투자 진행, 구글은 '24년까지 가장 많은 스타트업 222개사를 인수

- 국내 오픈이노베이션 활동도 증가 추 < 한국·해외기업의 국내 O/I 참여 > 세이나, 대기업 위주 활성화된 측면

* 국내 O/I 공모 참여 대·중견기업 (무협, '25):
('18) 18社 → ('23) 361社

-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까지 장기간 (평균 2~3년) 소요되나, 대다수 지원은 단년도 기술 검증 (PoC)에 그치는 상황



■ 건의사항

-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혁신 촉진

핵심가치	As is	To be	수단
효과성	단발성 협업 및 파편화된 지원 프로그램	오픈이노베이션 전주기 지원 및 정책 거버넌스 정비	지원정책 연계, 플랫폼 및 정책 협의회 구축
다양성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업 이 대기업 중심	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 수요기관 다양화	기관 사내벤처 및 분야별 지원 등
개방성	협업 주체간 제한적 소통	생태계 구성원* 자유로운 소통·협력 * 수요·공급기업, 중개자 등	AC 등 혁신기관의 O/I 중개 역할 강화 등
지속 가능성	개별적 분쟁 조정	기술보호 및 분쟁 중재 메커니즘 체계화	기술보호 제도 연계 등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은 불명확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산업 기반이 약화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상실 중
 -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해외로 영토를 넓히고 있으며, 수십만명의 국내 이용자들은 이러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 중
 - * 코인베이스는 38개 국가로 진출했으며, 바이낸스 국내 이용자 수는 약 38만명('24년 11월)
-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여 국내 시장에서 시장 왜곡 현상 발생 및 외화 창출 기회 상실
 - *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통해 비거주자 외국인의 계좌발급이 금지('17년 12월)
 - 법적 근거 없는 정부 행정지도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 상장비, 높은 가격 변동성 등 발생
 - 가상자산 시장은 전세계와 연결된 시장으로 가격 발견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비거주 외국인의 참여가 필수적
- 가상자산 연계 및 파생상품 서비스를 제한하여 국내 자본 이탈 가속화
 - 다수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ETF 등 파생상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 중*으로, 국내 규제 완화 및 파생상품 허용에 대한 논의가 시급
 - * '24년 상반기, 가상자산 해외 유출 금액이 52조원에 육박 (FIU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정보 비대칭과 보안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건의사항

-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중심'에서 '산업 진흥' 기조로 전환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 **(비거주 외국인 국내 시장 참여 허용)** 수수료 수입을 통한 외화 창출, 세수 확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 개선, 거래량 증가 등 질적/양적 성장 기대 가능
- **(가상자산 연계 및 파생상품 허용)** 국내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를 국내로 흡수하여 국내 자본 이탈 방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도모, 이로 인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안정성 확보 기대

■ 현황 및 문제점

-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실생활은 물론, 자산관리 및 금융상품 선택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자문 역할이 증대
- 그러나 AI 학습용 공공 금융데이터 개방이 낮아 마이데이터 연계 고도화가 늦고, 금융사 API 연계 수준이 낮음
- AI 금융감시 체계 도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금융감시 및 소비자 금융 자문으로서 AI 기술 혁신이 시급한 상황

■ 건의사항

- AI 핀테크 스타트업 집중 지원
 - ① AI 핀테크 지원 정부 예산 확대 ② 자산관리, 신용평가, 리스크 분석 등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 벤처 기업에 정부 펀드 우선 배정 ③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 '인공지능 테스트베드 트랙' 별도 지정(기술력 이외 매출액 등의 기타 물적 요건은 차등 규제 필요)
- AI 기반 핀테크 기술 업체 지원
 - ① 고급 AI 알고리즘, 자연어처리 등 금융서비스에 접목하는 스타트업 등 기업체의 R&D 예산에 세제 지원 ② 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 기술 활용 기업에 클라우드 등 인프라 비용 보조
- 금융사 AI 단계적 도입 유도
 - ① 자산운용, 고객 맞춤형 서비스(비교·추천 등 포함), 불공정거래 탐지, 이해상충 알고리즘 분석, 규제준수 등 금융감시 외 전 분야에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 ② 인공지능 소비자 친화 서비스 도입의 인센티브 지원 ③ 금융 인공지능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과 기존 노동자의 인공지능 활용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AI 학습용 공공금융데이터 개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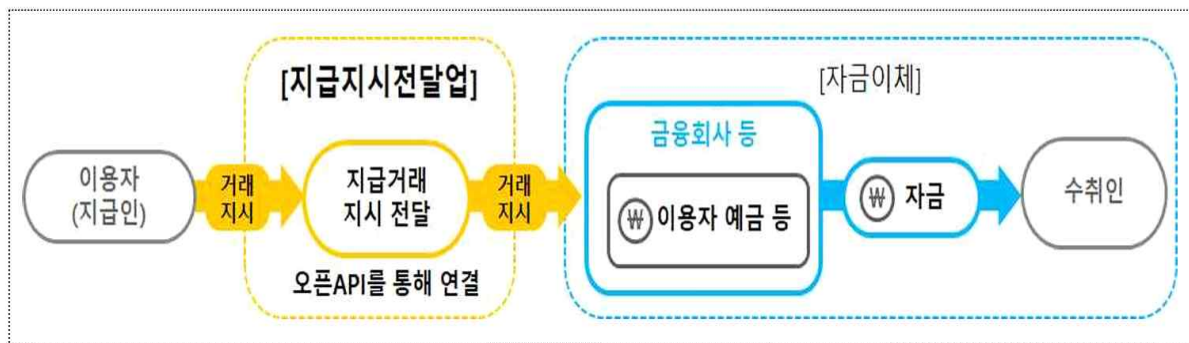
- ① 마이데이터 연계 고도화 및 금융사 API 연계 확대 ②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에 인공지능 학습에 최적화된 비정형 데이터셋 제공 ③ 금융 인공지능 알고리즘 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및 인증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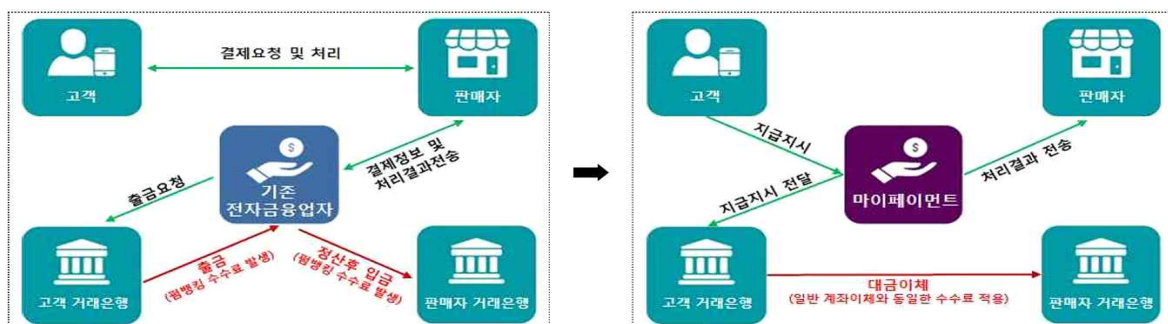
-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와 더불어 오픈 파 이낸스를 구성
 - * 일본은 '18.1. 도입, 지급개시서비스(Payment Initiation Services,PIS)로 불림. EU는 PSD2로 '18.1. 도입
- 지급지시전달업자는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통 해 지급인 계좌에서 수취인 계좌로 자금을 곧바로 이동시키며,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송금과 결제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지급결제서비 스 구현 가능

지급지시전달업자는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보유

〈 지급지시전달업 업무 체계 〉



〈 전자상거래시 처리과정 : MyPayment 도입 전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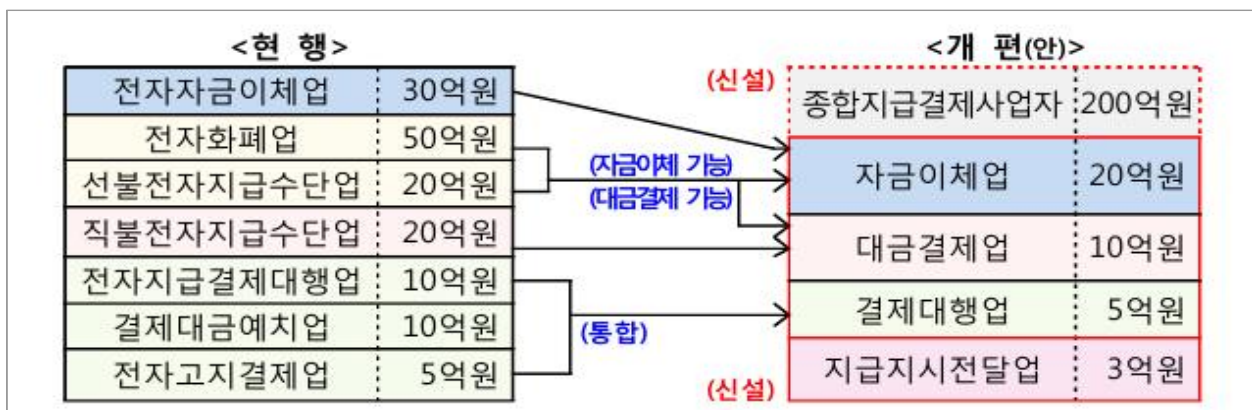


■ 건의사항

• 지급지시전달업 허용을 위한 스몰라이선스

- ① 지급지시전달업은 고객자금의 직접 보유 및 정산 관여가 없으므로 낮은 수준의 자본금 규제 적용 ②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등록 등 특례를 부여하되, 영업 확장시 자본금 등을 상향 적용하는 슬라이딩 스케일(Sliding Scale) 방식

〈 영업 분류를 통한 자본금 차등 규제(안) 〉



■ 기대효과

• 금융회사 간의 직접 송금·결제가 이뤄지므로 수수료 및 거래리스크 절감

- ① 중간 수수료 구조가 사라지는 핀테크 모델이 탄생 가능 ②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업태를 포괄하여, 금융사고 방지가 가능 및 소비자 보호에 이익이 발생 ③ 마이데이터 등과 연계가 용이하여, 종합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창출 ④ 이용자 입장에서 은행 등에 자금을 계속 보관(이자 수취)하며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이용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중저신용자 등이 금융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 시 햇살론 대상자임을 알 수 없어 상대적 고금리의 금융기관 대출상품 이용

■ 건의사항

-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 마이데이터사업자가 햇살론 대상자 확인 후 신청 가능함을 고지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 * 저금리의 정책자금 수혜 대상 확대 및 서민 이자 부담 경감 기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는 대출만 허용되고 예금, 보험, 투자 상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행 중
-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으로 금융상품의 판매 대리·중개를 위해서는 각 금융상품별로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출 외 금융상품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 미비로 인해 금융상품의 비교·추천 불가
- 예금과 보험상품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혁신적 금융서비스 확산에는 제약이 큼

■ 건의사항

- 금융상품 비교·추천을 위한 종합중개 라이선스 도입 및 법제화
 - 금융상품 비교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의 활성화 필요
- 일본의 「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금융서비스중개업을 위한 별도의 법제화
- 보장성 상품(보험)에 대한 정보 인프라 이용에 관한 표준 규율
 - 기성 금융업의 임의적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

■ 기대효과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과잉수요 감소 및 정보 탐색비용을 절감하면서 금융회사가 더욱 많은 혜택을 지급할 요인 제공
- 현재 중개가 허용된 대출상품은 이용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 확보 가능
 - '23년 5월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이후 총 이자비용 절감

및 1인당 이자율 인하 등의 효과가 확인되어 '24년 1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도 추가 출시됨

* '23.5. 도입 이후, '24.10월 말까지 약 29만 명이 대출 이동, 평균 1.53%p 낮은 금
리로 갈아타고,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현황 및 문제점

- 민생금융범죄가 날로 급증 및 다변화되고 있고, 범죄의 특성상 빠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는 금융당국, 경찰 등으로 흩어져 있어 빠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움
 - 금융권역별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 중이지만, 간편송금 등 핀테크 업권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증가 추세

〈2024년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 현황〉

(단위 : 건, 억 원)

구분	'23년		'23년 6월(A)		'24년 6월(B)		증감(B-A)	
	피해건수 *	피해액 **	피해건수 *	피해액 **	피해건수 *	피해액 **	피해건수 *	피해액 **
은행	17,332	1,418	8,998	653	6,177	881	△2,821	+228
비은행	4,069	547	1,735	200	2,175	291	+440	+191
증권사	239	31	133	16	165	43	△25	+3
중소서민금융 등	3,830	516	1,602	184	1,835	434	+465	+188
합 계	21,401	1,965	10,733	853	8,352	1,729	△2,381	+419

* 피해건수 :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피해금이 직접 입금된 1차 사기이용계좌 기준(이하 동일)

** 피해액 : 피해자가 1차 사기이용계좌에 송금·이체한 금액의 합산(이하 동일)

*** 출처: 금융감독원

〈간편송금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구 분	'18	'19	'20	'21	'22.6.
피해금액(억원)	0.78	1.14	14.7	25.5	42.1
피해자수(명)	34	53	349	1,203	2,095

출처: 금융감독원

■ 건의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상 신분증 진위확인망 이용 근거 변경
 - ①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 재량에 의해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이 이용 가능 ②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차원에서 금융실명법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더 적확하며,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 포함
 - 신분증 진위확인망의 전자금융업자 활용으로 제3자의 신분증 악용에 의한 사기 의심계정 생성의 원천 차단 가능
 - 생체 정보 등 핀테크 기술 추가 활용으로 민생금융 범죄자의 사기행위의 비용 증가 및 사기이용 수단의 선택권 축소

■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24년 3월 57포인트로 지난 '2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美 소비자 심리지수 : ('25.1.) 71.7 → ('25.2.) 64.7 → ('25.3.) 57.0 (출처 : 미시간대학교)

- 우리나라의 여성 수출 기업활동은 18.2%로 OECD국가 25개국 중 21위로 글로벌화 수준이 낮고, 현지 시장에 필요한 인증 자격 취득 등에 어려움

* 수출 기업활동 : 매출의 25% 이상이 수출로 이루어진 기업(출처 : 여성기업 자료집 2023년~2024년)

* 여성기업의 부족한 해외 진출 기업역량요소(출처 : 2024 여성기업 실태조사)

해외 인증 자격 보유	59.2%
판매될 제품 가격의 해외시장 분석을 통한 결정	56.3%
해외진출 초기 비용/적절한 마케팅 및 세일즈 예산 확보	55.0%
해외시장 유통채널 조사	54.9%
외국의 관련법,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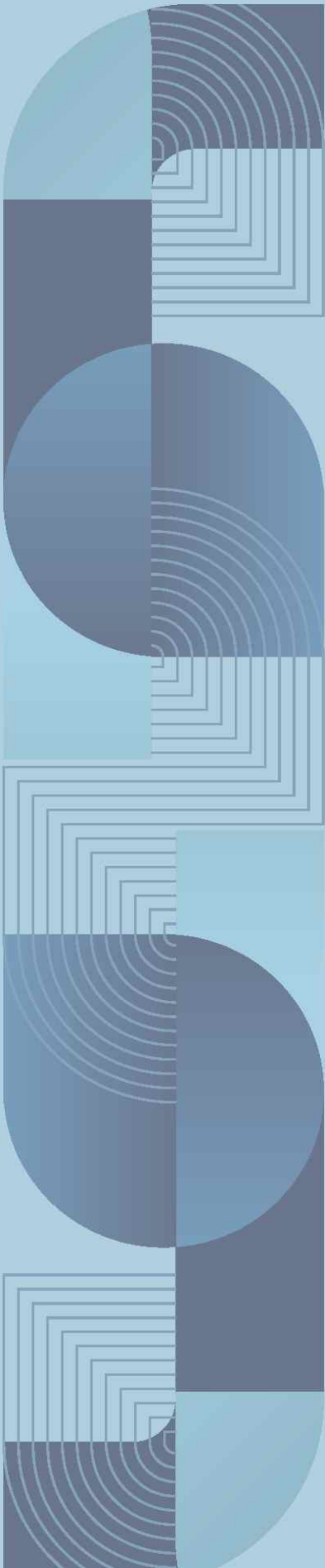
- 여성벤처기업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24년 전체벤처기업의 13.1%의 비중에 불과하며 성공한 벤처기업이 적어 시장에서 충분한 신뢰와 롤모델이 부족한 상황
-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있는 여성벤처기업을 선발하여 집중 육성·지원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성공한 여성기업가 롤모델이 되고, 우수한 여성인력의 창업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건의사항

-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있는 여성벤처기업 집중 육성)** 「(가칭)글로벌 선도 여성벤처 100」등 시범사업을 통해 글로벌 성공가능성이 높은 여성벤처기업을 집중 육성·지원

1-3

지속가능 성장기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23년 기준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 중 기술유출·탈취를 경험한 비율은 2.0%이며, 추정된 총 피해금액은 5,442.6억원, 평균 피해금액은 18.2억원을 기록
 - 대기업은 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계약 체결 실패 및 거래 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거절이 곤란한 상황
 - '18~'21년 기간 동안 벌어진 대·중소기업 간 특허/상표권 분쟁의 경우 '18년 50.0%에서 '19년 60.0%, '20년 71.4%, '21년 75%로 매년 증가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이 한계를 보임

■ 건의사항

- **(정부의 적극적 역할 기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제를 단가인하, 구두 발주, 기술탈취 등 개별현상을 막기 위한 측면보다는 신고의 활성화, 면밀한 감시와 실질적 처벌의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기대이익을 낮추는 본원적인 해결방안 필요
- **(기술탈취 관련 제도 강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액 산정을 이유로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증거제출을 법제화하는 등의 제도 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은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이 중소·벤처기업* 이고 이들 기업 10곳 중 9곳은 소송 비용 및 기간을 감당할 수 없어 보유 중인 특허 등 지식재산 권리 포기

* 2021년 국내 지재권 분쟁실태조사 ('22.1, 지식재산연구원)

- 최근 5년(2018년~2022년) 간 특허권 침해금지를 청구한 민사 본안 소송(1심)의 평균 처리일수는 581일(19개월), 침해금지 가처분은 152.2일로 나타났으며, 특허권자의 1심 승소율은 20.3%에 그쳐 중소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신호
- 분쟁 기업 10곳 중 9곳은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보다는 특허전문가인 변리사 선호*하지만,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 특허소송 수행에 다양한 애로 발생

* 국내 중소·중견기업 174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21. 9, 파이낸셜뉴스)

- 특히, 특허 등에 특화된 로펌은 대형로펌으로* 대리인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중소·벤처 기업에게 매우 높은 hurdle**

*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있는 대형 로펌이 사실상 독점('22.07.20. 파이낸셜, IP패권 경쟁 치열...기술기업 보호할 제도마련 시급)

** 중소·벤처 연간 영업이익 평균은 1~1.2억, 중소·벤처 특허분쟁비용 평균은 0.9~1.2억원('22.11. 특허청 보도자료)

- '16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은 서울 등 6개 법원에서만 소제기 가능, 그러나 이를 숙지하지 못한 변호사가 엉뚱한 법원에 소송제기*하는 사례도 발생

* “法 시행 5년 지났는데...엉뚱한 법원에 특허소송 잇따라('21.04. 서울경제)

- '23년 6월 개원한 유럽특허통합법원(UPC)*은 재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진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을 갖추게 되는 등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는 중

* 유럽단일특허 및 유럽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법원

- UPC는 영국의 제도를 도입해 변리사의 단독소송대리도 인정
- 또한 총 105명의 UPC 판사 중 68명이 기술판사, 이 중 38명이 변리사로 모든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이 특허전문가로 풍부한 기술적 논의가 가능한 환경

* '23.09.27. 조선일보, 「'기술 판사'가 60% 넘어... 가처분 판결 3개월내 속전속결」

■ 건의사항

- **(변리사 소송대리인 추가 허용)** 특허침해소송 시 분쟁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변리사도 선임할 수 있도록 선택권 추가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리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이를 위해선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벤처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하는 벤처·스타트업은 equity financing의 특성상 주주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다양한 형태의 주주간 계약으로 인해 기업의 거버넌스가 복잡해지고 법률적 이슈가 증가
- 한편,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은 절차 법리 구성, 실체적 권리관계의 복잡성에서 차이를 보이나 국내 법원은 민사와 상사소송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며,
 - 국내 벤처투자 시장과 계약의 역사가 길지 않아 담당 법관의 경험에 따라 해당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존재
-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주가 회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사법원을 도입하여, 회사법 및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빠르게 분쟁에 대한 판결을 하고 있으며
 - 그 결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90%가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또한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근거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추세

■ 건의사항

- 타국가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상사전문법원 또는 주요 법원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문재판부 도입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선진국들은 장기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으로 선진국보다 짧은 상황

〈 탄소중립 추진 선진국 소요기간 〉

- | | |
|------------------------------|-------------------------|
| • 영국·프랑스 : 60년(1990년~2050년), | • 독일 : 55년(1990년~2045년) |
| • 미국 : 43년(2007년~ 2050년) | • 일본 : 37년(2019년~2050년) |

- 게다가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탄소 중립 기술 선진국에 비해 우리 기술역량은 80% 수준(미국 대비)이며, 특히 CCU*의 기술은 선진국에선 상용화 단계이나 국내는 기초·원천 연구단계 수준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탄소를 활용해 다른 제품이나 에너지로 전환

-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추진 계획과 업계의 친환경 미래기술 속도 차이가 현저하여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
- ‘ESG경영 대응 동향조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1.7)를 보면 ESG 경영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은 25.7% 불과하며, 매출 규모가 낮을수록 ESG 경영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경영 실사에서도 중소기업 ·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ESG경영 대응 역량이 부족(대한상의, 2024)

■ 건의사항

- **(민간주도의'혁신 에너지산업 생태계'조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국책(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는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여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혁신벤처기업들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세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 이외 세제지원(기술료 부담완화) 및 전 방위적 투자확대 등 ‘탄소중립 선도국’을 추격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
 - **(파격적인 규제타파)** 관련 분야의 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진입규제 및 불필요한 규제를 파격적으로 타파하여 탄소중립 정책과 괴리감이 없도록 정부의 유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필요
 - **(전문인력 양성)** 공정전환과정 등 탄소중립에 관한 신기술 증진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 전문가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이 관련 인력을 직접 채용, 파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기업 규모 · 특성별 ESG 평가지표 마련)** 정부의 ESG 경영 확산과 강제를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SG 관련 입법 및 인증제도 준비에 세밀한 검토 필요
 - ESG경영 도입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기업 규모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특성별(혁신벤처 vs 일반) ESG 평가지표를 다원화하고, 평가지표 개발 과정에 중소·벤처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은 0.78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24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3만명 후반으로 합계출산률 0.74명을 기록.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

* '22년 OECD평균 합계 출산률 : 1.51명(출처: 2024 OECD 한국에 보는 사회)

- 2025년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증가, 육아휴직 기간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 증가 등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은 확대되고 있으며, 1인 사업자·프리랜서·예술인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2인 이상 사업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부족

- 오늘날 여성기업자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성기업인에 대한 출산·육아 지원범위가 확대하여 여성기업인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기업경영과 자녀양육을 병행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22년 국내여성기업 수 : 약326만개, 여성기업 비중 : 40.5% (출처:여성경제연구소)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대체인력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창업 초기 기업, 매출이 낮은 기업은 어려움이 있음. 2인 이상 사업체의 대표자도 기업의 업력, 매출 규모 등의 고려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

■ 건의사항

- **(여성기업인이 출산·육아와 기업경영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
기업의 업력, 매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2인 이상 사업체의 대표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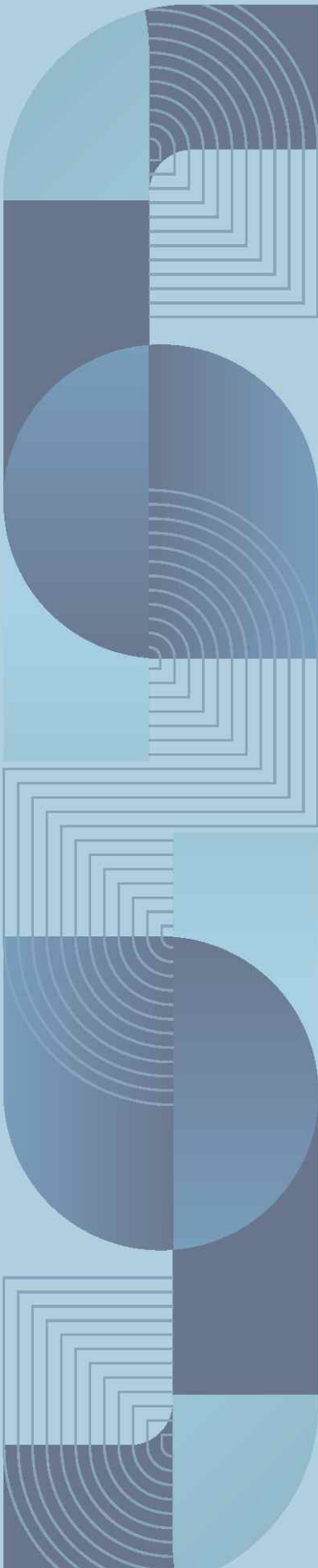
2

혁신 금융 확대



2-1

벤처투자 패러다임 전환



■ 현황 및 필요성

-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 활성화가 필요
- 그러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반면, 민간부문** 벤처투자 비중은 감소

*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출자자 비중이 전년 대비 약 11.3% 증가 : ('23) 2조 1,770억원 → ('24) 2조 4,226억원

** 개인, 일반법인,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 출자자 비중이 전년 대비 약 25.1% 감소 : ('23) 10조 8,558억원 → ('24) 8조 1,324억원

- **(벤처펀드)** 낮은 세액 공제율과 양도소득 비과세 미적용 등으로 민간 자본의 유입이 제한됨에 따라 벤처펀드 시장의 성장 속도 둔화

-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액 공제율은 현재 5%*로, 반도체시설투자 세액 공제율(20~30%) 대비 낮은 수준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벤처 사모펀드 포함)에 설립 시 또는 설립 7년 이내 유상증자로 출자 시, 취득금액의 5% 세액공제 (국세청, 2024)

-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 대상도 업력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후기투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3항

- 또한, 내국법인이 출자한 벤처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후속투자를 할 때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 13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

- 아울러, 금융기관을 포함한 내국법인은 벤처펀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출자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세제혜택(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벤처투자에 따른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받는 개인, VC, 기금운용법인과 달리 일반법인은 벤처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법인세에 합산)

- **(민간 벤처모펀드)** 간접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최대 8%이나, 세액 공제율이 한정적으로, VC 중심의 투자 확대가 제약
 - 세액 공제 혜택이 한정적이어서, 벤처모펀드로의 민간 자본 유입이 부족해 혁신 벤처기업 지원과 성장 촉진에 한계

■ 건의사항

구분	세액공제율 현황	주요 건의사항
벤처펀드	5%	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5% → 10%)
민간 벤처모펀드	최대 8% (투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 공제율 대상 확대 및 상향 조정 (최대 8% → 15%)

* 직전 3개 연도의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금액 평균액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의 3%

- **(벤처펀드)** 벤처투자의 대상이 되는 벤처·스타트업은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점을 고려,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10%)하여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투자시장 환경 조성
 - 벤처투자 세제 적용 대상 기업의 업력 제한을 폐지하고, 벤처펀드가 같은 기업에 후속투자를 할 때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기준을 완화
 - 또한, 내국법인이 직접투자 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 대상 확대 및 상향 조정(~15%)을 통해 벤처모펀드의 자본 접근성을 개선하여 벤처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확보

■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CVC 제도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활성화 수준이 낮으며, 외부자금 출자 한도(40%)와 해외기업 투자 제한(20%) 등 규제가 엄격해 벤처투자 시장의 확장에 제약 발생
 - * 2024년 3분기 기준 국내 CVC의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24% 증가(아세안익스프레스, 2024)
 - 국내 CVC는 별도 규제가 없는 외국에 비해,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여러 규제(100% 지분보유 자회사, 부채비율 제한, 펀드에 외부자금 조달 제한, 해외투자 제한 등)가 적용
- 해당 규제로 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이 글로벌 벤처생태계와 연계되기 어려워지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 초래

■ 건의사항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CVC의 외부자금 출자 한도 및 해외기업 투자 제한을 완화하여 벤처투자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
- CVC에 적용된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대기업이 벤처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CVC 규제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20조의3(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개정 추진
 - CVC의 부채비율 상한 '200%→500%', 외부자금 출자비중 '40%→60%', 해외투자 제한을 총자산의 '20% 이내→자율'로 완화
-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벤처기업이 보다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 현황 및 필요성

- 모험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이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으나, 법안은 한 차례 폐기된 후, 최근 재발의
 - * 법안 추진 경과 : 금융위 BDC 도입 발표('18.11) → 법안 입법예고('20.3) → 법안 재입법 예고('21.8) → 국회 상정('22.9) → 임기 만료 폐기('24.5) → 22대 국회 법안 재발의 및 정무위 전체회의 회부('24.11)
- BDC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공모하여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폐쇄형 공모펀드로, 자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금전 대여도 가능
- 기존 벤처펀드의 자금 회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으며, IPO를 통한 exit 가능성이 증가하고, 투자자에게는 환금성 향상을 제공
- BDC 도입 시,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기업 자금조달 경로의 다각화 실현
 - 벤처기업 자금의 60% 이상이 정부 정책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책 변화에 따른 예산 변동성으로 자금 조달의 예측 가능성 저하
 - * 벤처기업은 신규 자금 조달 시 정책금융기관을 주요 경로로 활용(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4)

■ 건의사항

-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공시 의무 강화와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 필요
- BDC를 민간 벤처모펀드로 활용할 경우, VC의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성을 통해 BDC 수익성 향상과 함께 안전성 강화가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미국은 실리콘밸리 등 2021년 기준 벤처캐피탈(VC) 투자액은 약 3,300억 달러로 추산(전 세계 최대 규모)
 - 구글·MS·애플·메타·테슬라 등은 모두 스타트업 단계에서 출발한 뒤 IPO·M&A 등을 거치며 수십 년 만에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성장
 - * 실리콘밸리와 나스닥 간 긴밀한 자본 조달 루트가 존재해 전 세계 투자금을 흡수하고, 이는 다시 투자자에게 높은 투자 성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이스라엘은 인구 약 900만 명(2023년 추정) 수준의 작은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R&D 투자 비중(약 4.9%)이 세계 최고 수준
 - 적극적인 정부 지원, 군복무 중 획득하는 기술 역량, 해외 진출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다수 배출
 - * 이스라엘 VC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200억 달러 내외로 추산되며, 해외 VC 및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이 활발
- 한국은 민간의 벤처투자가 부족하고, 회수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존재
 - 시장 메커니즘(성과에 따른 자본 유입·유출)보다는 정책적 배분 성격이 강해, 고위험·혁신 분야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존재
 - 국내 스타트업이 IPO까지 장기간 소요, 비상장주식 세컨더리 마켓 미흡
 - * 특히, 미국(평균 6~9년) 대비 길며, 상장 전 단계(Pre-IPO)에서 지분을 유동화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세컨더리 펀드가 제한적
 - 국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우수 스타트업이라도 높은 기업가치 인정이 곤란
 - * 글로벌 진출·해외투자 유치 프로그램(예: K-Startup 그랜드챌린지, KIC 등)은 있으나, 아직 실리콘밸리·유럽·동남아 등에 비해 지원 규모·현지 네트워크도 부족
 - 코스닥이 한국거래소(KRX) 내 시장 중 하나로 존재해, 운영상 자율성·

혁신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아시아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글로벌 허브 역할이 제한적

■ 건의사항

- 민간자금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대폭 확대
 - 민간자금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대폭 확대
 - * 소득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고액자산가·엔젤투자자·법인투자자가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유도
 - 초기 투자 지분 양도 시 공제권 ‘이전(移轉)’
 - * 최초 투자자가 3년 이내 지분을 양도할 경우, 이를 인수한 자(또는 펀드)가 3년 이상 보유 시 해당 공제 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설계
-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 도입
 - *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하고, 거래 기록·청산 과정을 스마트컨트랙트로 자동화하고, 관련 국제 규제 트렌트를 적극 반영
 - 세컨더리 펀드 및 전문 브로커 육성
 - * 장외시장 거래를 전문적으로 중개·유동화해주는 기관(브로커리지),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 및 거래 수수료율 하향 조정,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스타트업 지분을 적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인프라 개선
-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
 - 기술·인력·법률·마케팅 측면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 컨설팅 제공
 - * KOTRA, 중진공, 무역협회 등과 연계
 - 해외 현지 VC·AC(엑셀러레이터)와의 네트워크 강화, 스케일업 펀드 조성
 - *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KOTRA 현지 사무소가 실리콘밸리·유럽·동남아·중동 지역에서 우수 스타트업을 선별·매칭하는 역할 강화 및 국내 VC와 해외 VC 간 공동 투자(Syndication)를 장려
- 코스닥의 별도법인 분리 및 ‘아시아형 나스닥’으로 육성

- 한국거래소(KRX) 산하에서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상장기준·심사제도·마케팅 전략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
 - * 미국 NYSE와 나스닥처럼 ‘경쟁체제’로 전환해, 혁신기업·벤처기업 상장 유치 경쟁력 제고
- 비상장 거래플랫폼과 연계한 ‘창업→상장’ 전 단계 통합 관리
- 별도법인 코스닥 내에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설치(또는 자회사 운영)
- 전문·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형태의 투자와 연계하고, 이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코스닥 상장 시 가점 부여

■ 현황 및 필요성

-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및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개인투자는 '21년 이후 감소세 지속*

* 개인투자액 규모 : ('21) 1조 4,843억원 → ('22) 1조 1,805억원 → ('23) 1조 723억원

- 또한, 벤처투자*의 경우에도 개인투자의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창업 3년 이하 초기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22년 3조 3,594억원에서 '24년 2조 2,243억원까지 33.8% 감소(중소벤처기업부, 2025)

* 벤처투자회사·조합+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

** 벤처투자 중 개인 출자자 비중 : ('21) 16.2% → ('22) 13.1% → ('23) 11.0% → ('24) 10.4%

*** 초기기업 벤처투자 : ('22) 3조 3,594억원 → ('23) 2조 6,808억원 → ('24) 2조 2,243억원

- 따라서, 초기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회복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의 도입 및 강화가 시급

■ 건의사항

-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간접 또는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여 개인이 벤처투자에 적극 참여를 유도
 -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간접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확대(현행 10% → 30%)하고, 특히 창업 3년 이하 기업 투자 시 50% 공제
 -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 시 소득공제율 구간 및 공제 비율을 확대

〈 소득공제율 확대(안) 〉

현행('18.1~)	확대(안)	
	창업 3년 이하 기업 투자	창업 3년 초과 기업 투자
• 3천만원 이하 : 100%	• 1억원 이하 : 100%	• 5천만원 이하 : 100%
• 3천~5천만원 이하 : 70%		• 5천~1억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 1억원 초과 : 30%	• 1억원 초과 : 30%

■ 현황 및 필요성

-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펀드출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하나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비중은 10% 내외로 크게 증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은행·보험·증권 출자비중(%); (17년)6.3→(18년)13.7→(19년)6.7→(20)10.0

- 금융기관별 BIS(은행), RBC(보험), NCR(증권) 등 산정 시 벤처투자 펀드의 위험가중치를 높게 적용

〈 금융기관별 요구수준 및 적용 내용 비교 〉

구분	요구수준	벤처펀드 적용
은행	BIS비율 8% 이상	벤처펀드 출자자산을 비시장성 지분증권으로 분류하고 위험가중치 400% 적용
보험	RBC비율 100% 이상	벤처펀드의 Capital Call 약정금액에 대해 신용환산율 50% 적용
증권	NCR비율 100~150%	투자조합 출자금액에 대해 16%의 위험값 적용

- 위험가중자산 비중이 크면 BIS 비율 등을 유지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벤처투자펀드 출자를 기피하는 상황 초래

■ 건의사항

- 은행 등 금융기관의 BIS, RBC, NCR 산출시 벤처펀드 출자를 위험자산에서 제외
 - 민간출자 확대를 통해 정책자금 위주의 벤처투자생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민간중심의 시장 형성

■ 현황 및 필요성

- 모태펀드는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을 견인

* 모태펀드 조성('05) 이후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15년간('08~'23) 연평균 16% 이상 성장 (중소벤처기업부, 2024)

〈 모태펀드의 정의 및 현황 〉

- (정의) 모태펀드는 정부가 기금 및 예산을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상위의 펀드(fund of funds)'
- (결성일) 2005년 7월
- (현황) 10개 정부 부처가 출자하여 9.9조원 운용('24년말 기준)
- (운용기관) 한국벤처투자

- 모태펀드는 사회적 투자, 기술 개발·사업화 등 민간 참여가 부진하거나 시장조성이 미흡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투자, 시장을 견인

* 출자 분야 : 재창업기업, 여성기업, 창업초기기업, 지방소재기업 등

- 벤처투자의 선행지표인 신규펀드 결성이 전년동기 대비 15.4% 감소한 5.8조원을 기록('24년), 향후 벤처투자가 더욱 감소할 가능성
-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위험·장기투자인 벤처투자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을 시, 투자절벽*으로 이어질 우려

* 민간 출자 급감 → 신규 펀드결성 급감 → 시차를 두고 3년에 걸쳐 벤처투자 급감

■ 건의사항

- 모태펀드의 존속기간(30년) 규제를 삭제하고 신규예산을 지속 확대하여, 위축된 투자심리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책 의지 확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개정)

* 모태펀드 신규예산(조원) : ('21)1.43→('22)0.94→('23)0.68→('24)0.97→('25)0.99

- 모태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예산 확대 시 민간 출자금도 동시 확대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리스크 높은 신생 벤처기업의 성장 모멘텀을 촉진 위한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로 조성된 모태펀드가 후기 성장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증가
 - * 7년 초과하는 후기 기업 투자가 23년 벤처투자가 5조1천억(47.3%)에서 24년 6조3천억(53.3%)으로 23.3% 증가한 반면, 3년 미만 초기 기업 투자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2조2천억(18.6%)에 불과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2025.02)
-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운영 재원 중 초기 창업기업을 담당하는 AC 참여 펀드는 전체 7% 수준으로 매우 저조
 - * 24년 모태펀드 운영 자조합 결성 금액이 총 3조3천억원 규모이며, 이 중 AC 참여한 펀드는 2천4백억에 불과하여 전체의 약 7% 비중
 - ** 이 중 VC와 AC 함께 조성한 Co-GP 펀드 4건, 결성규모 1천4백억으로 AC 참여 펀드 전체에서 약 60.4% 차지. 특히, AC 참여펀드 대부분은 지역투자 계정으로 AC 투자전문화를 위한 펀드 조성 시급 (25년 창업초기 소형 부문 150억 조성)
- 정부 등록 AC가 500개사 육박하나, 모태펀드 참여 운영사는 10% 수준이며, 이마저도 대형사, VC 자회사, 공공형 투자사 등이 혜택받아 신생/중소형 AC의 투자 참여 제한적
 - * 24년 모태펀드 참여 AC 운영사는 34개사로 기존 모태 참여로 수혜받는 운영사가 22개(64.7%), 지역기반 공공형 AC가 13개사(38.2%)로 많은 부분을 차지

■ 건의사항

- 모태펀드 내 5천억 규모 AC 전용 초기 창업기업 투자펀드 조성
 - 2025년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1조원) 고려 시, 20% 수준
- 모태 출자금액 50억 이내 소형 펀드로 액셀러레이터의 초기기업 성장·보육을 필수로 하는 전용 투자부문 조성
 - 모태 5천억 재원을 운영사별 50억 이내 출자 시, 100여개 AC 운영사 출자 가능하며 펀드별 최소 50여개 기업 투자되어 연간 1,000여개 혁신기업 발굴-투자 가능

■ 기대효과

- 등록된 500여개 AC의 투자 기능 강화로 생존력 높은 혁신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꿈꾸는 창업가의 창업도전·성장 생태계 조성
- 초기 투자 펀드 확대로 지속적인 시드단계 혁신기업을 양성하고, 후속단계 VC의 투자 적합 기업 발굴하는 선순환 체계 확립
- 모태펀드의 본래 취지인 벤처투자 산업 육성을 복기하며,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로 K-스타트업이 발현되는 글로벌 창업강국으로 도약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결성시한 단축, 규모 확대 등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도입 필요
- 대표적인 정책성 출자기관인 성장금융/산업은행의 정책형 뉴딜펀드에는 초과 수익 이전·후순위 보강·콜옵션 등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적용
 - 모태펀드는 추가 성과보수 지급 등 주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운영중

〈 모태펀드와 정책형 뉴딜펀드의 민간 인센티브 비교 〉

	모태펀드	정책형 뉴딜펀드
초과 수익이전	-	펀드수익률이 기준수익률 초과시 정책출자자 배분수익의 10%를 민간출자자에 지급
우선손실충당 (후순위 보강)	(2021 신설) 일부출자사업*에만 손실 발생시, 모 태펀드가 민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조합결성 최소승인금액의 10% 이내 에서 우선손실충당을 부여 *금년 1차 정시 출자사업 7,500억 원 중 '멘토기업 매칭출자' 분야(1,000 억원)	펀드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 민 간출자분의 10% 이내에서 정부 재원으로 우선손실 부담
콜옵션	(2021 폐지) 금년 1차 정시 출자 사업부터 제외 (2020년 출자사업까지 부여)	투자기간 종료시점에서 사전에 정 한 행사가격으로 정부출자금 부 분을 민간출자자가 매입할 권리 부여

■ 건의사항

- 모태펀드 자펀드에 성장금융의 정책형 뉴딜펀드의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수준을 적용하여 민간자금 유입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벤처기업이 사업 영위 과정에서 쉽게 겪는 난관 중 하나가 자금 조달 문제로,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기업 성장을 꿈꾸기 전 생존 문제에 봉착
- 벤처·스타트업 투자생태계는 스타트업, 투자자(VC, 엔젤, 크라우드 펀딩 등),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조성
- 창업-성장-엑시트-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생태계 성장을 가속화해야 하나, 국내 벤처투자는 창업기업 초기투자, 신용대출 및 VC의 초기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수준에서의 투자가 취약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까지의 연속된 지원이 부족
- VC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투자를 시행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
- 우리나라도 '20.12부터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인정하였으나, 여전히 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CVC 도입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적극적인 촉진이 필요한 상황
- 미국의 경우 액셀러레이터나 전문 VC 등 투자·보육의 역할을 하는 중간조직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어 스타트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하지만 국내는 액셀러레이터 기반이 초기단계이고, VC의 역할이 재무적 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전략적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발명자 인센티브만으로는 기술창업 활성화에 한계
- 실리콘밸리는 2002년에 15억 달러(약 1조 6306억원)에 매각된 페이스북 창업 멤버들이 서로 밀고 끌어주는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실리콘 밸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권력 집단이 된 것에 반해 우리나라 벤처투자의 대부분이 정부의 투자에 의존

■ 건의사항

- **(메가펀드 조성)** 메가펀드(Mega-Fund, 5억 달러 이상 규모의 펀드) 급의 한국형 비전펀드의 조성함으로써 정부는 자본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은 펀드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배당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과 동시에 벤처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지원 가능

* ('22년 3분기 해외 VC 시장 동향(한국벤처투자)) 미국 벤처 캐피탈 시장의 경우, '20년 3분기까지 메가펀드가 역대 최고 수준인 35개가 결성되어 전체 펀드 개수의 15.4%를 차지. 국내 역시 100조 규모 등 세계적 글로벌 펀드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규모를 키워야함

- **(글로벌 투자 활성화)** 글로벌 투자에 대한 각종 펀드의 용도, 국내 투자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과감하게 좋은 조건으로 해외 VC들이 국내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모태펀드가 운영 중인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 지속 확대

*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한국벤처투자) 2013년부터 글로벌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기업은 이후 세콰이어 캐피탈, 골드만삭스 등 해외 유명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임

- 글로벌 투자자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미국 등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국가에 정부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
- 「외국환관리법」, 「외국환투자법」 등 해외 투자유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도 강화

- **(사모펀드의 개인신용 P2P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선진국에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P2P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내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의 완화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전문개인투자자’란 엔젤투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제도로,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 투자자를 등록

구분	등록요건	비고
투자실적	최근 3년간 창업·벤처기업에 5천만 원 이상* 투자(6개월 이상 보유)	필수
경력	① 상장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3년 이상) ② 투자심사역(2년 이상) ③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 ④ 이공·상공계열 박사 ⑤ 전문개인투자자 양성 교육 이수자	택1

* 현재 투자실적 기준이 1억 원 이상이나 '25년 중 5천만 원으로 완화 예정

- 초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슈퍼엔젤*과 같은 전문개인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뛰어난 투자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이끌어 펀드를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전문 투자자

- 국내 전문개인투자자는 230여 명에 불과하며, 이 중 약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은 더욱 심각한 상황('25.2월 기준)
- 전문개인투자자 수가 저조한 이유는 등록요건은 까다로우나, 실질적인 혜택은 없기 때문

* 기존 주요 혜택이었던 '엔젤투자 매칭펀드'(1920억 원)이 '24년 종료된 이후,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펀드'가 결성됐으나, 창업기획자 등 기관투자 중심으로 운영

■ 건의사항

- 전문개인투자자가 GP로 참여하고 비수도권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 1:1 매칭 출자하는 전용펀드(약 2천억 원) 필요

*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펀드 등 혜택이 추가될 경우, 전문개인투자자는 약 2천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21~'23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투자자는 약 1만 명 이상)

- 해당 펀드는 프로젝트 펀드*로 투자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으로 한정하여, 지역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기여

* 투자 대상을 사전에 확정된 뒤 출자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예방

■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11조 9,000억원으로 2017년 2조 4,000억원 대비 5배 이상 증가 하였지만, 벤처기업 투자금액 소득공제는 2018년 시행 이후 변동이 없음
- 2018년 벤처기업 투자금액 소득공제 시행이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7년 대비 25%가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유효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해당 법령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향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축소 우려가 있어 기간연장이 필요
- 아울러, 투자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공제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공제금액을 상향을 통해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유도 필요

* 국내외 벤처투자 소득공제 한도 및 비율(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명	제도명	공제/면제 한도 및 비율	보유기간
한국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	투자금액에 따라 100%, 70%, 30% 공제 (5천만원이상 30%)	3년 이상
영국	기업가투자지원제도	투자금의 30% 소득세 공제 (기술집약기업 최대 £2,000,000/약38억원)	3년 이상
캐나다	SR&ED	12만 캐나다 달러 (약1억2천만원)	-
일본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	투자금의 최대 40% 또는 800만엔(약8천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

- 또한, 여성벤처기업은 일반여성기업 대비 우수한 매출·고용 성과를 창출하는 성공모델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 여성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 시 우대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의한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 '23년 평균매출액/고용 : (여성벤처기업) 3,940백만원/12.2명, (여성기업) 1,977백만원/9.5명

** 여성벤처기업 수 : ('21) 4,104 → ('22) 4,023 → ('23) 4,842 → ('24) 4,996

■ 건의사항

- 벤처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개선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 연장 및 금액한도 상향
- *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여성벤처기업 대상 투자 출자 등에 대한 우대 조항 신설
- * 관련 규정 : 여성기업지원법 제10조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세제혜택 등을 부여 중
 - 엔젤투자는 '18년 6,304억원('21.2월 소득공제 집계기준)으로 18년 만에 제1벤처붐 시절'00년 5,493억원을 초과 달성
 - 제1벤처붐('00년 2조원)의 2배 이상인 벤처투자('21년 7.6조원)에 비해, 엔젤투자는 제1벤처붐 시절 수준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부족한 수준
-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3년 이내 기술성 및 R&D 우수기업 등에 대해 30 ~ 100% 소득공제 혜택 부여
 - * 소득공제 시점에 대상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가능
- 양도차익 비과세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벤처기업 전환 3년 이내 기업에 출자 후 3년 이상 보유 시 100% 면제
 - 이에, 엔젤투자의 대상이 벤처기업 인증된 기업에 치중됨에 따라 엔젤투자가 필요한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가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
 - 더불어, 정부에서는 엔젤투자(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비율 및 대상을 계속적으로 확대 및 개편해나가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보수적 관점으로 변화가 없는 실정
 - * (소득공제 대상)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기업, R&D 지출 등
 - ** (양도소득세 대상) 벤처기업(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 전환 3년 이내)

■ 건의사항

- 손실위험이 큰 창업자·벤처기업에 개인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일원화
 - *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현황 및 문제점

- 엔젤투자는 창업 초기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특성 상, 위험도가 높고 회수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엔젤투자자의 애로사항 발생
 - 국내 엔젤투자자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6%가 '투자회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엔젤투자 추천 의향이 낮은 것으로 집계

* 출처 : '20년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산업연구원)

-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 후속 투자 주체의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엔젤투자 선순환 구조(엔젤투자 → 회수 → 재투자) 구축에 난항 발생
- 국내 2,50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엔젤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극소수(3.7%)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기업(72.9%)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호소

* 출처 : '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벤처기업협회)

■ 건의사항

-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등이 엔젤투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 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비과세 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창업생태계 및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
 - 벤처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엔젤투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후 양도차익 발생 시 법인세 비과세 대상요건을 완화할 경우, 보다 공격적인 엔젤투자자 지분 매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엔젤 투자 → 회수 → 재투자) 가능

*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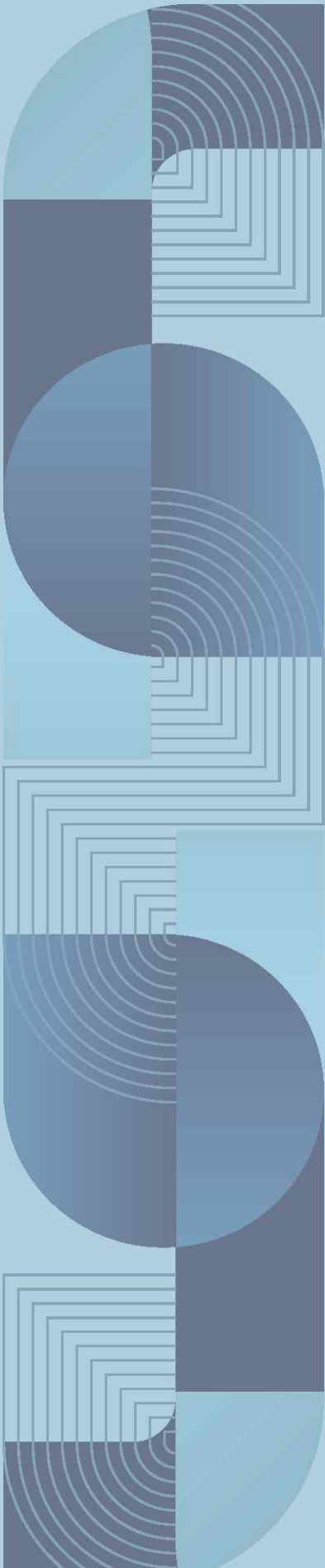
- 정부는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세제혜택 등을 부여 중
 - 엔젤투자는 '18년 6,304억원('21.2월 소득공제 집계기준)으로 18년 만에 제1벤처붐 시절'00년 5,493억원을 초과 달성
 - 제1벤처붐('00년 2조원)의 2배 이상인 벤처투자('21년 7.6조원)에 비해, 엔젤투자는 제1벤처붐 시절 수준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부족한 수준
- 엔젤투자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통해 거래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거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
 - 주식거래과세에 관한 국제적 흐름은 1990년대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은 추세임. 특히,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은 증권거래세 제도를 폐지
 - * 증권거래세 폐지년도 : (미) 1965년 (일본) 1999년 (스웨덴) 1991년, (독일) 1991년
 - 기관투자자(벤처투자회사, 신기사, 창업기획자 등)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 대상이나, 초기 창업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위험성 높은 엔젤투자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아님

■ 건의사항

-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기관투자자보다 위험성 높은 엔젤투자자(개인)의 투자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포함
 -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엔젤투자자(개인) 건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필요
 - *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2-2

공적 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는 35억달러 수준
 - 미국 3300억 달러, 중국 2000억 달러, 유럽연합 1200억 달러, 일본 90억 달러, 싱가포르 50억 달러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
- 국내에서 운용되는 총 68개의 법정기금은 금융·산업·보건·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 운용 방식이 보수적이고 대기업 위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
- '24년도 기준 법정기금 운용규모 1,023조원의 5%인 51조가 벤처 투자 시장에 유입이 되면,
 - 벤처·스타트업은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통해 성장이 가속화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축으로 성장 기대

■ 건의사항

- **(벤처투자 의무화 법제도 신설)** 모든 산업과 업종에 형성된 기술 기반 벤처·스타트업에 68개 법정기금의 5% 투자를 의무화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여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
- **(관련 규정 제·개정)** 개별 법정기금의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근거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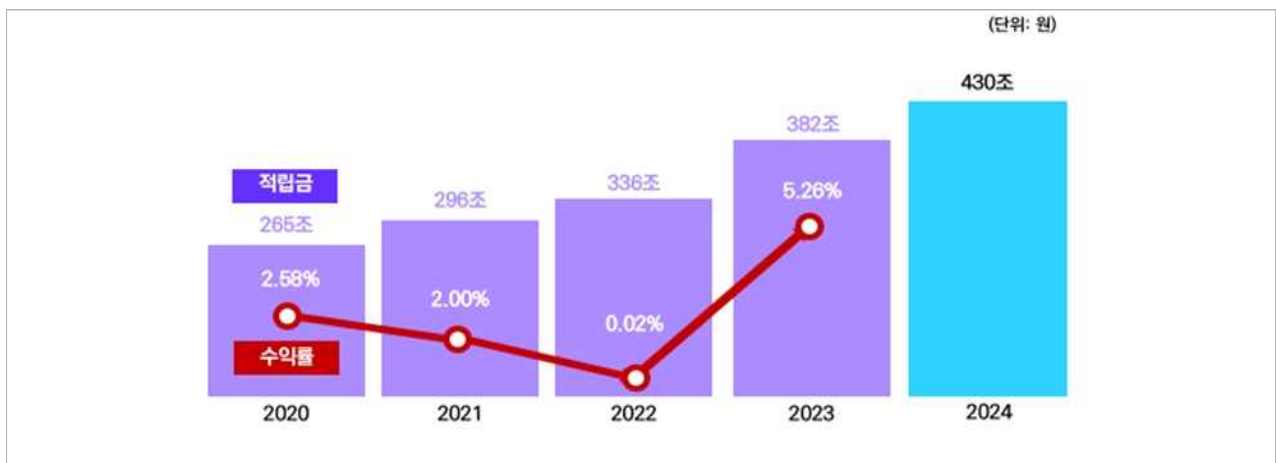
-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는 대체투자 등 투자대상 다변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벤처펀드에 적극 출자
 - 특히, 최근 10년간('14~'23년) 주요 연기금·공제회가 출자한 벤처펀드는 9.2~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였으며, 모태펀드 역시 최근 10년간 9.1% 수익률을 기록

구 분	출자액 (억원)	조합수 (개)	수익배수 (배)	수익률(IRR) (%)
국민연금	14,375	22	1.8	13.9
사학연금	8,928	13	1.59	10.1
공무원연금	1,358	2	1.39	9.2
과학기술공제회	5,517	13	1.54	11.9
고용보험기금	758	1	1.49	17.2
계	30,936	51	1.56	12.5

※ 출처 : 벤처캐피탈협회('24)

- 그러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24년 기준 430조 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반면, 최근 10년간 연환산 운용수익률이 2.07% 수준으로 매우 낮아 장기적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시급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 ('21) 295.6조원 → ('22) 335.9조원 → ('23) 382.4조원 → ('24) 430조원



* 출처 :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한다는 기조하에 퇴직연금 벤처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방향이 나오지 못한 상황

* '24년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선진 자본시장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과 벤처펀드 출자 확대가 필요

■ 건의사항

-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
 - 퇴직연금 운용방법에 벤처펀드 출자 유형을 신설* 및 퇴직연금의 비상장 주식 취득 허용**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벤처펀드 출자 근거를 마련
-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 **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 고시) 제9조제1항제2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 중소기업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자산운용기관과 함께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 안정적이며, 적립금 규모*도 점차 확대될 전망
- * 기금 운용규모(억원) : ('22) 324 → ('23) 4,734 → ('24) 5,411
-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기반을 사전에 마련 필요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연기금·공제회(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의 벤처펀드 출자 비율이 낮아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국내 22개 연기금 중 단 6개 기관만 벤처펀드에 출자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전체 연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비중이 5% 미만으로 이로 인해 벤처펀드 조성 규모가 제한
- 또한, 법인세법상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적용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연기금·공제회가 벤처펀드에 적극적으로 출자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투자 유인이 부족하여 벤처펀드 조성 규모 확대에 제약이 발생

기관명	구분	최근 5년간('19~'23) 벤처투자조합 출자액	전체 대비 비중
국민연금	연기금	15,367	4.0
경찰공제회	공제회	1,200	0.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	300	0.1
건설근로자 공제회	공제회	200	0.1
교정공제회	공제회	50	0.0
별정우체국연금	연기금	40	0.0
합계		17,157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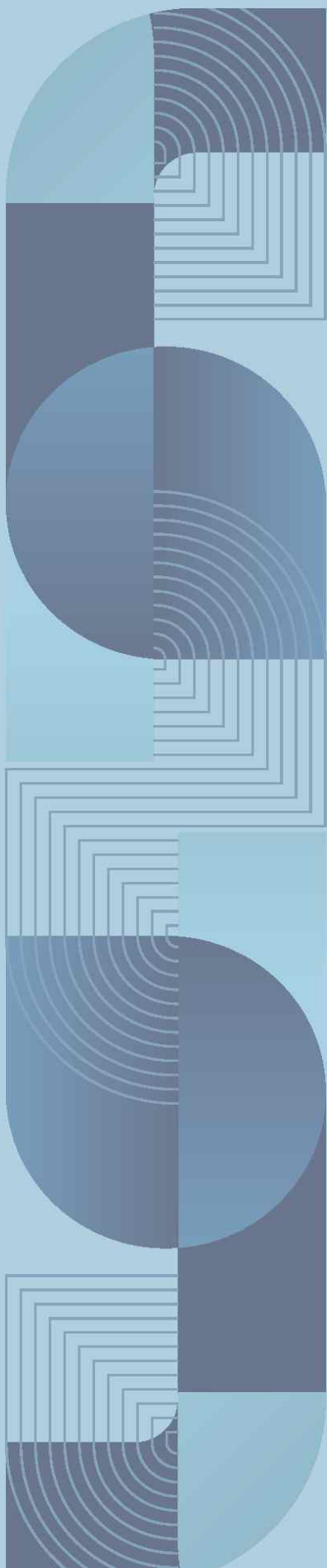
- 벤처기업의 성장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자금이 필요하나, 공적연금 및 연기금·공제회의 벤처펀드 출자가 미미하여 민간 자본 유입에 한계

■ 건의사항

- 공적연금 및 연기금·공제회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연기금·공제회(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의 벤처펀드 출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벤처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벤처펀드에 출자하지 않는 연기금·공제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적 자금의 적극적인 유입을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혁신 및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자본의 후속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 벤처펀드 출자 시 세제 지원 확대
 - 공적연금 및 연기금·공제회의 벤처펀드 출자 시 세액 공제 및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해 투자 유인을 강화
 - 기존 대상 외에도 군인연금, 산업은행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기금 등 추가 포함을 검토하여 더 많은 기관이 벤처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2-3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 벤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제도 개선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수적
 -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원활한 자금 회수 및 재투자가 어려운 상황
-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구조적으로 경직되어 있어 M&A의 활성화가 제한적이며, 투자금 회수는 IPO에 의존하여 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저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코스닥 지수	669	968	1,033	679	866
벤처투자 수익률(배)	1.73	2.24	3.34	1.76	2.01

*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특히, 파주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계 기준과 상장 유지 요건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과 투자자에게 부담을 가중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매각 제한 기간이 길고, 벤처캐피탈(VC) 및 임직원의 동반투자 금지 등 기존 규제들이 시장 유동성을 저해

* '23년 상장기업의 창업 후 IPO까지 소요기간 15.5년

** '23년 VC로부터 처음 투자받은 기업 1,111개사,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114개사(10.3%)

- 또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세제 혜택이 부족하며,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가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미흡

■ 건의사항

- 코스닥 시장 규제 개선 및 상장 요건 개편
 - 상장 유지 요건 및 회계 기준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업 부담 완화
 - 코스닥과 코넥스의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코넥스를 유망 벤처 기업 육성 시장으로 특화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화 대체 거래소(ATS)’ 설립을 지원하여 비상장주식 유동성 확대 및 투자·회수 시장 개선
-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
 -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 또는 100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대규모 투자 유입 촉진

구분(종목당)	현행	개선안
코스닥	2% 또는 50억원 이상	5% 또는 100억 원 미만
코스넥	4% 또는 50억원 이상	
비상장	4% 또는 10억원 이상	

-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하여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참여 유도

* ‘현행 1인당 3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

- 연기금의 코스닥 기업 투자 비율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을 통해 기관투자가 참여 증가 및 시장 유동성 확대

* 국민연금 코스닥 비중(%) : (‘18)2.3 → (‘19)2.5 → (‘20)2.7 → (‘21)3.8 → (‘22)3.3

■ 현황 및 문제점

- 벤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면 세컨더리펀드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 유동성 증대 필요
 - 그러나 회수 시장 불황과 비상장 장외 주식 거래 제한으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며, 글로벌 기준과 비교했을 때 국내 세컨더리펀드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국내 세컨더리펀드 비중은 전체 벤처펀드의 17.6%로 2021년(5.4%) 대비 증가했으나, 전 세계 평균(약 24%)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
- 2028년까지 약 34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어 세컨더리펀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 기존 세컨더리 펀드는 투자 범위와 방식이 제한적이고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규모 확대와 유형 다각화가 필요
 -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민간 자본의 매칭 투자를 확대하고, 신주 투자와 연계한 운영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개선하여 세컨더리펀드 시장의 활성화 촉진이 필요

■ 건의사항

- 세컨더리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출자자 LP와 운용사 GP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투자 유입을 촉진
 - 세컨더리 거래 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저율 분리과세 적용 등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 모태펀드와 민간 자본 매칭 투자 확대

- 세컨더리펀드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신주 투자와 연계한 운영 방안을 도입하여 기업의 유동성을 강화
- 기존 LP와 신규 LP 간 이해관계 조정 및 기존 LP 우선 출자권 부여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
- 세컨더리펀드 유동성 지원 강화
 - 만기 연장 반대 LP 지분 우선 거래와 같은 유동성 개선 방안을 통해 세컨더리 펀드의 시장 참여를 유도
 - 장외 주식 거래의 제한 해소와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민간 자본의 지속적인 벤처 투자 유입을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벤처투자 및 회수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벤처기업 M&A가 돌파구 중 하나로 거론되나, 우리 현실은 벤처기업의 4.2% 정도만 M&A를 경험*('2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M&A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으로 '기업 가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시스템 구축'(65.7%), 'M&A 매물정보의 질적/양적 확대'(34.4%), 'M&A 전문가/중개기관 육성'(26.8%), 'M&A 절차 간소화'(27.2%) 순(1+2순위 기준)

- 현행 벤처기업법상 M&A 특례규정으로 ①합병 절차 간소화(통지, 공고 규정), ②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예외 규정, ③이사회 승인으로 합병 절차 간소화 등 시행

- 그러나, 시장에서는 합병의 리스크 등으로 인해 합병보다는 기업간의 주식교환이 선호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한 상황(현재는 포괄적 주식인수의 경우만 과세이연)

- 또한, 국내 M&A 건수와 금액은 G5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비 부진한 상황으로, 이는 M&A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

* '12년 1월~'22년 1월 기준으로 G5국가의 평균 M&A 건수는 2,598건, 평균 M&A 금액은 1조 933억 달러인 반면, 우리나라는 1,063건 및 2,737억 달러로 G5 평균의 41% 수준에 불과

-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우, 자연발생적 기술거래 시장 및 M&A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생태계 조성 역사 및 환경의 차이로 인해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한 자연스러운 시장 형성이 요원한 상황(압축성장형 인위적인 시장조성의 필요성)

*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불리는 구글도 자체적 혁신보다는 M&A를 통하여 기업의 혁신동력을 외부에서 찾음(2010년 이후 총 154건의 M&A를 진행)

■ 건의사항

- **(주식 양도세율 완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을 10%로 완화하여, M&A 활성화를 통한 국내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촉진
 - 종전 10%이던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이 지난 '1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로 확대('16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M&A 및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벤처기업의 지분구조는 창업자 61.8%, 가족 9.4% 등으로 대부분 창업자가 대주주로 구성('24,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되어, 양도세 상향에 적용되는 주주군이 매우 광범위
- **(법인세 공제율 확대)** 기술혁신형 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매수기업 법인세 공제율 확대 : 기술평가액의 5% → 50%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M&A 시, 기술평가액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
 - 그러나, 현행 법인세 공제율이 높지 않아, 기술혁신형 기업의 M&A를 유도하는 데 한계
- **(인식 개선 유도)** 국내 M&A 실적 부진의 원인은 각종 규제에 기인하는 측면보다, M&A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유도 필요
 - * 사회 일반의 부정인식(기업사냥, 문어발 경영, 먹튀 등), 매도·매수기업 간 상호불신(기술·인력 탈취, 인수가격 후려치기 등), 정부·국회의 부정적 인식(시장 독점, 대기업의 중소기업 흡수 등) 의 개선 필요
 - M&A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책 홍보, ▲벤처·스타트업 M&A 실무 교육 활성화, ▲인수가격 적정평가 기준 수립, ▲인수·피인수 기업 간 조직문화 통합을 위한 컨설팅·교육 강화와 ▲직원 인센티브 제공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글로벌 상생 M&A 플랫폼 구축)** 글로벌 M&A 전문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글로벌 상생 M&A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외기업과 국내 벤처기업간의 M&A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해외기업과의 협업 촉진



* 출처 : 벤처기업협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4.

■ 현황 및 문제점

- '99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처음 도입해 '02년까지 당시 코스닥협회 등록 중소기업(코스닥 상장사)에 한해 적용, '03년부터는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06년 폐지
 - 과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시행하였던 제도로써, 당시 본 제도로 인해 코스닥 활성화 및 지수상승
 - * (1998년) 상장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과표 소득금액의 50%를 '사업손실준비금' 명목으로 비용처리 허용 (2004년) 과표 소득금액의 30%로 낮춰 다시 재도입
- 우량기업의 코스닥 이탈 방지와 성장형 벤처기업의 코스닥 유인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 필요
 - 코스닥은 회수시장으로서의 핵심적 역할과 더불어, 상장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역할도 중요
 - 코스닥이 EXIT를 위한 출구를 넘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해외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발판으로 역할 필요

■ 건의사항

-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 우량기업의 코스닥 이탈 방지와 성장형 벤처기업의 코스닥 유인을 위해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 코스닥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일부(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를 적립금으로 쌓고, 당해 연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 (적용 예) 손실준비 비율이 30%인 경우, 순익 100억원 기업은 30억원을 제외한 70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 결손이 발생한 해에는 손실액을 손실준비금으로 상계하고 5년이 되는 해에 남은 준비금을 손익에 넣어 과세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전략적 협력 또는 혁신거래가 부진하므로 중간 회수시장 및 엔젤투자 또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는 상황
- 벤처기업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다윈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선도-벤처기업 간 협력, 글로벌화 등 시장개척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금, 마케팅, 기술인력 등이 열악하여 시장역량이 있는 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

■ 건의사항

-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해 주식 거래시장과 유사한 기능의 기술거래, M&A 등 Open Innovation을 담당할 ‘혁신거래소’ 설립 필요
 - * 혁신거래소란 상장기업은 R&D단계에서 신기술을 벤처기업으로부터 수혈 받고 벤처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시장을 확보토록 중개하는 기관
 - ** 미국의 경우 M&A가 중간회수시장의 대세인 이유는 M&A가 일반적으로 기업 간 주식교환형태 진행 → 투자 후 3~4년 이내에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는 효과
- 대기업은 벤처기업으로부터 기술을 공급받고,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 공급을 받는 개방형 혁신거래의 활성화로 벤처활력 제고
 - * 대기업에게는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을, 벤처기업에게는 대기업이 가진 시장 창출역량 수혈을 통해, 상생협력모델 수립

〈 혁신거래소 운영방안 〉

- 기능 : 기술거래 및 기업 M&A중개, 대·중소기업간 혁신거래 촉진 등
- 특징 : 민간주도의 원칙으로 기존의 M&A 관련 조직을 흡수통합
- 수익 : 정보수수료, 기술가치 평가비, 중개수수료 등
- 방식 : 거래수탁→거래 정보 분석→Pre-M&A→협상 및 계약→Post-M&A

* 정부는 기술거래 및 M&A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거래 활성화 촉진

- 전국에 설치돼 있는 19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플랫폼 기반으로 활용

■ 기대효과

〈 혁신거래소 기대효과 〉

벤처기업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활용, 자금조달, 기술개발에 전력
대기업	효율적 기술개발, 경쟁기술에 능동대처, 시장확장에 주력
벤처생태계	중간회수의 발달로 엔젤 활성화, 투자의 선순환 구조, 창업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전가능성 확대 → 허리강화
국가경제	고용창출, 사회적 비용 최소화, 국가세수 증대(혁신거래세 신설)
투자자	투자금 조기회수, 재투자 여력 → 투자 매력도 제고
창업자	실패위험 축소, 회수전략 확보 → 고부가가치 창업

■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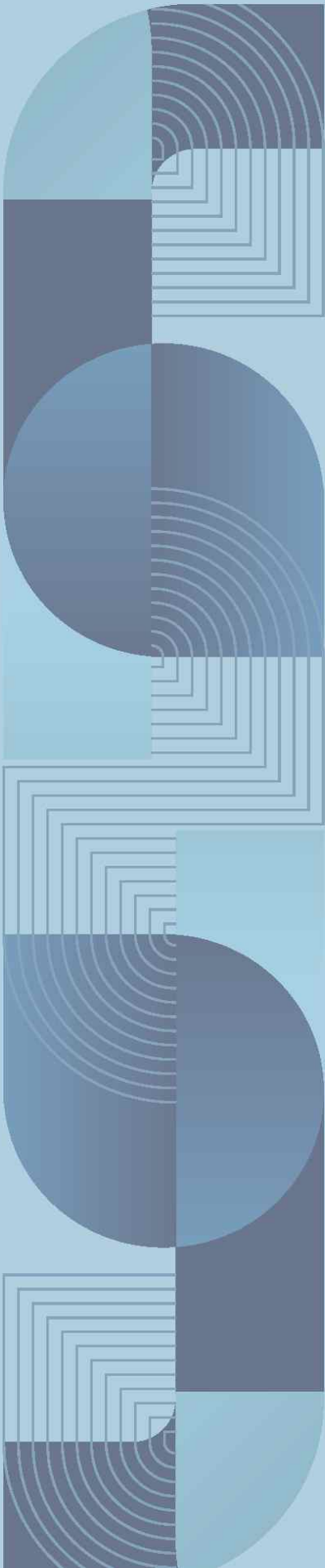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15년부터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운영 중이나, 그 요건의 지속적인 완화가 필요
 - 매각대상기업의 최대 주주가 그 기업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양도(매각) 하고, 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2년 이내에 ② 양도 대금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에, 당초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에 대해 재투자한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 * (현행)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30% 이상(조특법 시행령 제43조의8제2항)
 - 양도 후 재투자 기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투자 대상 발굴 및 투자액, 투자조건 등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한의 추가연장이 필요
 - 최근 혹독한 경제상황 및 국내 규제해소 미진에 따른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위축 현실을 감안하면,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현행 규정으로는 재투자 활성화 효과 저조

■ 건의사항

- 혁신벤처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완화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매각 후 1년 이내'로 개선 필요
 - 아울러, 현행 '양도 대금의 80% 이상' 을 '양도 대금의 50%'로 개선
- 현재 과세특례 요건이 '양도대금 중 50% 이상'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개정되어 있으나, 본 정책적 목표 달성이 미흡 하였다면 과감한 '추가 완화' 정책이 필요

2-4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벤처금융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정책 금융이 벤처전용 보증 및 융자 시스템을 신설하고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접근성 개선 시급
-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벤처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적이므로 정책 금융의 보완 필요

■ 건의사항

- 기술 기반 보증 및 단계별 지원
 - 벤처기업의 기술 가치를 평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보증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보증 한도와 조건을 차등 적용하여 초기·성장·확장 단계별 맞춤 지원
-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벤처자금 지원
 - 정책적 목적으로 직접 벤처대출 공급 및 민간 금융기관, VC와 연계가 가능한 투자연계보증 공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공 금융기관을 출범시키고,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벤처전용 금융 확대를 유도
- 맞춤형 금융 지원
 - 벤처기업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 및 융자 지원 체계 구축하여, 성장 단계에 따라 자금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융자 규모 확대
- 벤처 금융 공급을 위한 모니터링 기반 마련
 - 기업이 필요한 벤처 정책금융의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한 수준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출잔액 또는 벤처투자 금액과 같이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보증·융자·대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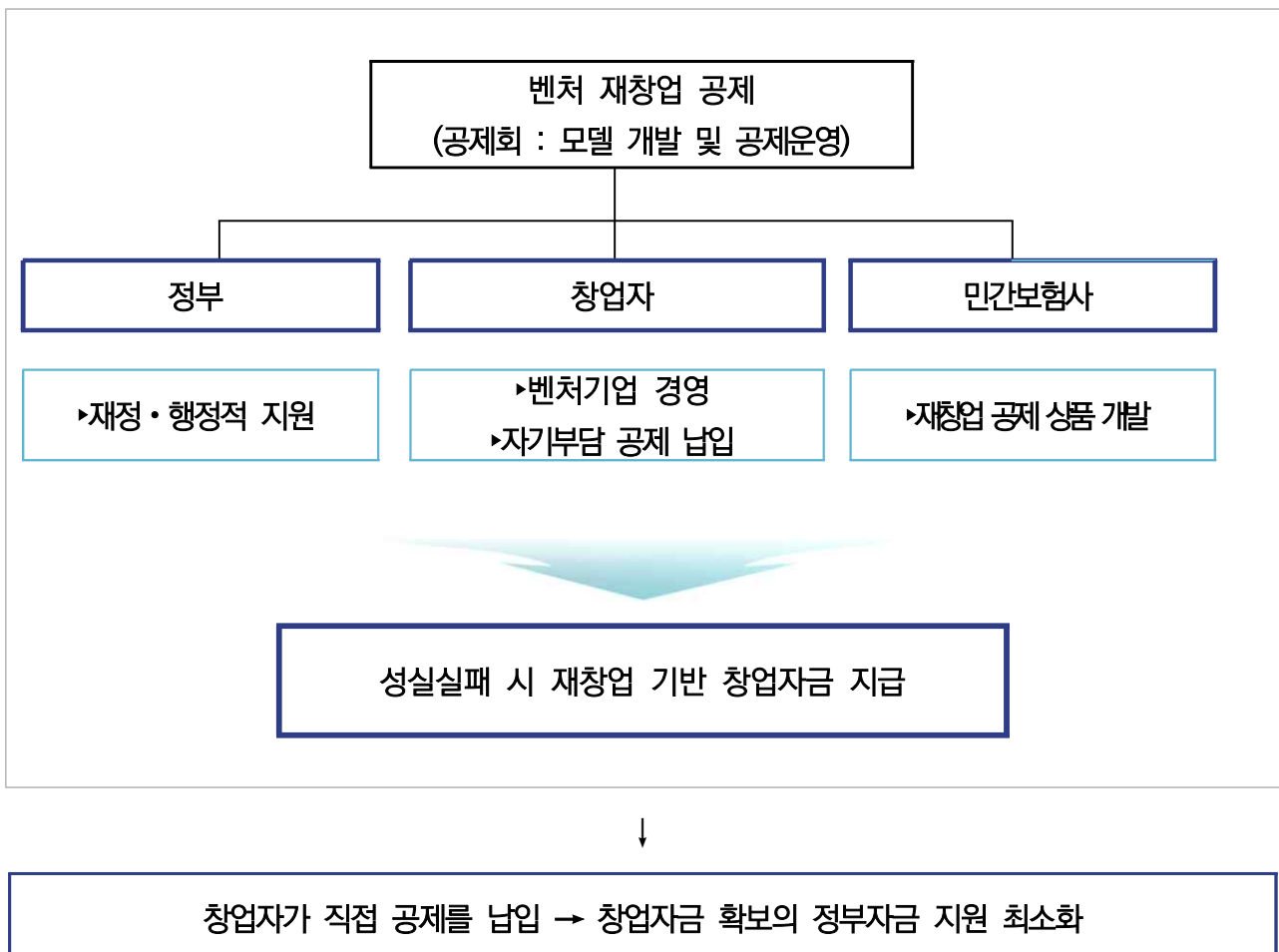
- 업계에서는 최초 창업 시에도 가장 큰 걸림돌로 ‘창업자금 확보’를 꼽고 있으며, 재창업의 경우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

* 국내 창업 장애 요인으로 1)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50.3%), 2) 창업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46.0%) 순으로 조사

- 재정 여력의 한계와 재창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부담 및 정부 지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로 해결책 모색

- 창업자의 자기부담 공제 납입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결합한 지원정책

〈벤처 재창업 공제 모델 역할〉



■ 건의사항

- **(도입목적)** ‘성실실패’한 벤처 및 혁신 스타트업의 재기 지원
 - **(공제형태)** 민간 출자금과 창업자의 월 납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성, 실패 후 재창업 시 자본금을 지원하는 창업자 간 상호부조방식
 - **(기본구조)** 창업자가 월 일정금액(최대 100만원)을 약정기간(5년) 동안 납입, 약정기간 중 폐업 후 재창업 시 공제금 최대 1억원* 지급
 - 공제금은 신규 창업 준비 자금(자본금 등) 외 사용 불가, 만기 시 납입 원금 100% 지급(중도 해지 시 납입액의 50% 지급)
- * 재창업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등 법률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
- **(제도화 형태)** ‘당사자 단체 운영 공제*’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주도성·자율성이 보장된 공제사업을 추진
- *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제 형태로, 단체설립을 통해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형태(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등)

■ 현황 및 문제점

-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책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업계 현실과 해외 진출시 서비스 형태에 따른 성장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
-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기업 평가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 및 방식을 개선하여 벤처·스타트업 생애주기 및 사업형태에 맞는 적절한 지원책 필요
- 최근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투자를 많이 받고 있으나, RCPS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고,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
- 과기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경우 IFRS 기준을 적용해 RCPS 형태로 많은 투자를 받은 벤처·스타트업은 자본잠식 사태로 평가되는 상황
 - 이로 인해 신용대출 등 관련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책금융 기업평가지 IFRS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은 미비
- 예비유니콘 특례보증을 비롯한 각종 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 요건에 따르면 성장성을 연평균 매출성장률 또는 전년도 매출액 증가분을 각 년도 재무제표상 기록으로 증명
 - 대부분 지원 공고에서는 명확히 고지되어 있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연결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국법인 개별재무제표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국내에 비해 해외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성장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
 -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제조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해외법인을 설립해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 산업 간 경계와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국내 법인의 매출만으로 벤처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와 불일치

■ 건의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으로 평가)** 일반화된 RCPS 형태의 투자금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 투자생태계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 형태의 투자도 자본으로 인식하는 현실적인 회계 기준 적용 필요
- **(연결재무제표로 평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되는 벤처기업 심사 과정에서 해외법인의 매출까지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성장성이 충분한 벤처·스타트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고성장 벤처·스타트업 생존율 제고)** 고성장 스타트업이나 적자상태에서 투자금으로 사업하는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여 엑시트까지의 자생력 확보
- **(해외 진출 확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가능해져 활발한 해외 진출 기대

우수 인재 확보 및 근로제도 선진화



■ 현황 및 문제점

-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인 '주52시간제도'*의 도입으로 벤처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어 핵심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자율적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

*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여된 계도기간이 '24년 말 종료

- 특히, 벤처기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제조기반의 일반적 근로자와 달리 해당 기업 고유의 신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적합한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
- 또한,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의 성공 방정식이 불가능해져서 기업의 활기를 저해하고 혁신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초래
- 따라서,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 필요

■ 건의사항

-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근로기준법 §53조)
 - 현행 '주' 단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 확대
- 벤처기업 핵심 인력 대상 근로시간 예외(근로기준법 §50조)
 - R&D 인력 등 벤처기업의 핵심 근로자(전체 인력의 20% 이내)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에 의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별도 보상체계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 마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근로계약이 보장되는 미래지향적 근로환경 조성이 필수

■ 현황 및 문제점

- 벤처기업의 핵심은 기술력으로, 우수인재 확보가 중요하지만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우수인재 유치는 물론 기존 전문인력 유출 방지도 어려운 상황
 - 중소기업 75.4%는 SW전문인력 채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며, 외국인 SW인력 채용의사 피력 기업은 54.5% (기업체 187개사 대상, '23.7)
 - * 기업 선호 국가 ①인도(36.4%), ②베트남(31%), ③중국(11.8%) 순
- SW 분야 해외 우수 인재와 국내 벤처기업을 매칭하여 벤처기업의 인력난 해결과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
 - 우리나라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프랑스 스테이션에프와 같이 타국 우수 인재들의 유입 확대 필요

■ 건의사항

- **(해외 SW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추천권 다변화)** 우수인재 부족에 따른 벤처기업 핵심역량 고갈현상 방지를 위해 개도국(인도, 베트남 등) SW 전문인력 비자 정원 확대

* 현재 추천권은 KOTRA만 보유 중이나, 관련 성과가 미미

구분	점수	기준
우수대학 졸업자	10	• 타임즈 선정 200대 대학, QS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국내대학도 인정)
KOTRA 고용추천	10	• KOTRA에서 고용 추천을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 채용	10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근무 예정인 사람 ※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로 확인 가능한 기업
연구실적 가점	10	• 최근 5년 이내에 SCI, SCIE, SSCI, A&HCI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

- **(유학생 활용)** 해외 유학 중인 고급인력* 및 주한 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의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진출 희망 국내기업과 재외한 국민과의 매칭을 통해 현지 정보 접근성 제고

* 국외 고등교육기관(대학+대학원) 한국인 유학생은 105,657명('21.4.1기준 교육부)

** 재외한국교육원 기본 현황('20.4.1.기준, 교육부) : 18개국 41개원의 한글학교 학생 수는 73,888명, 동포 수(일시체류자+영주권자)는 1,648,691명

- **(한인 유학생)** 현지 정착 유학생을 활용 해외에 거점을 보유한 현지 한인 기업 및 국내기업 현지지사 등의 연계를 통한 인턴십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 **(외국인 유학생)** 국내기업과 매칭을 통해 재한 외국인 유학생이 보유한 글로벌 역량과 현지 문화 및 법·제도, 관습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 기회 마련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52,281명이며, 이 중 우리정부초청 장학생은 3,262명(2.1%)('21.4.1기준, 교육부). 우리정부초청 장학생에 한해, 조건부 지원하는 방안(예: 장학금 지원 기간과 상응하는 국내기업 인턴 조건)

- **(외국인 특화 우대지원)**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우대지원 제도 추진

- **(외국인 특화 창업지원)** 사업화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내 법인설립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기회 확보

- **(외국인 근로자 체류 허가 관련 관계부처 원스톱서비스 확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변동 사항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연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창업 생태계는 서울 중심으로 평가·홍보되고 있으며, 타 지역의 가시성과 글로벌 인지도는 매우 낮음
 - * 주요 도시 창업생태계 순위('24., 스타트업블링크) : 서울 21위, 부산 366위
 - 우수 외국인 창업가 유입 또한 서울에 편중
 - * 지역별 외국인 창업자 현황('24.12월 기준 기술창업비자) : 서울 107명 > 경기 31명 > 인천 14명 > 부산 7명 > 대구 4명 > 경남 3명 > 대전 2명 등
- 비수도권 지역도 대학·연구기관 등 창업인프라는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인 창업가 전용 지원 기관, 프로그램 등은 부재
 - * 전북도가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법무부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를 유치하여 '25.3월 개소하는 등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려는 노력 증가

■ 건의사항

- **(지역 인프라)** 비수도권 지역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를 신설하는 등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할 수 있는 인프라 보강
 - '24. 7월말 개소 이후 뛰어난 운영 성과를 보이며 외국인 창업 거점으로 자리잡은 GSC 서울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산

〈 GSC 이용자 현황('25.4.8 기준) 〉

구분	업무공간	프로그램	각종 행사	상담	합계
운영 횟수	상시	102	70	상시	-
이용자 수(명)	2,191	1,224	1,632	202	5,249

* 행정지원 : 법인설립 25건, 비자 취득 34건, 특허 출원 21건, 가상주소 지원 13개사

- **(지역 홍보)**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창업 관련 기관* 등과 협업하여 국내 주요 도시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해외 인재 유입 가속화
 - * (예) 스사트업지놈(Startup Genome), 스타트업블링크(StartupBlink) 등
 - 지역생태계의 경쟁력과 특화 역량을 국제적인 기준을 갖춘 채널을 통해 노출하여 외국인 창업자 및 투자자 등의 관심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AI·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 대학의 학과 정원 규제가 인재 양성의 걸림돌로 작용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원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신산업 분야의 학과 정원의 확대에 제약**
- * 수도권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눠 관리
- ** 美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는 지난 5년간 정원이 대폭 증가(141명 → 745명) 했으나, 서울대는 같은 기간 소폭 증가(55명 → 80명)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규제가 산업 변화 및 기술 혁신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 발생
 -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 산학 협력 강화, 장학금·연구 지원 확대를 통해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지역 대학의 연구·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 도모 필요

■ 건의사항

- AI·반도체·SW·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정원 총량 규제 예외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4조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가를 제한하면서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AI·반도체·SW·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학과에 대한 예외 규정이 부재
 - 이에 따라 신산업 관련 학과의 정원 규제 완화를 명문화하여, AI·반도체·SW·자율주행 등 첨단 학과의 신설 및 증원이 예외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현황 및 필요성

-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창업생태계는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20년 이후 국내 창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창업 활성화 및 대한민국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활발한 기업가정신의 작동이 절실
 - * '24년 국내 창업은 '20년 대비 20.3% 감소('20~'24년 창업기업동향)
- 기업가정신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환경 개선과 함께 벤처기업가의 도전과 혁신 의지와 결심도 중요
 - * 창업 장애요인 중 자금문제를 제외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창업실패 등에 대한 두려움'('22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 삶과 일상에서 '손에 잡히는 기업가정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일상은 물론이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체계적 교육 실시가 필요

■ 건의사항

- **(벤처기업가정신 실천 선언 "벤처기업가의 약속")** 사회가 요구하는 벤처기업가정신을 기준으로 선정된 '롤모델 벤처기업가'들을 중심으로 벤처기업가정신의 구체적 실천 약속
 - 상생, 나눔, 혁신 등의 도전 분야별 약속을 담은 선언문 채택하고, 공식선언 이후 벤처기업의 실천 약속 릴레이 전개
- **(벤처기업가정신의 실천 기록(온라인))** 벤처기업가들의 다짐과 실천약속을 공유, 실천기록을 지속 전달하며 기업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참여 확대

- **(벤처기업가정신 실천 스토리 전파 및 확산)** 벤처기업가들의 창업과 성장, 성공과정에서 생성된 혁신과 도전의 리더십 스토리 발굴, 온라인 콘텐츠 및 특강, 멘토링 등으로 전파하고, 성공창업자들과 학생 및 예비창업자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
- **(초등과정 기업가정신교육 도입 및 교사양성)** 기업가정신 교육을 초등과정 까지 확대하여(현행 고등과정에 국한) 필수 의무교육으로 조속 도입하고, 초·중·고교 및 일반인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체계적인 교육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강화 필요
- **(기업가정신 교육의 다각화)** 예비(창업자), 경력단절 및 재취업자, 소외 계층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생애 전주기 평생교육화를 통해 사회전반의 혁신을 생활화

〈 유럽 사례 〉

유럽집행위원회에서도 오슬로아젠다를 통해 ‘단순한 기업운동을 위한 필요성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창의성, 자율성, 진취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기업가정신의 평생교육과 초등부터의 교육 의무화 권고’. 즉, 유럽국가 중 2/3와 미국의 30개주에서 이미 초등과정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화

- **(벤처확인기업 기업가정신 교육 지원)** 성장성, 시장성 및 기술성을 보유한 벤처확인기업 대표 및 임직원 대상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벤처확인 혜택 100% 활용 교육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벤처확인제도의 실효성 향상

① 스톡옵션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벤처기업의 14.7%가 스톡옵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이탈 방지’(64.6%),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55.6%), ‘우수 인력 유입’(54.5%)을 목적으로 활용

* ‘출처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4.

- 스톡옵션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세제 혜택 미비, 복잡한 법적 절차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그 중 세액 공제와 과세 문제가 스톡옵션 활용을 제한하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
- 우수 인재 유입 및 벤처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 요건 완화 및 제한 기간 축소를 통한 주식보상제도 활용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사안을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사회 결의로 위임할 수 있도록 개편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근로소득에 기초한 준조세 관련 소득기 준액에서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제외하는 방안 검토
- 행사가격이 시가 미만인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확대하고, 행사 제한기간 (cliff) 완화 (현행 2년 → 개선 1년)

* (현행) 부여일 기준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 × 행사 대상 주식 수의 총합이 5억원 이내

②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 인재 유입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조건부 주식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및 인센티브 효과 극대화 필요
- 현행 제도는 성과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과세가 이루어져 인재 유치 및 동기부여 효과 저하
- 성과 미달성 시에도 과세가 발생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보상 체계를 방해하고, 성과 기반 보상 제도의 실효성 약화

■ 건의사항

-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 주식에 대한 과세 특례 혜택 부여 필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행사이익 납부특례, 행사이익 과세특례 등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 및 성과 기반 보상 체계 강화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스타트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은 벤처펀드 결성(자금 모집)과 벤처투자(개별기업 선별 및 자금 투입)의 결합이며,
 - 모험자본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양적 확대를 위한 출자자 유인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선별·관리·지원하는 역량 있는 운용자(VC)가 필요

- 또한, '86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98~'00 제1차 벤처붐을 거치며 벤처펀드 결성규모*도 점차 커졌으며 이에 따라 VC산업**도 동시에 성장

* 벤처투자조합 결성(억원) : ('87) 50 → ('98) 825 → ('00) 14,779 → ('13) 14,826 → ('24) 57,571

** 벤처투자회사(개사) : ('87) 16 → ('97) 50 → ('02) 128 → ('13) 101 → ('24) 249

- 한편, 우리보다 벤처투자의 역사가 긴 미국의 경우 1940년대에 최초의 VC인 ARDC*가 등장한 이후,

* Ame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Georges Doriot가 설립한 VC로 DEC(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등에 투자

- 벤처투자 기반의 대형 테크기업 탄생, VC에 우호적인 제도와 세제*를 바탕으로 다수의 성공벤처인이 VC로 전환**

* VC의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에 대해 사업·근로소득 대신 장기자본이득으로 과세(60년대) LLC(유한책임회사) 대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에 직접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 제도 도입('97~)

** 페어차일드 반도체 출신(Don Valentine)이 설립한 세콰이어 캐피탈(1972),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창업자 출신(Vinod Khosla)이 설립한 코슬라 벤처스(2004), 넷스케이프 창업자 출신(Marc Andreessen, Ben Horowitz)이 설립한 a16z(2009) 등

- 이처럼 한국도 성공벤처인*을 비롯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VC 생태계로 유인될 수 있도록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에 준하는 형태의 제도와 세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

*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제2차 벤처붐('18~'22)에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중 성장하여 IPO 또는 M&A 회수에 성공한 창업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

■ 건의사항

- 동업기업 과세특례 대상에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된 벤처투자회사를 포함시켜 이중과세를 조정
- VC와 핵심운용역간 성과분배 명확화, 책임 보호 등을 위해 VC와 벤처펀드를 연결하는 특수목적회사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 도입
-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VC 와 핵심운용역 등이 수령하는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저율과세

4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 현황 및 문제점

- 벤처기업을 대상 규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 벤처기업의 73.0%가 우리나라의 산업규제 강도가 외국 대비 '강하다(매우 강하다 42.5%+강하다 30.5%)'고 응답
 - 강도 높은 규제에 의한 사업 위축, 투자 축소 및 신기술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 우리나라 법령상 규제방식은 법·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사항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혁신적인 신기술을 담아내지 못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
 - 또한, 혁신벤처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로 해외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도 촘촘한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좌절
-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혁신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들을 글로벌 규제 선진국 수준으로의 완화가 필요

■ 건의사항

- 규제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에는 없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 위해 먼저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
 -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는 '대통령직속 규제혁신기구' 설치
- '산업규제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하여 지방 주도로 신산업의 도전과 혁신을 이끌고 산업 및 지역 발전에 기여

■ 현황 및 문제점

-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이 태동해도 관련 분야의 전문직역 기득권 세력의 전방위적 견제*로 인해 초기 벤처·스타트업들의 사업영위가 위협받고 헌법상 기업의 자유가 침해

* (법률서비스)변호사협회↔로톡, (세무서비스)세무사회↔삼점삼, (비대면진료, 약배송) 의사협회/약사협회↔닥터나우, (미용의료서비스)의사협회↔강남언니 등

- 전문직역 기득권의 강도 높은 견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한 벤처창업을 가로막고, 국내 핵심인재와 혁신기술의 해외유출을 초래해 한국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이처럼 전문직역 이기주의의 부작용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가 근시안적이고 일관되지 못하여 신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초래

■ 건의사항

- 신산업분야 진입규제 혁신을 위해 「사전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
- 신산업분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신산업 벤처·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규제 혁신 국가들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
- 그동안 만연되어 온 전문직역 단체의 시장 독점 및 불공정 행위 등을 제재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 역할을 강화

* 공정위의 활동방향성 역시 신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

■ 현황 및 문제점

- 전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로 2025.1. 현재 리걸테크 기업 수는 9,260여 곳, 유니콘 기업은 16곳
 - 반면,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각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경쟁력에 비해 산업 성장이 매우 부진
-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핵심 요인은 변호사단체의 소송남발 및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 때문
 - 특히, 광고규정 제·개정 권한을 남용하여 혁신적 법률서비스 산업의 태동과 발전을 억제(대형포털사이트 광고는 허용, 특정 법률플랫폼 광고는 금지)

■ 건의사항

- **(광고금지 규정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행 변호사법상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광고금지 세부사항에 대한 지정 권한을 타 전문직역사와 동일하게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제 권한의 남용 소지를 차단 필요

〈타 전문자격사의 광고규정 위임형식 비교〉

전문자격사	관련 법규	위임형식
변호사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대한변호사협회
의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5호 등	대통령령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대통령령

- 국민의 법률정보 접근성 제고 및 청년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IT 기술혁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질 향상, 리걸테크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산업 영역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준비
 -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사전지정제도’ 및 이커머스 규제를 위한 ‘정산기한 및 판매대금 예치·신탁 의무화’ 등의 도입을 검토
- 문제는 이와 같은 플랫폼 규제는 업계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성급한 규제로 도입 강행 시 토종 플랫폼 산업 위축,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등 한국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시장점유율 급감 등 부작용 예상
-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제들은 기존의 제재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채 도입을 고려하는 중복적 규제에 해당

■ 건의사항

-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 규제 신설 내지 강화로 인해 국내 플랫폼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전 세계 주요국과 국내 상황을 비교하면서 신중한 개선 조치 필요
 -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내 토종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규제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
 - * 최근 공정위는, ‘사전지정방식’이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해 ‘사후추정방식’으로 법개정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발표
 -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 방식을 지양하고, 되도록 자율 규제와 감독기관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이커머스 규제 혁신)** 정부가 추진하는 ‘정산기한 단축’을 업계 현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판매대금 예치·신탁의 의무화’는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 중소 이커머스 기업 도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철회 필요

- * 실태조사 등을 통한 현황분석이 미비되어 업계 및 관련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과 피해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결여
- ** 업계는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규제 도입이 이커머스 기업들의 자금부담 가중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해, 「R&D 축소 → 시장경쟁력 약화 → 해외 이커머스 기업들의 국내시장 장악」 등의 수순을 밟게 되고, 그동안 선전하고 있던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

■ 현황 및 문제점

-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 각국은 플랫폼 산업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 미국·중국은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강한 규제를 지속하던 EU도 규제 완화 움직임
- 한편 우리나라는 자국 플랫폼이 시장에서 그나마 선전하고 있으나, 규제 중심의 정책에 따른 규제 준수 비용 부담과 더불어 고금리·고물가, 소비 침체, 투자 감소 속에서 C-커머스의 공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또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
 - 기존 규제 중심 정책은 플랫폼을 단순한 ‘시장 중개자’로만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은 데이터 기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AI 등과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의 플랫폼 진흥 정책 미비
 - 해외 각국에서는 자국 플랫폼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타산업에서는 진흥법*을 통해 정책적 지원 이뤄지고 있으나, AI와 밀접하게 연관된 플랫폼에 대한 진흥 정책은 부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 건의사항

- 규제에서 혁신과 성장으로 플랫폼 정책 패러다임 전환
 - 규제 일변도가 아닌 플랫폼 산업 '진흥'으로의 정책 전환, 플랫폼의 혁신 성장 동력을 이어가며 사회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방식 채택
- '플랫폼 미래 진흥 전략' 추진
 -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 이용자 효용을 제고하는 분야 등을 분석하고 실정에 맞는 단계별 플랫폼 진흥 전략 추진
 - 자국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경제 주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국가 플랫폼 전략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AI 기본법 제정으로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에 사전 고지 및 표시 의무 부과 예정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26.1월 시행)
- 도입 취지*와 달리 콘텐츠산업 전체에 의무가 부과되어 과도한 부담 발생
 - * 생성형 AI 산출물(사진·영상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조작정보 방지
- "또한, 인위적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의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는 표시로 인한 실익 부재
 - * 오히려 AI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심리적 저항감을 유발하여 콘텐츠산업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제한될 우려
 - ** (사례) AI 활용 웹툰에 대한 별점 테러, 보이콧에 따라 웹툰 공모전에 AI 활용 작품 금지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 제공에만 예외가 적용되는 모순도 존재
 - * AI가 결과물 생성의 보조 도구로 사용되거나, 애니메이션 제작에 사용될 땐 예외 없음
- 美 싱크탱크, AI 표시 의무 관련 “AI 기술 혁신과 배포를 늦출 수 있다” 배포 지연 우려
 -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한국의 기술 규제 개편’ 보고서

■ 건의사항

-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 사전 고지 및 표시 의무 면제
 - 문화적 창작물, 他규정에 따라 심의·등급분류 등을 받은 콘텐츠, 보조적 도구로 활용된 경우 등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나, 수시로 변경되는 정책 방향과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산업 생태계가 정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
- 특히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약배송은 금지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국민 의료접근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경증 환자 분산,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기대효과 창출이 제한
- 유관 법률이 부재한 가운데 정부 정책이 기존 직영의 기득권 보호 논리에 함몰된다면 비대면진료 산업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편익마저 제한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
 - 국내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은 한때 50여 개에 달했으나, 법제화 지연 및 약배송 금지로 다수 기업이 사업을 중단, 현재 10개 내외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그마저도 사업모델 부재로 인해 존속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지 않았으며, 의약품 재택수령을 금지하는 유지하는 국가임
 - * 비대면진료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204조원으로 평가되었으며, 2032년까지 1,13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 국내 비대면진료 이용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생활 속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으나, 제반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서비스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임
 - *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후 2024년 7월까지 총 1,032만 713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짐 (출처: 보건복지부(자료제공: 최보운 의원실))
 - ** 약배송이 금지되고 영업 중인 약국을 직접 찾아 대면으로 처방약을 받아야함에 따라, 비대면진료 후 약을 제때 수령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이 30%에 달함 (출처: 원격의료 산업협의회)

■ 건의사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효성 제고 및 법제화 논의, 지역 단체와 신산업 사업자 간 정부 중재 필요
 - 비대면진료 처방약의 재택수령 허용 범위를 비대면진료 이용자 전체로 확대하여,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후 약수령은 대면으로 해야하는 소위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제도의 정상화 필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법제화에 관한 논의를 개시,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서비스 플랫폼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보장 필요
 - 기득권 지역 단체의 과도한 민원 제기와 영향력 행사로 인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정책 논의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정책 변화가 지연됨에 따라 산업과 서비스 발전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 발생
 -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지역단체와 신산업 사업자 간 협력방안 및 상생 모델 개발 과정에서의 정부 지원 필요
- * 비대면진료 플랫폼기업과 유관 지역단체 간 협의체를 마련하여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모두가 ‘원원’할 수 있는 혁신 구상 마련

■ 기대효과

- 의료접근성 개선 및 국민 후생 증진
 -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및 약배송을 통한 현행 비대면진료 제도 실효성 제고
- 기술 혁신을 통한 의료 서비스 효율성 향상
 - 불균형한 보건의료자원 공급 구조 및 의료체계 효율화 기여, 의료진의 업무 부담 경감, 의료서비스 전달 효율성 증대 및 의료비 절감
- 비대면진료 산업경쟁력 향상 및 경제 성장

- ‘IT테스트베드’로 각광받는 한국 내 서비스 제공 경험을 하루빨리 축적, 고도화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신산업의 영속성 제고 및 국가 경제 성장, 대규모 고용 창출 유발
 - *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 시 실질GDP 2.4조원, 총실질소비 5.9조원 증가 효과 예상 (출처 : 파이터치연구원)
 - **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시 5년간 120~150만명 수준의 고용파급효과 발생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 현황 및 문제점

-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新산업 영역을 개척하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기존의 규제만도 버거운 상황에서 최근 신규 규제논의는 사업을 위축시키고 불확실성 증대
 - 최근 ▲각종 플랫폼 규제법 제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신산업 진입규제 도입(OTT-콘텐츠, 헬스케어, 리걸테크, 프롭테크 외) 등 각종 규제 입법 동향이 사업 분야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전개
- 신규 규제논의가 객관적인 조직 규모나 서비스 범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적용 경향이 있어, 대응력이 없는 벤처기업의 성장성을 위축시키고, 독점을 심화시켜 사회적 후생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
- 특히,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입안 단계의 규제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 입안 단계의 분석이나 평가가 전무해 과도한 규제가 얼마든지 발의될 수 있는 상황
 - 정부입법은 준비단계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규제심사를 하고 있으나, 의원입법은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 활동에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규제비용관리제가 운영

*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

■ 건의사항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 정부입법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처럼 의원입법 역시 유사한 규제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

-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기업과 개인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중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반드시 정비하도록 하는 규제비용관리제를 법률로 규정

■ 기대효과

- **(과잉입법 견제)** 벤처·스타트업의 경쟁력에 비해 제도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이 조성
- **(효율적 행정규제 촉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규제 정비로 효율적인 규제 시스템을 형성
-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 제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해 기업과 개인 등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는 기존 산업에 ICT 융합 기술과 서비스를 더한 형태로 진화 발전
- 현, 운영 체계 안에서 ICT 융합 기술/서비스는 과기정통부(ICT)는 물론 산업부(융합), 중기부(특구)에서 모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로 접수가 가능한 상황
-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소벤처기업의 제도 활용에 지속적인 혼란 야기
 - ‘규제부처간 역할 배분’이 6.88점으로 제일 낮은 점수, 제도이용 불만의 주요인 중 ‘주관부처 구분 혼란’에 대한 응답이 45.4%(행정연구원, 샌드박스 만족도조사)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신청을 초기부터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일본뿐만 아니라, 최근 영국도 ‘단일창구 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규제집행 간소화를 위해 규제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건의사항

- **(규제 샌드박스 창구 단일화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문고 제도와 같이 4개 부처에서 개별 접수하고 있는 규제접수 창구의 일원화 및 규제혁신 부처 신설
- **(3개 제도를 연동하고 실증특례 기간은 6개월로 단축)** 3개 제도를 연동해서 바로 다음 단계(신속 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

- 임시허가와 차별화하고 신속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6+6개월로 단축
 - 장기간의 실증특례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 교체 등 불확실성 해소
 - **(규제정보 접근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 시스템 개선)** 4차 산업 관련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 관련 규제(입지, 영업제한, 인증, 개인정보보호 등)를 사전에 검색, 대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규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 **(AI 기술을 활용한 관계법령 서칭)** 3,000여 개에 달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조례를 ‘인공지능 텍스트 검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업종별 창업규제, 법령 간 상충조항, 숨은 규제 발굴 등 가능
 - **(네거티브형 벤처기업 샌드박스 도입)** 기능(ICT, 금융 등)별 접근이 아닌 전 부처 규제를 포괄하여 복합규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벤처기업 전용 샌드박스 기획* 및 도입
- * 금융+개인정보, 개인정보+의료+AI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규제를 한번에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규범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속하게 위법여부·개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

■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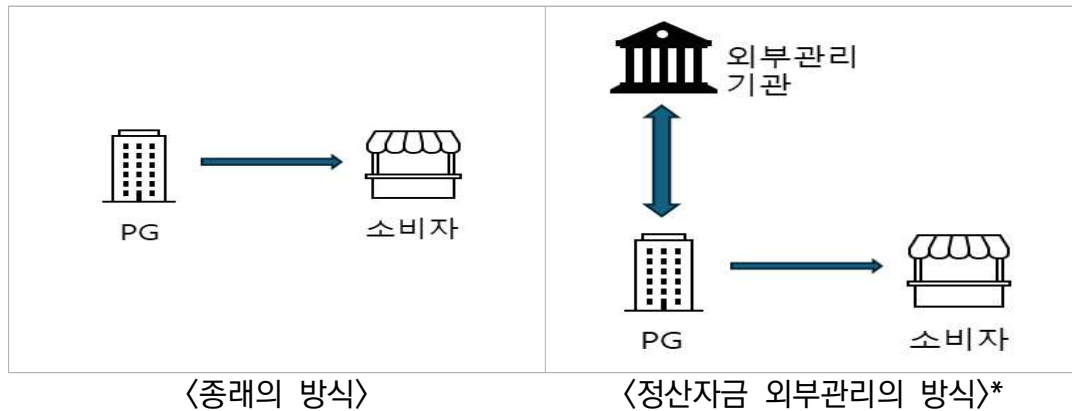
-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
 - 하지만 1960년대 이후에 고도 성장과정에서 몇몇 기업가의 부도덕한 행위로 기업인의 잘못된 행위를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임을 통한 처벌이 강화됨
 - 배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실패를 민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스리면서,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며,
 - 배임행위의 법 적용 시 신중을 기한다고 해도 모호한 기준으로 무죄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이는 경영진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가로막아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
- * 횡령·배임죄 무죄율(1심 기준)(CCJS, 사법연감) : ('16) 5.3% → ('17) 4.9% → ('18) 5.8%

■ 건의사항

- **(배임적용 원칙 개선)** 배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경영진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회사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면 사후에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하며 횡령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임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티·메프 및 발란 사태로 인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정산자금의 100%를 외부 관리하도록 규율(부칙 규정으로 개정 공포 후 1년까지 60%, 1~2년 80%, 2년 이후 100%)
 - 선불업자도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의 50%를 외부에 별도 관리의무(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 소액해외송금업자 역시 소비자 보호 규제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직전월 거래액의 3배 수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외국환거래법 제9조제7항, 시행령 제17조의2)가 있으며, 소액송금업은 외국환법령이지만, 소액송금업을 위한 선불업, PG업은 전자금융법령이 적용
- 그러나, PG업의 경우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100%)이 너무 높고, 소액해외송금업처럼 검영을 하는 전자금융업자들에게는 이중 규제(소액해외송금업의 사고율은 0%)
 - 실무적으로 선불충전금 및 정산자금을 외부관리 할 때, 이행보증·예치·신탁을 업자들이 각각 처리해야 하므로, 수단의 한정성 외에 유동성 문제 등 고충 사항이 존재하고, 외부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조치와 달리 정산 처리의 복잡화로 오히려 수수료 경쟁력 악화 및 정산 속도가 늦어져 소비자 편익에 저해 가능성
 - 외부관리 수단에 있어서도 예치의 경우, 예금주가 전자금융업자이며 사업악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탁의 경우 금융사고 발생시 ❶다수의 수익자 설정과 검증 ❷천문학적 정산자금 규모에 따른 상품의 한계가 발생하고, 지급보증의 경우에도 보증 수수료 부담과 국내 독점 기업(서울보증보험) 상황 및 위험 분산 한계



* 신탁의 경우 수탁자와 별개로 수익자 지정이 존재하므로 정산자금 외부관리 자금을 다시 수탁자가 받아 소비자에게 정산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정산자금 규모가 시시각각 변경되므로, 100% 외부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곤란

■ 건의사항

- 금융사고에 대한 통합 공제 설립 근거 마련
 - ① 간편페이 및 전자결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의 예상치 못한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에 ‘(가)전자금융거래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 근거 필요 ② 공제조합 가입 요건 등을 통해 무허가 PG 및 경영 상태 점검 근거 마련 ③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외국환법령 등 타 법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적용받는 업체 또한 통합 공제로 적용 필요 ④ 「전자금융거래법」상 법정단체 필요

* 공제분담금 납입을 통한 전자금융업권의 정산자금, 선불충전금 등의 외부관리 부담 경감 및 유동성 확보에 따른 수수료 경감 여력 확보 및 금융사고 발생시 공제를 통한 소비자 배상 절차 간소화, 공제 의무화 및 가입 요건 점검 등을 통한 부실 경영사 시장 퇴출 및 업권 자율시정 효과 예상

■ 현황 및 문제점

-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신종증권으로 분류되고, 발행은 가능하나 유통은 금지되어 있고(겸업금지 원칙), 신종증권 중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나,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이 불가능하고, 증권 신고서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
 -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발의 상태
- 조각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생 모델 사업자들의 발행과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어야 하나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로 시장 활성화에 한계
 - ① 투자계약증권 중심의 협소한 정의 ② 보수적인 감독 규제 적용 ③ 청약한도, 투자한도 설정 및 배타적 운영권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시장 본격 개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한 실정
 - 현행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전통적 증권 유형(지분, 채무, 수익증권 등)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에 대해 "보충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토큰증권 발행 시 자금조달 구조가 원활하지 않으며 투자계약증권 외의 상품 설계는 제약을 받는 상황
 - 또한 「자본시장법 제166조 제4항」에서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이는 주식, 채권, 및 부동산펀드 등 다른 자산군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차이와 함께 합리적 기준이 결여된 상태
 -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간에도 투자한도 적용 여부나 수준이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의 수준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

■ 건의사항

- 증권 정의 조항의 명확화 및 유연화
 - 토큰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한 기존 정형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화 필요
 - * 신종증권 유통 규제 완화 및 확대 필요
- 시행령이 아닌 법률 차원에서 투자 한도 설정 및 개인청약 한도 완화
 -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위임 방식이 아닌, 법률 차원에서 투자한도의 최소·최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 * 개인 투자자의 청약한도는 완화하여 시장 활성화 필요
- 혁신금융 특례지정제도 및 배타적 운영권의 유예
 - *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실증 기회를 부여하는 개방적인 제도 전환 필요

■ 기대효과

- 시장 경쟁 촉진 및 신종증권 활성화와 토큰증권 제도화로 산업적 파생 성장 기대
 - (참고사례) 육우 조각투자(투자계약증권)인 '뱅크우', 음악 저작권 수익 조각투자(비금전신탁수익증권) '뮤직카우' 등 토큰증권 시장을 통한 성공사례는 이미 존재하며, 해당 토큰증권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자산 증식에 기여
 - * 기초자산 청산 모델이 분명한 농·축수산 분야 등 농어촌 1차 산업에 새로운 투자 촉진
은 물론, 양조 사업 등 2차 산업의 투자 및 수익 확대로 자산 증식 모델이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

〈 뱅카우, 뮤직카우 사업구조 〉



* 자료: 뱅카우, 뮤직카우

① 법인·기관 투자자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특정금융정보거래법상 은행은 거래소와의 제휴 조건으로 개인 회원만을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이 가능한 상황

- 반면,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 법인(자회사 등)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우회·제한적 투자만 가능

* 디지털자산투자자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고, '22.4. 신한은행이 국내 특정 디지털자산거래소와 법인 계좌 발급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나 한 달여 만에 중단

■ 건의사항

- 법인계좌 발급 및 투자 허용
 - 국내 일반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거나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국내 일반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투자 허용,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통한 시장 불확실성 제거 필요

〈해외 사례〉

-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보수적으로 알려진 일부 연기금들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디지털자산에 투자
- 미국 디지털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거래대금은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사실상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전무
- 단기 투자 위주의 개인들로만 이뤄졌던 가상 시장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법인 및 기관이 들어오면 시장 변동성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② 디지털자산 사업 불확실성 개선 : 실명확인 계정 발급기준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원화 디지털자산 거래소 신고수리에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이 불명확하며, 사실상 하나의 거래소는 하나의 은행하고만 계약이 가능한 상황
 - 원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이 필요
 - * (특금법 제7조 3항 2호) 신고 불수리 요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 실명확인 계정을 취득한 거래소의 경우에도 하나의 거래소가 하나의 은행하고만 계약하도록 하는 ‘1거래소-1은행’ 규제가 암묵적으로 작동
 - 디지털자산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은행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고, 모든 트래픽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장애 발생 등이 우려

■ 건의사항

-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하나의 거래소가 여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1거래소-1은행’ 규제로 투자자 불편 및 트래픽 집중에 따른 장애 등이 초래되므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복수 은행 거래 허용 필요
 - * 디지털자산 업권법이 부재하므로,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기준 명확화

③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장려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해외송금 제약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 존재
 -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 송금을 요청 시 은행은 근거 법령도 없이 정부 방침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외국환거래법상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해외송금 금지조항 없음)
 - * 이로 인해, 국내 거래소가 해외 기업의 지분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해외시장 진출 차질

■ 건의사항

-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을 허용하여 신산업 분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 필요
 - 정부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에도 일반 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거래소의 글로벌 사업 확대에 대한 방해요인을 제거
- * 은행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을 허용하도록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

④ 디지털자산 사업자 및 금융업체 협력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17년 12월 디지털자산 관계부처 TF가 발표한 '가상통화관련 긴급 대책 수립'으로, 그림자 규제가 형성
 -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자과열 방지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금지'를 발표
- * 이로 인해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전통 금융권 간의 다양한 사업협력이 불가능하여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 건의사항

- '가상통화관련 긴급대책수립' 행정지도 보완하여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확대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
 -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디지털자산 결제' 등 다양한 신산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결제 서비스 업체 등과 협업을 허용
-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공문지침 재검토 및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침 발표

⑤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20년 12월 「소득세법」제21조 개정예에 따라 디지털자산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25년부터 시행 유예

- 투자자 보호 등 디지털자산관련 법제화가 완비되지 않은 제도 인프라 미비로 인한 유예

■ 건의사항

-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유예 개정안 연내 통과 건의 및 2025년 시행을 대비하여 과세방법, 적용기간, 징수방법 등 합리적인 세부기준 마련
 -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전제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7호에 시행 필요
 - * 2025년 과세 시, 조세법률주의에 근거,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조세형평성 등 세부 기준 논의 필요

⑥ 거래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테스트 및 수수료 계정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의한 디지털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디지털자산 거래 제한
 - 그러나 ①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디지털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②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디지털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 허용 필요

■ 건의사항

- 내부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한 테스트계정 및 수수료계정에 대한 예외적 허용
 -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를 위한 거래가 아닌 ① 거래소 내부 시스템 점검을 위한 테스트 계정 ② 내부회계처리를 위한 수수료 수익처리에 대한 계정 등에 대하여 예외적 허용 필요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디지털자산사업자의 조치) 제5호 나항 관련 추가 명시 필요

세상을 바꾸는 힘, 벤처·스타트업

*이제 벤처는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아젠다가 되어야 합니다*

